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2002. 6

성명재

서 언

조세정책의 제1목적은 국가 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 외에도 조세정책은 각종 사회보장정책과 함께 소득의 사회적 이전을 통한 분배상태의 형평화, 즉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계층별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물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득분배의 격차 확대 추세가 단순히 경제위기 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 기술진보, 노동조합의 활성화 여부, 이혼이나 인구의 노령화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균등분배에 대한 시각이다. 흔히 균등분배라 함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몫을 분배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러한 분배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배는 결코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기능 등에 따라 학생, 주부, 직장인, 경영인, 교육자, 공무원 등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다르고 따라서 이러한 요소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보수 배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갓난아기와 세계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동일한 소득을 받아야 한다면 그 누구도 이를 형평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배는 결코 균등분배가 아니라 획일분배라고 할 수 있다. 획일분배는 경쟁을 통한 혁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기 때문에 정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균등분배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적인

분배상태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식(The winner takes it all)의 분배구조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님은 물론이다.

균등분배라 함은 기회 및 환경의 균등이 전제된 상태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얻어진 분배상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균등분배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는 기회나 환경이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거나 정보의 비대칭 등에 따라 불공정 경쟁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종의 ‘시장의 실패’로 볼 수 있다. 균등분배라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경제·사회에나 모두 통용되는 절대진리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균등분배는 어디까지나 해당 경제·사회 구성원들의 가치판단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및 고용구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로 반전되면서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일각에서는 ‘분배’와 ‘성장’ 간의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균등분배 또는 형평분배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균등분배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과연 어떠한 분배구조가 ‘형평한 분배구조’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경제·사회적 여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형평분배를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집필되었다. 정책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근의 정책개편에 대한 평가

와 기본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분배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보고서 말미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성명재 박사의 집필하에 완성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정책 수립단계에 참고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이은경 주임연구원과 윤혜순 연구조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한 분석자료의 가공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준 본원 정보자료실의 신영철 실장께도 감사드리며, 원내세미나를 통해 훌륭한 코멘트를 해준 본원의 이명현 박사과 현진권 박사, 그리고 보고서 심사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익명의 두 심사자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분석 방법과 견해를 바탕으로 집필된 것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2년 6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 약

1. 소득분배 동향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구조는 1980년대~1990년대 초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하락함으로써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다행히 1999년에 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분배격차가 축소되었다.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는 디지털 경제로의 진입, 기술발전 및 정보의 비대칭성, 세계화와 국제무역 증가, 이혼 증가 및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2. 최근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최근의 소득세제 개편은 공제수준 및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주된 골자였다. 근로소득 공제수준 및 공제율의 확대는 면세자 비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으며, 소득세율의 인하는 종합소득세(또는 근로소득세) 부담의 비례적 하락을 가져다주었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세제개편이 전체적인 세부담 분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세의 총세부담

분포가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최근의 소비세제 개편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수준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2002년의 세제개편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만을 종합해 본다면, 미소하나마 소폭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그 수준은 거의 체감하지 못할 정도, 즉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오히려 최근의 세제개편은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변화한 과세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 반드시 正(+)¹⁾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가 점차 고소득층으로 집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세부담의 누진도는 세부담의 절대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가 결정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누진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이는 바로 위의 두 가지 요인 중 소득세 부담 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8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등락의 폭이 크게 증폭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OECD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3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최근의 조세부담률 변화추이와 선진국의 예,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앞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세부담률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비례적인 세부담 증가에 의한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세후 지니계수를 완만하게 하락시켜 총량적으로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세·소비세 부담의 합이 완만한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더라도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의 증가율이 반드시 비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소득세의 증가율이 소비세 증가율에 비해 현격히 낮지 않다면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분포가 누진적인 소득세의 증가율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질 것임은 물론이다.

5.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과 소득재분배

세원별로 보면 소득세의 세부담은 누진적인 반면에 소비세 부담은 微少하게 역진적이다. 그렇지만 소비세의 역진도는 매우

낮아 거의 비례적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므로 동일 규모의 세수를 전제로 소득세와 소비세의 과세비중을 조정한다면, 소득세의 비중을 높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한편 소비세의 비중을 높일수록 그 효과는 작아진다.

2002년의 소득 분포를 추정하고 여기에 2002년 세법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 중 소득세의 비중은 34.74%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세수중립적 개편이라는 전제하에 소득세의 비중을 5%p 증대시키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5%p 하락시키면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전자로부터 0.40~0.43%p, 후자로부터 0.05~0.08%p 정도의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구조가 누진적인 소득세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총량이 증대함을 의미하며, 후자는 세부담 구조가 역진적인 소비세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른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축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소비세의 비중이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소득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점차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6.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은, 면세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높아 소득세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소득세 부담 비중이 높지 않아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득공제의 추가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금체계의 변화 등 다른 목적에서 소득공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본보다는 높지만 서구 선진국보다는 낮다. 반드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제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또는 공제율을 현 수준보다 높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율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소득세 가운데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을 들자면 의료비 특별공제의 한도를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일부 제기되었던 문제로 비교적 세수손실은 크지 않으면서도 노동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해줌으로써 물적자본에 대비해 세제상의 차별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I. 서론	21
II.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계	28
1. 연구목적	28
2. 분석자료의 종류	28
3.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로부터의 표본구성	31
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추정	31
나. 계절성(seasonality) 및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조정	33
4.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요약	36
5. 분석모형의 흐름도	38
가. 기본모형	38
나. 표본조정	40
다. 소득 분포 및 세부담 분포와 소득불평등도 변화 분석모형	43
III. 소득 및 세부담 분포	45
1. 소득 분포	45
가. 총소득 분포	45
2.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49
가. 지니계수의 산출식	49
나.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50
다. 기타 소득불평등도	52
라. 조세집중지수	53

3. 지난 20년간의 세제개편 요약	56
가. 소득세	56
나. 소비세	65
4. 주요 세목별 세부담 분포	68
가. 소득세	68
나. 부가가치세	69
다. 교통세	73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2000~2002년 세법을 중심으로 ..	82
1. 2002년도 소득 분포의 추정	82
2. 소득세	83
가. 세부담 분포의 변화 효과	83
나. 면세비율의 변화 효과	87
다. 조세집중도의 변화 효과	88
3. 소비세	89
가. 부가가치세	89
나. 교통세	91
다. 주세	93
4. 평 가	93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00
1. 개요	100
가. 소득 및 물가조정을 통한 면세비율 조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0
나.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104
다.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105
2. 소득공제 수준 동결을 통한 면세비율의 축소와 소득재분배 효과	105
가. 소득조정 및 물가조정 시나리오	105

나. 기대효과: 면세비율	110
다. 기대효과: 소득계층별 실효세부담률과 세부담(세수) 효과 ..	110
라. 기대효과: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112
3.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114
4. 세원별 과세비중의 조정과 소득재분배	117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21
1. 시나리오의 종류	121
가. 근로소득공제	122
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123
다. 소득세율 구간	124
라.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124
마. 근로소득세액공제	125
2. 기대효과	127
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	127
나. 세부담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131
다. 면세비율	151
3. 총평	151
VI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53
1. 요약	153
가. 소득분배 동향	153
나. 최근의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154
다.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156
라.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158
마.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과 소득재분배	159
2. 정책시사점	160

참고문헌	162
부록 I.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의 연간화 및 표본조정	170
1.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170
2. 표본선택편의의 검정	172
3. 계절성 검정	172
4. 연간자료의 구성	173
부록 II.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 분포	174
1.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174
가. 시장소득	174
나. 가처분소득	177
2. 연령별 소득 분포	180
부록 III.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183
부록 IV. 2002년 조정표본 기준 각종 세목의 세부담 분포	186

표 목 차

<표 II- 1> 전체 가구 대비 농어촌 가구 비중	29
<표 II- 2>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	30
<표 II- 3>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요약	38
<표 II- 4>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변화추이	41
<표 II- 5> GDP 추이	42
<표 II- 6> 주요 거시지표 전망(2002~2006년)	43
<표 III- 1>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전체가구)	46
<표 III- 2>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근로자가구)	47
<표 III- 3>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자영업자가구)	48
<표 III- 4>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정치	50
<표 III- 5>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1983~2002년)	56
<표 III- 6> 기본공제의 변화추이(1975~2002년)	57
<표 III- 7> 소득세 면세점의 변천(4인 가구 기준)	58
<표 III- 8>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의 변화추이	59
<표 III- 9> 근로소득세액공제 변화추이(1982~2002년)	60
<표 III-10> 최근의 주요 특별공제한도 변화	64
<표 III-1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변동추이	64
<표 III-12> 석유류 관련 소비세의 세율변천	67
<표 III-13>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분포	70
<표 III-14> 소득계층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	71
<표 III-15>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비중	72
<표 III-16>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74
<표 III-17>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	75

<표 III-18>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	76
<표 III-19> 소득계층별 교통세 부담 분포	78
<표 III-20> 소득계층별 교통세 실효세부담률	79
<표 III-21> 소득계층별 교통세 부담 비중	80
<표 IV- 1> 2002년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추정치	83
<표 IV- 2>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총소득세 부담 분포 추정치 (2002년 분포 기준)	84
<표 IV- 3>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85
<표 IV- 4>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90
<표 IV- 5>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교통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94
<표 IV- 6>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주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95
<표 IV- 7> 세법연도별 조세부담 특성 요약	98
<표 IV- 8> 세법연도별·소득종류별 지니계수의 변화 추정결과	99
<표 V- 1> 소득·물가조정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소득세 면세가구 비율의 변화	106
<표 V- 2> 소득·물가조정 시나리오별 소득 분포	107
<표 V- 3> 근로·종합소득세의 가상적인 부담 분포	108
<표 V- 4>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가구유형별 근로·종합 소득세 부담의 증감효과	109
<표 V- 5>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계수 및 조세집중지수의 변화효과	113
<표 V- 6> 조세부담률 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결과	116

<표 V- 7>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 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결과	119
<표 VI- 1> 소득세법 개정효과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의 종류	126
<표 VI- 2>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변화 효과	130
<표 VI- 3> 소득세 개편 시나리오별 근로·종합세부담 분포 추정결과	132
<표 VI- 4> 세법개정에 따른 지니계수 및 조세집중지수의 변화효과	144
<표 VI- 5>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지니계수 기준)	149
<표 VI- 6> 세법개정에 따른 면세자비율 추정결과	150
<부표 II-1>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분포(전체가구)	174
<부표 II-2>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분포(근로자가구)	175
<부표 II-3>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분포(자영업자가구)	176
<부표 II-4>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분포(전체가구)	177
<부표 II-5>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분포(근로자가구)	178
<부표 II-6>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분포(자영업자가구)	179
<부표 II-7> 연령별 시장소득 분포	180
<부표 II-8> 연령별 총소득 분포	181
<부표 II-9> 연령별 가처분소득 분포	182
<부표 III-1>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183
<부표 III-2>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실효세부담률	184
<부표 III-3>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비중	185
<부표 IV-1>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186
<부표 IV-2>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총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187

<부표 IV-3>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188
<부표 IV-4>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전화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189
<부표 IV-5>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190
<부표 IV-6>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소비세분 교육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191

그림 목 차

[그림 II-1] 작업흐름도	39
[그림 III-1] 조세집중곡선	55

I. 서론

최근의 소득분배와 관련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초까지 격차가 완만하게 축소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저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¹⁾. 특히 최근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소득계층간 정보력 격차 및 경쟁 심화, 이혼 증가 및 노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최근의 분배동향을 보면 Kuznets(1955)가 주장하였던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분배 간에 負(-)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역U자 가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최근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을 중심으로 한 Deninger and Squire (1996, 1998)의 연구 등에 의하면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분배 상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Kuznets의 가설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998년의 극심한 경제위기라는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소득분배 격차가 단시간 내에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발전, 정보화 사회의 급진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 패러다임 또한 급속히 개편되면서 우리나라도 최근의 선진국처럼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1) 성명재(2000B, 2001A)와 유경준·김현경(2001) 참조.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혼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및 IT부문의 눈부신 발전, 전자상거래의 확산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²⁾.

소득분배의 격차 확대는 자칫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추이 관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소득재분배 정책의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

지금까지 조세정책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는 비교적 많았다. 그 가운데 유경준·김현경(2001), 성명재(1999, 2000B, 2001B), 성명재·전영준(1999), 현진권(1996B, 2001), 현진권·강석훈(1998)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와 세부담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분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었으므로 조세·재정정책 수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밖에 성명재(1997A, 2001A), 성명재·이명현(2001), 성명재·전영준(1998), 현진권(1999), 현진권·나성린(1996A) 등의 연구에서는 비단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포에 대한 추정에 그치지 않고 모의 실험(simulation)을 통해 조세정책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즉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정책개발 단계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책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상기의 연구는 과거의 세법개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거나 또는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위기 이전의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구조 변화 이후의 시점을

2) 성명재(2001B) 참조.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로서는 미흡하다.

성명재(2001B)의 연구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는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구조의 변화, 세계화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화한 측면도 있지만 기술 진보와, 이혼율 및 노인인구 비중의 급증 현상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변화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매우 크다. 이는 곧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조세정책수단 개발을 위해서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각종 조세정책의 효과분석이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세정책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공과를 평가하고, 조세조합(tax mix)의 변화 또는 조세측면에서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을 이용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완급 조절, 현안이 되고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을 연구의 기본 목표로 한다. 조세정책을 분석·평가함에 있어서는 사후적(ex post) 관점에서 기존의 제도 변화를 평가한다. 그리고 위에 나열된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선행적(ex ante) 관점에서 향후에 실현되거나 또는 가상현실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후적 분석·평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지난 20년간의 소득분배구조와 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과 그 공과에 대해 분석·평가한다.

사전적 관점에서의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사전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세부담률 수준 및 세원별 과세비중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세정책의 밑그림 설계를 위해 기초필수 항목에 대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세목 내에서 특정 항목을 조정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세제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기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흔히 우리는 세부담의 집중도(또는 누진도)가 높을수록 해당 세목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고, 반대로 세부담의 집중도(또는 누진도)가 낮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명제는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총량적’인 개념인 반면, ‘세부담의 누진도’는 ‘평균적’인 개념 또는 ‘한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세부담 점유비라는 상대적 지표를 기초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세부담의 절대치(절대수준)는 세부담의 누진도(역진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부담의 절대규모까지 고려한 총량변수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의 누진도만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총량을 논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바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는 세부담의 누진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즉 세부담의 누진도에 중립적이면서도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얼마든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소득재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부담률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³⁾.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V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환경오염 저감과 교통혼잡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 관련 세제의 개편, 증권시장 및 벤처기업 활성화, 연봉제의 확산 등에 따른 고액연봉자의 급격한 증가, 기업의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 축소에 따른 접대비의 편법적 임금화 등과 같은 임금체계 및 기업비용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소득세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제반 과세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에 통합되는 등 소비세 체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결과 경제구조 및 경제체질이 변화하면서 소득분배구조도 변화무쌍해지는 등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도 예전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의 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최근의 세법개정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향후의 세제개편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향후의 세제개편에 있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한걸음 나아가 조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부담률과 세원별 과세비중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세정책 수립의 기본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일부를 먼저 소개한다면, 소비세는 세부담이 역진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세의 역진성은 매우 낮아 세부담이 비례적인 모습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목별로는 주세와 담배소비세처럼 세부담이 상당히 역진적인 경우도 있으나 소비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부담이 상당히 비례적이기 때문에 소비세 전체의 부담 분포는 비례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소비세의 경우에는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효과분석은 하지 않기로 한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소득·소비 관련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분포를 추정하고, 현재의 조세체계를 근거로 세부담 분포의 기준선을 추정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종 세율체계와 공제체계, 공제수준 등을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정책수단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조세체계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및 조세부담률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 중심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소득계층별 세부담 변화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지니계수 등의 소득불평등도 지수 비교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모의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평균 세부담의 변화효과 추정을 통해 전체 세수의 증감효과를 추론해 봄으로써 조세측면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점검해본다.

다만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자산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빈약하고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산분포나 금융소득 분포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1인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범위는 불가피하게 2인 이상의 도시가구에 한정된다. 향후에 자료를 확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⁴⁾.

4) 이러한 연구를 보완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이나 농가경제인구조사자료 등과 같은 인접자료 등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천이 다른 미시자료(패널자료 포함)를 서로 접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난도의 자료접합(data merge)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분석 모형, 분석자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최근의 세법개정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보고 성과를 평가해본다. 제Ⅴ장에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집중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다. 제Ⅵ장에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세제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분배효과를 추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세제개편시의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정책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한다.

II.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계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이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는 만큼, 세제개편이 세부담의 누진도에 미치는 효과, 세수비중과 누진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들 요인이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추정해봄으로써 조세정책 방향 정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분석자료의 종류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의 납세신고자료 (tax return data)를 바탕으로 목표연도의 특성으로 자료를 변환한 뒤 각종 조세조합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적인 상황하에서의 세부담 분포의 변화를 추정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신고자료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만큼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자료가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국세청 신고자료는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는 국세청 자료에 대한 대리자료로서 도시가계조사 원시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범위는 1982~2000년의 원시자료이다. 1979년부터 원시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1979~1981년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분류 및 집계상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통계청의 권고에 따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법개정 효과 등의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모형 분석시에는 편의

II.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계 29

상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이 세 부담 분석에 있는 만큼 월별 또는 분기별 자료의 형태로 발표되고 있는 원시자료를 연간단위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그러므로 소득세와 관련한 세제개편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더라도 소득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⁵⁾. <표 II-1>에서 보듯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80년 31.88%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0년에는 9.58% 정도이다. 그만큼 최근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가 포괄하는 모집단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전체 가구 대비 농어촌 가구 비중

(단위: 가구, 명, %)

	일반가구		농어촌		비중	
	일반가구	농어촌	비중	일반인구	농어촌인구	비중
1980	7,969,201	2,291,664	28.76	36,230,762	11,552,062	31.88
1985	9,571,361	2,052,669	21.45	39,121,522	9,123,310	23.32
1990	11,354,540	1,888,558	16.63	42,101,544	7,157,411	17.00
1995	12,958,181	1,605,225	12.39	43,308,597	5,198,290	12.00
2000	14,311,807	1,465,039	10.24	44,711,584	4,282,414	9.58

주: 1) 일반가구 기준 자료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 및 가구 항목

5)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자료는 동일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추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납세신고자료 간에는 각기 다른 특정한 원칙에 따라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자료와 달리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선택편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는 양자간의 분포 차이를 명확하게 조정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가 모집단 특성, 즉 국민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표 II-2>에서 보듯이 198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0%였는데 이후 점차 그 비율이 상승하여 2000년에는 15.54%로 증가하였다. 인구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1980년 1.06%에서 2000년 4.98%로 상승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1인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기준으로는 15% 정도라는 상당히 높은 비중의 가구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앞서 말했듯이 인구기준으로는 최대 5% 미만이므로 실질적인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포괄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표 II-2>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 비중

(단위: 명, 가구, %)

	전체 인구	1인 가구		전체 가구	1인 가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80	36,230,762	382,743	1.06	7,969,201	382,743	4.80
1985	39,121,522	660,941	1.69	9,571,361	660,941	6.91
1990	42,101,544	1,021,481	2.43	11,354,540	1,021,481	9.00
1995	43,308,597	1,642,406	3.79	12,958,181	1,642,406	12.67
2000	44,711,584	2,224,433	4.98	14,311,807	2,224,433	15.54

주: 1) 일반가구 기준 자료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 및 가구 항목

결론적으로 말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상기의 자료를 놓고 볼 때 인구 기준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포괄범위가 2000년 현재 최소 85%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흔히 가구기준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포괄범위가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다. 비록 도시가구라고는 하지만 국민 전체로 볼 때 85% 정도의 포괄범위라면 대표성을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로부터의 표본구성

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추정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에는 각종 소득·소비지출 관련 항목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득 관련 정보는 유일하게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이 과세당국에 의해 포착되는 등 소득을 감출 유인이 별로 없는 반면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자의 보고된 소득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료의 신빙성 차원에서 자영업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도시가구의 세부담 분석 및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2000B, 2001A, B)와 성명재·전영준(1999) 등의 연구⁶⁾에서 채택한 방법에 근거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

6) 불행히도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간의 소득·소비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정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과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소득을 과소 신고(보고)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밝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및 영수증 복권제도 등을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포착률을 크게 제고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물론 한국노동패널자료 등과 같은 방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 간 소득·소비패턴의 동일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검정할 수는 있지만 도시가계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 간의 자료구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수정없이 그대로 다른 쪽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문제는 추후의 연구에 미루기로 한다.

(imputation)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추정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소비관계는 편의상 근로자가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근로자가구의 역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것이 자영업자가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역소비함수란 소득을 피설명변수로 하고 소비지출 및 학력(교육수준) 가족구성원의 수, 가구주의 연령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역회귀분석(reverse regression)의 추정방정식이다.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역소비함수의 계수추정치를 기준으로 자영업자가구의 해당 설명변수에 대한 수치를 대입하여 소득을 추정하였다⁷⁾.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가구라 함은 취업자영업자가구를 지칭한다. 만약 자영업자였다가 부도·폐업·은퇴 등에 따라 무직가구화하거나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가구에서 제외된다. 다른 가구에 대한 분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1982~2000년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각 가구유형별로 동질 특성의 가구를 비교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가구유형별 구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일부가 불경기로 인해 도산을 하게 되어 무직가구화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도산한 가구까지 포함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산출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이 자영업자가구를 정의하게 되면 도산하여 무직가구화한 가구는 원천적으로 자영업자가구에서 제외된다. 도산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산출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구유형별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추이를 해석함에 있어 상기의 요인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올바른 해석을 위해 도움이 된다. 다만 가구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명재(2000B, 2001A, B)와 성명재·전영준(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는 물론이고 가구유형별로도 소득 분포 및 분배효과를 추정하여 보고한다.

나. 계절성(seasonality) 및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조정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표본자료를 구성함에 있어 계절 조정과 표본선택편의를 함께 제거한 표본자료를 사용한다. 성명재(2000B, 2001B)는 계절조정만 거치고 구성한 표본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표본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偏倚(bias)를 제거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분석하고 있고, 소득세 등 흔히 직접세로 불리는 세목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연간단위로 이루어지며, 소득분배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도 연간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협상이나 고용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도 대부분 연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연간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평가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월별로 수집·정리되고 분기별로 발표·제공된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연간화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별로 분기자료를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구에 따라서는 자료의 조사·수집과정에서 한 분기 또는 그 이상의 분기에서 조사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한 분기 이상 조사자료가 누락된 가구의 경우에는 자료의 연간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Sung(2002)과 성명재(2002)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계절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기라도 자료가 누락된 가구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계절성을 제거하고 성공적으로 연간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욱이 4개 분기 모두 자료가 갖추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렇지 못한 가구와의 특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절성 제거를 위해 분기자료를 연간단위로 합산하더라도 자료의 연간화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의 특성이 연간화 작업을 마친 가구의 분포특성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계절성이란 자료의 특성이 계절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주체의 생산·소비활동이 다르다. 계절적으로도 에어컨, 팔빙수 등과 같이 여름철에 주로 소비되는 품목이 많다. 이와 반대로 난방유의 경우에는 주로 겨울에 많이 소비된다. 이와 같이 생산 및 소비활동이 계절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계절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계절성이 계절별·품목별로만 차이를 보일 뿐, 각각의 경제주체에게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계절별·품목별 계절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변수에 대한 계수를 조정해주면 간단히 계절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별로 계절성에 대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말했듯이 선행연구의 결과 계절성 제거, 즉 어떠한 분기의 자료도 누락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분기자료를 합산하여 연간자료

8) Sung(2002)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연간화 작업과정에서 탈락되는 표본자료로 인해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정결과 표본선택편의가 있기는 하지만 한정표본(finite sample)하에서도 편의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추정량을 나타내는 추정량의 추정치 가운데에서도 접근적으로는 편의가 0에 수렴하지만 한정표본에서 편의는 오히려 편의추정량에서의 편의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비록 표본선택편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할만큼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편의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를 획득하는데 이 과정을 통칭하여 계절조정(seasonal adjustment)이라고 한다⁹⁾.

표본선택편의란 표본자료를 구성함에 있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자료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함되는 자료의 분포와 표본자료에서 탈락되는 자료의 분포가 서로 상이해질 때 나타나는 편의(bias)를 일컫는다. 위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자료의 분기자료를 연간화함에 있어 자료누락에 따라 계절성을 제거할 수 없는 표본자료를 불가피하게 연간표본자료에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으며 탈락된 자료가 연간표본자료와 각기 다른 분포를 지니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를 가진다.

즉, Sung(2002)과 성명재(2002)의 연구에 의하면 계절조정을 거쳐 연간자료를 구성하더라도 계절조정과정에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한다. 이는 계절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자료가 표본자료의 정의구역(domain)내에서 고르게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자료가 탈락됨으로써 자료 탈락 전후의 표본분포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분포가 달라졌다는 것은 본래의 모집단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선택편의는 점근적(asymptotically)으로도 편의가 0에 수렴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 분기자료의 연간화 과정에서는 분석대상기간(1982~2000년) 모두 예외없이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계절성 제거과정에서 발생한 표본선택편의를 제거하여야만 성공적으로 연간표본자료를 얻을 수 있다. 흔히 표본선택편의의 제거과정을 선택편의조정(selection bias adjustment)이라고 하자. 본 연구에서의 선택편의조정은 계절조정 과정에서 본래의 분

9) 계절조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문에 소개된 방법은 그 중 하나이다.

포로부터 달라진 분포를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하였던 근방추정법(nearest neighbor estimation)을 채택하기로 한다. 근방추정법에 대한 내용은 <부록 I>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록 양자 간에는 선택편의의 조정 여부에 따라 편익만큼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 차이의 절대수준은 매우 작다는 점이다. 이는 곧 선택편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결과와의 일치성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지만, 선택편의에 의한 편익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편익이 있더라도 실제 모수와의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가 비록 통계적으로 선택편의에 의한 편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⁰⁾.

4.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요약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근거로 표본조정을 통해 목표연도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한다. 목표연도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2000년 표본자료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본조정을 통해 구성한다. 분석대상자료의 원자료에 해당하는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가 담고 있는

10) Sung(2002)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자료라는 특수성하에서, 선택편의 조정을 위해 사용된 밀도함수 조정(density adjustment)에 따른 일치 추정치 간의 차이의 절대수준보다, 오히려 한정표본(finite sample)하에서 표본선택편의에 의한 편익의 크기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근적으로는 일치추정량에서의 추정편의는 0에 수렴하는 반면 선택편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에서 보듯이 2000년 도시가계조사 표본자료에 의하면 도시가구의 평균가구원 수는 3.62인이다. 가구유형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3.79인으로 근로자가구의 3.54인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취업인 수는 1.45인으로 전체 가구원 중 40.0%가 취업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자영업자가구가 1.65인으로 근로자가구의 1.34인보다 상당히 높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근로자가구에 무직가구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직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취업인의 수는 1.54인이며 취업자 비율도 42.4%로 자영업자가구의 43.5%와 별 차이가 없다.

도시가구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4.9세로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4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소비성향은 0.68로 역시 가구유형별 차이가 별로 없는 편이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취업자 중 부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은 45% 내외로 알려져 있다. <표 II-3>에 의하면 근로자가구의 취업인 수 평균은 1.34인이다. 이는 근로자가구 전체를 100가구로 보았을 때 취업인의 수가 134인임을 의미한다. 이들 가운데 부소득원 취업근로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34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세 면세자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소득원 취업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는 면세자일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을 45%라고 가정하면 134인 중 60.3인이 면세자에 해당된다. 주소득원 취업자를 모두 면세자로 분류할 경우 주소득원 취업자 중 26.3인이 근로소득세 면세자라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5%라 함은 가구기준 면세가구의 비율이 26.3%임을 의미한다.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산하면 근로소득세 면세가구의 비율이 23%, 24%, 25%일 경우, 개인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각각 42.5%, 43.3%, 44.0%로 추정된다.

<표 II-3>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요약

(단위: 명, %, 세, 원)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 가구
			취업근로자	
가구구성원의 수 (A)	3.62	3.54	3.63	3.79
취업인의 수 (B)	1.45	1.34	1.54	1.65
취업자 비율 (B ÷ A)	40.0	37.9	42.4	43.5
가구주의 연령	44.87	45.00	42.68	44.91
평균소비성향	0.6758	0.6688	0.6694	0.6878
총소득	29,017,106	27,984,682	28,831,861	30,971,936
(근로소득)	-	19,536,774	-	-
(가구주의 근로소득)	-	15,903,765	-	-
(자영업자사업소득, 추정치)	-	-	-	27,845,849
소비지출	19,610,568	18,717,402	19,301,311	21,301,721
소득세 부담	851,673	572,609	-	1,380,061

주: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의 분석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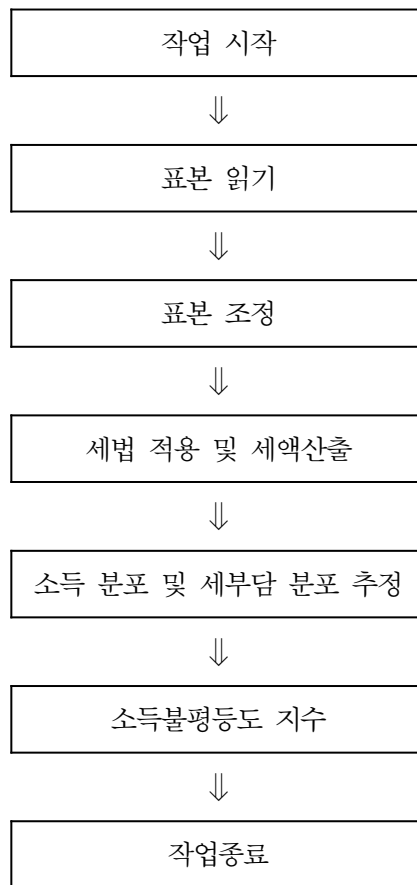
5. 분석모형의 흐름도

가. 기본모형

계절성과 표본선택편의를 조정한 후에 생성한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 흐름도를 구성하면 [그림 II-1]과 같다. 추정방식은 각각의 표본자료에 대하여

분석대상 목표연도와와의 시차에 따른 표본분포의 차이, 즉 표본특성의 차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표본조정을 시행한다.

[그림 II-1] 작업흐름도



표본조정은 실제의 분포변화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거시경제변수의 예측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표본을 조정한다.

표본조정이 끝나면 표본자료 각각에 대해 분석대상 목표연도의

세법 또는 분석하고자 하는 가상적인 세법개정안을 적용하여 세부담액을 산출한다. 표본조정 후의 표본자료로부터 소득 분포와 세부담 분포, 지니계수 등의 각종 소득불평등도지수를 추정하여 추정작업을 종료한다.

나. 표본조정

국민계정상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대변하는 변수로 흔히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가능한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2002년 또는 2003년의 소득·소비분포를 추정(extrapolation)하여 사용하는데 이 때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산한 소득개념을 사용한다.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은 경상GDP 대비 점유비가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GDP 대비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1980년대 초 40% 수준에서 최근에는 45% 수준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잉여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 40% 수준에서 최근에는 30%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1980년대 초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이 80%에 육박하였으나 최근에는 73~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그 비율이 73.8%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이미 2001년에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2년 또는 2003년에 그 비율이 바뀌더라도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각계각층에서 거시경제를 전망하지만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표본을 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선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표본자료를 2002년 또는 2003년 분포로 표본조정을 시행

II.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모형의 설계 41

함에 있어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의 경상GDP 대비 점유비가 2001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이는 곧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경상GDP의 증가율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조정을 위한 기준변수로서 실험적으로 경상GDP성장률을 사용한다(이상 <표 II-4>~<표 II-5> 참조).

<표 II-4>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변화추이

(단위: 십억원,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합 계		
	금 액	증가율	비중	금 액	증가율	비중	금 액	증가율	비중
1980	15,007.4	25.5	39.71	15,158.0	15.5	40.11	30,165.4	20.3	79.83
1981	18,466.1	23.0	38.97	19,287.0	27.2	40.70	37,753.1	25.2	79.68
1982	21,422.0	16.0	39.36	21,371.8	10.8	39.26	42,793.8	13.4	78.62
1983	25,894.0	20.9	40.55	23,795.0	11.3	37.26	49,689.0	16.1	77.81
1984	29,640.6	14.5	40.60	27,506.5	15.6	37.68	57,147.1	15.0	78.28
1985	33,012.1	11.4	40.60	30,892.3	12.3	37.99	63,904.4	11.8	78.59
1986	37,894.5	14.8	39.95	36,851.1	19.3	38.85	74,745.6	17.0	78.79
1987	45,647.5	20.5	41.05	41,682.1	13.1	37.48	87,329.6	16.8	78.54
1988	56,152.5	23.0	42.50	47,339.4	13.6	35.83	103,491.9	18.5	78.34
1989	66,824.4	19.0	45.09	49,849.5	5.3	33.64	116,673.9	12.7	78.73
1990	82,014.8	22.7	45.87	57,499.9	15.3	32.16	139,514.7	19.6	78.03
1991	101,785.1	24.1	47.01	69,281.4	20.5	32.00	171,066.5	22.6	79.01
1992	115,237.2	13.2	46.90	78,378.9	13.1	31.90	193,616.1	13.2	78.80
1993	129,581.7	12.4	46.70	89,029.0	13.6	32.08	218,610.7	12.9	78.78
1994	150,737.9	16.3	46.61	103,924.5	16.7	32.13	254,662.4	16.5	78.74
1995	179,825.6	19.3	47.65	113,828.8	9.5	30.17	293,654.4	15.3	77.82
1996	204,421.1	13.7	48.85	116,231.7	2.1	27.77	320,652.8	9.2	76.62
1997	213,930.9	4.7	47.20	130,005.3	11.9	28.68	343,936.2	7.3	75.88
1998	200,991.0	-6.0	45.23	134,131.1	3.2	30.18	335,122.1	-2.6	75.42
1999	210,411.5	4.7	43.59	149,183.2	11.2	30.90	359,594.7	7.3	74.49
2000	229,605.2	9.1	43.99	160,338.7	7.5	30.72	389,943.9	8.4	74.71
2001(P)	244,898.2	6.7	44.93	157,458.2	-1.8	28.89	402,356.4	3.2	73.83

주: 증가율과 비중은 각각 전년대비 증가율과 경상GDP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DB

<표 II-5> GDP 추이

(단위: 십억원, %)

	경상GDP		실질GDP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1980	37,788.5	21.76	114,977.7	-2.09
1981	47,382.6	25.39	122,412.2	6.47
1982	54,431.3	14.88	131,285.8	7.25
1983	63,857.5	17.32	145,330.6	10.70
1984	73,003.6	14.32	157,318.4	8.25
1985	81,312.3	11.38	167,501.9	6.47
1986	94,861.7	16.66	185,869.0	10.97
1987	111,197.7	17.22	206,287.2	10.99
1988	132,111.8	18.81	227,863.9	10.46
1989	148,197.0	12.18	241,725.5	6.08
1990	178,796.8	20.65	263,430.4	8.98
1991	216,510.9	21.09	287,737.9	9.23
1992	245,699.6	13.48	303,383.9	5.44
1993	277,496.5	12.94	320,044.2	5.49
1994	323,407.1	16.54	346,448.1	8.25
1995	377,349.8	16.68	377,349.8	8.92
1996	418,479.0	10.90	402,821.2	6.75
1997	453,276.4	8.32	423,006.7	5.01
1998	444,366.5	-1.97	394,710.4	-6.69
1999	482,744.2	8.64	437,709.4	10.89
2000	521,959.2	8.12	478,532.9	9.33
2001(P)	545,013.3	4.42	493,025.5	3.0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DB

최근에는 향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자주 바뀌고 있어 2003년은 물론이고 2002년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도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전망이 용이하지 않다.精緻한 모형추정을 통한 거시경제 전망치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예측기관에서 추정하는 전망치도 수시로 바뀌고 그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과 2003년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로서 각각 6.46%와 10.77%를 가정하여 사용

하기로 한다(<표 II-6> 참조).

<표 II-6> 주요 거시지표 전망(2002~2006년)

(단위: 십억원, %)

	2002전망	2003전망	2004전망	2005전망	2006전망
실질GDP	521,978.22 (6.55)	557,211.75 (6.75)	603,460.33 (8.30)	634,960.96 (5.22)	667,153.48 (5.07)
경상GDP	571,870.01 (6.46)	633,460.41 (10.77)	712,579.62 (12.49)	760,821.26 (6.77)	811,187.62 (6.62)
설비투자(경상)	69,066.48 (5.43)	73,977.73 (7.11)	84,594.55 (14.35)	84,637.25 (0.05)	85,249.32 (0.72)
민간소비(경상)	314,010.56 (7.81)	346,678.35 (10.40)	383,943.09 (10.75)	411,373.20 (7.14)	441,446.07 (7.31)
상품수출(원화)	207,737.39 (6.43)	251,718.00 (21.17)	290,755.02 (15.51)	312,725.14 (7.56)	325,630.77 (4.13)
상품수입(원화)	191,860.47 (4.93)	224,844.29 (17.19)	261,519.30 (16.31)	278,663.04 (6.56)	291,966.38 (4.77)
소비자물가지수	1.2914939 (2.19)	1.3226189 (2.41)	1.3596523 (2.80)	1.3837181 (1.77)	1.4102855 (1.92)
생산자물가지수	1.2313411 (-0.57)	1.2568299 (2.07)	1.2929009 (2.87)	1.2958746 (0.23)	1.2904319 (-0.42)
GDP디플레이터	1.0939078 (-0.20)	1.1338354 (3.65)	1.1790755 (3.99)	1.1962900 (1.46)	1.2139951 (1.48)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3년도 국세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전망자료: 2002~2006년의 국세수입 전망」, 2002. 5

다. 소득 분포 및 세부담 분포와 소득불평등도 변화 분석모형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목표연도에서 표본조정 후의 표본자료(조정표본)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세법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 소득불평등도 지수 및 실효세부담의 변화를 매개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체계나 세율체계, 세율구간의 변화가 한 예이다. 가상

적인 세법의 범주에는 세법개정안이나 기존 또는 세법개정 전의 세법, 또는 분석하고자 하는 가상의 세법 등을 망라한다.

세부담 조정의 유형으로 크게 ① 세원별 과세비중을 고정시킨 채로 세수 또는 조세부담률을 조정하는 경우 ② 세수중립적 변화, 즉 동일 세수규모 전제하에서 세원별 과세비중을 변화시키는 경우, 그리고 ③ 세원별 과세비중과 조세부담률의 변화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별 세법항목에 대한 정책대안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위의 세 가지 방안 중 일반적으로 흔히 현실에서 관찰하게 되는 것은 뒤의 두 가지 방안에 의한 것이고 첫 번째 방안은 가상적으로 세율만을 비례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원별 세부담의 누진도에는 변화가 없고¹¹⁾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수준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원별 세수비중 조정과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보기 위해 가상세법과 별개로 기준세법¹²⁾하에서 추정된 세부담액을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비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부담의 누진도에는 변화를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순수하게 세수비중과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11) 세율의 비례적인 조정에 의한 세부담의 비례적 조정을 통해 해당 세목의 세부담의 누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세율 조정을 통해 산출한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타당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산출세액으로부터 각종 세액공제가 차감되어 결정세액이 산출되는데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세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이 비례적으로 변하더라도 최종적인 세부담액, 즉 결정세액의 변화는 반드시 비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결정세액도 비례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자.

12)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목표연도에 실제 적용되는 세법 또는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법을 지칭한다.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1. 소득 분포

가. 총소득 분포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로부터 계절성과 표본선택편의를 조정한 후의 도시가구의 총소득 분포는 <표 Ⅲ-1>~<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분석대상기간인 1982~2000년 동안 평균적으로 1998년에 명목소득 평균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항상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자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의 총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급여소득(wage and salary income)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근로자가구보다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을 위주로 하는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수준이 조금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업가구를 포함한 무직가구를 모두 근로자가구에 포함시킨 가구유형구분의 형식 차이에 의한 기술적인 차이에 의한 측면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1998년 한 해에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2년 연속 평균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1997년부터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업이 크게 증가되기 시작하는 등 실업가구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구의 소득감소가 이미 경제위기가 극심하

<표 III-1>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전체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1502	2081	2443	2823	3170	3567	4114	4856	5909	9078	3954
1983	1636	2256	2697	3120	3553	3991	4541	5334	6464	9738	4333
1984	1794	2531	3055	3488	3943	4483	5038	5864	7198	10801	4820
1985	1968	2751	3256	3677	4078	4577	5209	6038	7395	11349	5030
1986	2182	3122	3692	4184	4732	5337	6013	6971	8511	12603	5735
1987	2608	3608	4200	4861	5471	6150	7030	8226	10009	15138	6730
1988	3133	4391	5222	5942	6670	7469	8489	9692	11796	17733	8052
총	3886	5401	6383	7263	8103	9078	10242	11788	14277	21713	9813
소	4890	6715	7817	8830	9816	10982	12303	14040	16762	24415	11655
1991	5982	8240	9601	10893	12175	13639	15192	17242	20146	28178	14128
1992	6896	9656	11290	12760	14187	15851	17609	19748	23495	32954	16445
1993	7442	10384	12182	13815	15446	17057	19008	21423	24865	36083	17771
1994	8343	11770	13785	15582	17392	19489	21834	24767	29081	40070	20214
1995	9342	13378	15715	17753	19946	22214	24897	28372	33124	45305	23003
1996	10275	14703	17258	19785	22371	25018	28083	31703	36862	51374	25745
1997	6966	13373	17105	20152	22951	25686	29057	33135	39042	55514	26299
1998	5070	10054	13777	16833	19768	22521	25778	29695	35405	51466	23036
1999	9510	13822	16666	19107	21748	24515	27796	32051	37865	53994	25708
2000	10322	15129	18250	21143	24250	27425	31160	35978	42797	63685	29017
	1	2	3	4	5	6	7	8	9	10	계
1982	3.80	5.26	6.20	7.12	8.03	9.04	10.37	12.3	14.97	22.92	100
1983	3.77	5.20	6.23	7.20	8.20	9.22	10.44	12.37	14.88	22.48	100
1984	3.72	5.24	6.37	7.20	8.14	9.35	10.48	12.16	14.94	22.39	100
1985	3.92	5.45	6.51	7.30	8.11	9.08	10.37	12.01	14.70	22.56	100
1986	3.81	5.44	6.43	7.27	8.25	9.33	10.50	12.13	14.80	22.03	100
1987	3.88	5.35	6.23	7.25	8.11	9.16	10.42	12.24	14.90	22.47	100
1988	3.89	5.46	6.48	7.40	8.27	9.27	10.57	12.02	14.68	21.96	100
1989	3.96	5.50	6.49	7.39	8.28	9.25	10.43	12.01	14.57	22.11	100
1990	4.19	5.77	6.72	7.56	8.43	9.41	10.55	12.05	14.43	20.9	100
1991	4.24	5.82	6.8	7.69	8.63	9.68	10.71	12.22	14.26	19.94	100
1992	4.20	5.87	6.87	7.75	8.61	9.66	10.66	12.06	14.28	20.04	100
1993	4.18	5.85	6.85	7.75	8.74	9.58	10.68	12.07	13.98	20.32	100
1994	4.13	5.82	6.82	7.71	8.62	9.60	10.82	12.25	14.37	19.86	100
1995	4.06	5.82	6.83	7.71	8.69	9.64	10.84	12.32	14.42	19.68	100
1996	3.99	5.72	6.71	7.67	8.69	9.72	10.89	12.32	14.35	19.95	100
1997	2.65	5.08	6.50	7.67	8.74	9.74	11.07	12.61	14.82	21.13	100
1998	2.20	4.36	5.99	7.29	8.57	9.79	11.19	12.9	15.36	22.34	100
1999	3.70	5.37	6.50	7.42	8.46	9.55	10.80	12.47	14.73	21.01	100
2000	3.56	5.20	6.29	7.30	8.35	9.44	10.74	12.40	14.75	21.97	100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47

<표 III-2>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근로자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총 소 득	1982	1496	2085	2442	2822	3169	3571	4112	4850	5900	8965	3852
	1983	1619	2260	2691	3119	3547	3988	4552	5327	6463	9871	4206
	1984	1768	2525	3066	3489	3946	4473	5036	5863	7199	10717	4648
	1985	1952	2760	3246	3684	4083	4583	5212	6047	7359	11389	4927
	1986	2154	3112	3684	4174	4734	5325	6033	6980	8432	12470	5594
	1987	2615	3603	4191	4864	5474	6147	7011	8207	9870	14709	6492
	1988	3086	4373	5206	5933	6660	7466	8493	9679	11817	17445	7754
	1989	3857	5412	6384	7259	8084	9079	10256	11789	14297	21351	9476
	1990	4799	6706	7817	8835	9823	10960	12311	14013	16643	24315	11274
	1991	5950	8230	9611	10910	12191	13630	15182	17299	20069	27880	13739
	1992	6845	9629	11269	12782	14194	15864	17600	19772	23387	32475	16107
	1993	7329	10381	12167	13802	15437	17040	19022	21415	24922	35791	17252
	1994	8281	11751	13799	15594	17354	19500	21796	24758	29010	40098	19790
	1995	9178	13403	15740	17739	19942	22195	24957	28386	33053	44795	22479
	1996	10243	14658	17250	19802	22367	24982	28037	31602	36719	51091	25371
	1997	6792	13274	17104	20136	22909	25759	29110	33211	39170	54484	25082
	1998	4979	9930	13799	16793	19704	22625	25762	29857	35414	51381	21671
	1999	9453	13757	16635	19140	21748	24547	27822	31965	37914	54087	25173
	2000	10206	15166	18206	21166	24261	27477	31218	35880	42785	64498	27985
		1	2	3	4	5	6	7	8	9	10	계
점 유 비	1982	4.07	5.82	7.05	7.45	7.82	8.55	10.71	12.69	14.53	21.31	100
	1983	4.31	5.66	6.51	7.57	9.00	9.35	10.63	12.31	13.56	21.11	100
	1984	4.33	6.32	7.08	7.52	7.95	9.67	9.88	11.53	14.47	21.25	100
	1985	4.56	6.04	6.94	7.58	8.48	9.00	8.97	10.43	15.71	22.30	100
	1986	4.31	6.10	6.34	7.77	8.90	9.42	9.98	11.19	14.09	21.92	100
	1987	4.36	5.63	7.04	7.98	8.05	10.27	9.84	12.64	13.36	20.84	100
	1988	4.53	6.10	6.62	8.09	8.96	9.99	9.87	11.82	13.93	20.08	100
	1989	4.86	6.50	6.86	7.29	8.30	9.14	10.20	12.28	14.02	20.55	100
	1990	4.99	6.42	7.41	8.14	8.98	9.16	10.33	10.81	13.45	20.32	100
	1991	5.12	6.32	7.44	7.77	9.17	9.52	10.84	11.35	12.74	19.72	100
	1992	4.80	6.47	6.98	8.17	8.33	9.50	10.02	12.24	14.32	19.16	100
	1993	5.03	6.53	7.14	8.36	8.82	9.17	10.48	11.95	13.26	19.26	100
	1994	5.03	6.03	7.19	7.81	8.28	9.55	10.36	12.50	14.12	19.14	100
	1995	4.75	6.25	7.38	7.29	8.78	9.45	11.67	11.71	13.61	19.09	100
	1996	4.72	6.10	6.71	7.59	8.08	9.40	10.23	12.66	14.92	19.61	100
	1997	3.69	5.69	6.35	8.18	8.69	9.34	10.67	12.94	14.94	19.51	100
	1998	3.31	5.31	6.37	7.08	8.73	9.32	10.45	12.50	15.21	21.71	100
	1999	4.90	5.64	6.48	6.72	7.64	9.46	10.41	13.17	15.5	20.07	100
	2000	4.59	5.81	6.35	7.72	8.61	9.29	10.89	11.57	15.01	20.17	100

<표 III-3>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자영업자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총 소 득	1982	1517	2071	2447	2825	3173	3560	4119	4867	5926	9263	4167
	1983	1693	2246	2712	3124	3570	3999	4518	5349	6465	9526	4610
	1984	1893	2560	3023	3485	3936	4507	5041	5866	7198	10954	5219
	1985	2041	2722	3286	3661	4067	4565	5205	6026	7499	11260	5280
	1986	2288	3157	3710	4209	4727	5362	5974	6956	8667	12902	6074
	1987	2581	3624	4237	4851	5466	6164	7068	8280	10258	16027	7380
	1988	3353	4457	5263	5967	6700	7480	8481	9721	11754	18261	8830
	1989	4027	5360	6382	7270	8143	9077	10214	11786	14241	22338	10578
	1990	5277	6744	7818	8818	9800	11022	12287	14081	16963	24603	12509
	1991	6120	8268	9571	10856	12136	13657	15212	17150	20261	28775	14981
	1992	7059	9728	11334	12710	14173	15826	17622	19698	23712	33822	17155
	1993	7977	10391	12215	13849	15466	17088	18979	21440	24764	36617	18964
	1994	8636	11813	13750	15557	17460	19465	21901	24788	29221	40019	21136
	1995	9953	13318	15654	17775	19954	22248	24747	28347	33241	46251	24104
	1996	10388	14809	17274	19754	22378	25082	28156	31914	37174	51899	26494
	1997	8742	13627	17109	20185	23024	25570	28974	32992	38813	57058	28756
	1998	6341	10433	13736	16891	19875	22379	25800	29464	35390	51589	25551
	1999	9869	13965	16724	19060	21747	24459	27752	32239	37759	53842	26754
	2000	10850	15040	18326	21099	24231	27340	31058	36118	42817	62598	30972
		1	2	3	4	5	6	7	8	9	10	계
점 유 비	1982	3.28	4.16	4.57	6.47	8.43	9.96	9.73	11.55	15.81	26.03	100
	1983	2.71	4.30	5.68	6.48	6.63	8.95	10.07	12.50	17.49	25.19	100
	1984	2.46	3.01	4.90	6.56	8.53	8.67	11.74	13.46	15.90	24.77	100
	1985	2.47	4.10	5.52	6.69	7.28	9.25	13.54	15.61	12.41	23.14	100
	1986	2.71	4.00	6.64	6.18	6.82	9.14	11.65	14.20	16.39	22.28	100
	1987	2.73	4.69	4.29	5.51	8.27	6.47	11.81	11.26	18.6	26.37	100
	1988	2.41	3.98	6.14	5.81	6.71	7.62	12.16	12.48	16.42	26.28	100
	1989	2.14	3.47	5.76	7.60	8.25	9.46	10.91	11.47	15.67	25.28	100
	1990	2.59	4.44	5.33	6.38	7.31	9.92	11.00	14.56	16.41	22.05	100
	1991	2.46	4.83	5.51	7.55	7.55	10.01	10.44	13.98	17.31	20.37	100
	1992	3.02	4.68	6.65	6.91	9.15	9.97	11.93	11.69	14.21	21.79	100
	1993	2.42	4.45	6.23	6.47	8.57	10.42	11.08	12.33	15.49	22.53	100
	1994	2.28	5.41	6.06	7.52	9.32	9.69	11.77	11.75	14.87	21.32	100
	1995	2.72	4.96	5.76	8.52	8.50	10.01	9.21	13.51	15.98	20.82	100
	1996	2.59	4.98	6.72	7.81	9.87	10.34	12.17	11.66	13.26	20.61	100
	1997	0.82	4.01	6.75	6.78	8.84	10.45	11.76	12.02	14.59	23.98	100
	1998	0.47	2.88	5.40	7.63	8.32	10.51	12.34	13.52	15.60	23.32	100
	1999	1.49	4.86	6.53	8.71	9.96	9.71	11.51	11.17	13.32	22.74	100
	2000	1.82	4.16	6.19	6.58	7.90	9.71	10.47	13.81	14.31	25.05	100

었던 1998년에 앞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성명재(2001B)에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가. 지니계수의 산출식

성명재(2001B)에서는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text{Gini} = \frac{\sum_{i=1}^N w_i \cdot cw_{y_i}}{\sum_{i=1}^N w_i \cdot cw_i}$$

단, w_i , cw_i , cw_{y_i} 는 각각 i -번째 표본의 추출 가중치, 누적가중치, 누적가중소득비중을 나타내며, cw_i , cw_{y_i} 는 각각 $cw_i = \sum_{j=1}^i w_j$,

$$cw_{y_i} = \frac{\sum_{j=1}^i w_j \cdot y_j}{\sum_{i=1}^N w_i \cdot y_i}$$

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상기의 공식에 의한 지니

계수 추정치는 표본의 수가 적을수록 추정오차가 커지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공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text{Gini} &= \left\{ 0.5 - \sum_{i=1}^N \frac{(cv_{i-1} + cv_i)}{2} w_i \right\} \div 0.5 \\ &= 1 - \sum_{i=1}^N (cv_{i-1} + cv_i) w_i \end{aligned}$$

단, cv 와 v 는 각각 소득비중 및 누적소득비중을 나타내며, cv_0 는 0이다($cv_0=0$). 위의 두 공식 중 어떤 것이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표 III-4>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정치

	계절조정후·선택편의 조정전				계절·선택편의 조정후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
		전체	취업 근로자			전체	취업 근로자	
1982	0.28715	0.28563	0.28062	0.28769	0.28678	0.28444	0.27920	0.28937
1983	0.27989	0.28219	0.27654	0.27155	0.28270	0.28463	0.27879	0.27512
1984	0.27891	0.28591	0.28280	0.25738	0.28109	0.28539	0.28276	0.26641
1985	0.27214	0.27779	0.27153	0.25485	0.27563	0.28258	0.27683	0.25639
1986	0.27269	0.27770	0.27691	0.25824	0.27368	0.27732	0.27678	0.26253
1987	0.27892	0.27679	0.27204	0.27965	0.27986	0.27383	0.27181	0.28886
1988	0.26937	0.26796	0.26411	0.26573	0.27082	0.27034	0.26569	0.26583
1989	0.26900	0.26888	0.26189	0.26514	0.26957	0.27185	0.26503	0.26058
1990	0.24862	0.25360	0.24606	0.23354	0.25236	0.25693	0.24819	0.23780
1991	0.23895	0.24382	0.23910	0.22618	0.24189	0.24609	0.24042	0.22973
1992	0.23883	0.24122	0.23711	0.23237	0.24147	0.24379	0.23900	0.23529
1993	0.23704	0.23943	0.23338	0.22862	0.24242	0.24698	0.23922	0.22883
1994	0.23998	0.24508	0.23679	0.22842	0.24293	0.24869	0.23947	0.22901
1995	0.23752	0.24050	0.23143	0.23029	0.24280	0.24674	0.23579	0.23308
1996	0.24351	0.24878	0.24150	0.23273	0.24685	0.25258	0.24448	0.23473
1997	0.27648	0.29064	0.23802	0.24547	0.28102	0.29621	0.24209	0.24737
1998	0.30886	0.33430	0.25221	0.25861	0.31121	0.33777	0.25163	0.25824
1999	0.26619	0.27474	0.25438	0.24849	0.26726	0.27731	0.25700	0.24630
2000	0.27666	0.28445	0.26783	0.25985	0.27988	0.28718	0.26878	0.26323

주: NN은 선택편의 제거 과정에서 밀도조정(density smoothing)에 사용된 표본의 수입.

자료: 성명재(2002)

나.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표 III-4>에서는 계절조정 후, 표본선택편의의 조정 전후의 지니계수 추정치를 나타내었다. 표본선택편의를 제거하고 나면 지니계수의 값이 매우 미소하게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택편의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는 매우 미소하기 때문에 다소의 수준 변화 이외에 질적인 면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성명재(2002)에서 보듯이 가설검정 과정에서 비록 선택편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편의(bias)의 절대수준은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지니계수 변화추이를 요약하자면 1982년 이래 1990년대 초까지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에는 저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

최근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가운데 특징적인 점은 1998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을 당시에 지니계수가 매우 크게 상승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이미 1997년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가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근로자가구 중에서도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상승한 폭이 근로자가구 전체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 정의상 기준에 취업근로자가구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가구 등 무직가구로 전환된다면 그 순간부터 취업근로자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직가구를 포함한 경우보다 지니계수의 상승폭이 작다. 취업근로자가구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가구가 실업가구화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지 않은 가구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업가구화한 이후에는 소득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기간과 같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에도 취업근로자가구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가구만이 잔류하기 때문에 취업가구에서의 소득 분포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변화추이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취업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즉 취업가구간의 지니계수가 서로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취업근로자가구에 무직가구를 포함시킬 경우 지니계수가 상승하지만, 무직가구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두 가지 유형의 취업가구의 상대적인 소득분배 상태는 비슷하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취업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지니계수가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두 유형의 가구를 합칠 경우에도 지니계수가 각각의 지니계수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니계수는 소득점유비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소득의 절대수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록 양자의 지니계수가 서로 비슷하더라도 취업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큰 경우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양자간의 절대소득수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취업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를 합친 집단의 지니계수를 산출할 경우 각각의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소득불평등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지니계수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변이자승계수(SCV: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와 평균대수편차(MLD: Mean Log Deviation), Atkinson 지수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CV = \frac{\text{var}(W_k)}{\mu^2} = \frac{\frac{1}{n} \sum_k (W_k - \mu)^2}{\mu^2}$$

$$MLD = \frac{\sum_k \log\left(\frac{\mu}{W_k}\right)}{n}$$

$$\text{Atkinson} = 1 - \left[\frac{1}{n} \sum_k \left(\frac{W_k}{\mu} \right)^{1-a} \right]^{\frac{1}{1-a}}$$

상기의 지수 가운데 Atkinson 지수의 경우에는 모수(parameter)로서 불평등회피도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의 식에서 불평등회피도는 a 로 표시되어 있으며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0 < a < \infty$)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a 의 값이 커질수록 저소득계층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0.5$ 를 많이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Atkinson 지수도 마찬가지이다. SCV는 0과 무한대 사이, MLD는 0과 $(1+\log(100))\log(\mu)$ 사이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 이외에 상기의 지수를 사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의 경우와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소득 분포 구조의 변화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의 지수를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부가가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불평등도 가운데 지니계수를 대표적인 지수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여타 지수의 분석결과는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므로 생략하였다.

라. 조세집중지수

조세집중도라 함은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에서 도출된다. 지니계수와 관련하여 로렌츠 곡선을 도출함에 있어 X축은 소득 순으로 나열한 누적가구점유비, Y축은 누적소득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조세집중도와 관련해서는 지니계수에서 소득을 조세부담으로 대체하면 된다. 즉, 조세집중도의 로렌츠 곡선을 도출함에 있어 X축은 조세부담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가구의 누적가구점유비를 사용하고 Y축은 해당 가구에 대응한 누적세부담비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로렌츠 곡선은 항상 45도선과 수평선 사이에서 나타나

게 된다. 조세집중도는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45도선 아래의 면적 중 조세집중 로렌츠 곡선과 45도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조세집중도가 낮을수록 소득계층별 세부담이 평등한 반면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조세집중도가 높을수록 세부담이 한 쪽, 즉 대부분의 경우 고소득층에 치우쳐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조세집중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 조세집중지수 또는 분배적 역진도 지수로는 KP(Khetan-Poddar)지수, K(Kwakwani)지수, KPS(Khetan-Poddar-Suits)지수, KU(Kuznets)지수, TH(Theil's entropy)지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KPS 지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KPS 지수는 Khetan and Poddar(1976)와 Suits(1977)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안된 지수이다. KPS 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집중곡선¹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별로 최저소득에서 최고소득으로 표본을 재배열한 후 X축을 누적소득점유비, Y축을 X축에 대응되는 (세목별) 누적세부담점유비로 정의하여 꺾적을 연결하여 얻게 되는 곡선이 조세집중곡선(R)이다. 조세집중곡선은 개념상 조세집중도에서 논하는 로렌츠 곡선과 유사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X축이 소득기준 누적가구비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조세부담 기준 누적가구비라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후자의 경우에는 로렌츠 곡선이 45도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지만 조세집중곡선은 45도선 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5도선 밑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조세집중곡선이 45도선 아래 나타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효세부담률이 점차 상승하여 세부담이 누진적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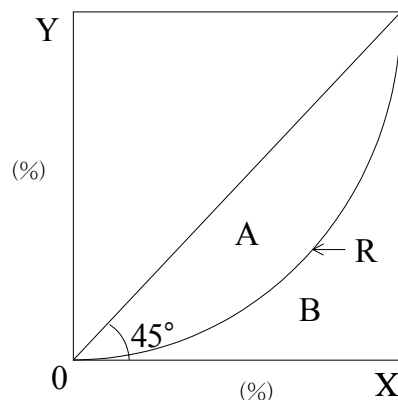
13) 로렌츠 곡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조세집중곡선이 45도선 위에 위치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효세부담률이 하락하여 세부담이 역진적임을 의미한다. KPS 지수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45도선 아래의 삼각형의 면적 대비 조세집중곡선(R) 아래 도형의 면적 비율로 나타낸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이 누진적일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므로 조세집중곡선의 기울기도 점차 가팔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조세집중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위로 오목)한 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때 KPS의 값은 1미만의 값을 가진다. 반대로 세부담이 역진적일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효세부담률이 낮아지므로 조세집중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하락하면서 조세집중곡선이 위로 볼록(아래로 오목)한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 때 KPS 지수는 1을 초과한다. 세부담이 비례적일 경우에는 조세집중곡선이 45도선과 일치하여 KPS 지수는 1의 값을 가진다.

여타 지수의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지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각종 조세집중지수 가운데 조세집중도와 KPS 지수만을 보고하였다.

[그림 III-1] 조세집중곡선



3. 지난 20년간의 세제개편 요약

가. 소득세

1) 경제위기 이전의 소득세 변천

소득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공제, 세율, 세율구간 등이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면세점은 물론이고 실효세부담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가운데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는 소득세 면세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표 III-5>에서 보듯이 근로소득공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표 III-5>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1983~2002년)

(단위: 만원)

	근로소득공제액	공제 한도
1983	• 94 이하: 전액, 94 초과~300 이하: 20%, 300 초과: 10%	170
1989	• 140 이하: 전액, 140 초과~400 이하: 25%, 400 초과: 15%	230
1991	• 230 이하: 전액, 230 초과: 30%	490
1993	• 250 이하: 전액, 250 초과: 30%	600
1994	• 270 이하: 전액, 270 초과: 30%	620
1995	• 310 이하: 전액, 310 초과: 30%	690
1996	• 400 이하: 전액, 400 초과: 30%	800
1999	• 500 이하: 전액, 500 초과~1,500 이하: 40%, 1,500 초과: 10%	1200
2001	• 500 이하: 전액, 500 초과~1,500 이하: 40%, 1,500 초과~4,500: 10%, 4,500 초과: 5%	
2002	• 500 이하: 전액, 500 초과~1,500 이하: 45%, 1,500 초과~3,000 이하: 15%, 3,000 초과~4,500 이하: 10%, 4,500 초과: 5%	

주: 2001년부터는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됨. 공제율은 연금소득 기준으로 250만원 이하분: 전액, 250~500만원: 40%, 500~900만원: 20%, 900만원 초과분: 10%임.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57

대해서는 공제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0년까지 근로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지정해 놓았으나 2001년부터는 공제한도를 폐지하였다.

<표 Ⅲ-6>에서 보듯이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기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995년까지만 해도 기본공제액은 공제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공제액에 차등을 두었으나 1996년부터는 1인당 100만원으로 단일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공제제도의 변천에 따른 소득세 면세점을 구해보면 <표 Ⅲ-5>와 같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1982년에 238만원이었으며 1999년 현재 1,157.1만원으로 약 다섯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점은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을 합하여 1982년에 120만원이었으며 1999년에는 460만원으로 상승하였다¹⁴⁾.

<표 Ⅲ-6> 기본공제의 변화추이(1975~2002년)

(단위 :만원)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88	1989 ~92	1993	1994 ~95	1996 ~2002
기초공제	18	18	24	24	24	30	30	30	30	48	60	72	100
배우자공제	12	12	18	24	30	30	30	42	42	54	54	54	100
부양가족공제	6	12	12	12	18	24	24	24	24	48	48	48	100

14) 최근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40% 이상이 면세자라고 알려져 있다. 1982~1999년 기간 동안 도시가구의 총소득이 7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면세점 증가추세를 앞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면세자 비율은 다소 축소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7> 소득세 면세점의 변천(4인 가구 기준)

(단위: 천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1982	2,380.0	1,200
1983~1988	2,440.0	
1989~1990	4,035.2	1,980
1991~1992	5,128.5	
1993	5,500.0	2,100
1994	5,871.4	2,220
1995	6,271.4	
1996	10,571.4	4,600
1997~1998	11,571.4	
1999~2001	12,666.7	
2002	13,363.6	

소득세율은 1982년에 6~60%, 1980년대 말까지 6~55%, 1990년대 중반에는 5~50%였으며, 1996년부터는 10~40%이다. 세율구간의 수는 1980년대 초에 16~17개에서 점차 축소되어 1996년부터는 4개이다. 지난 20년간의 소득세율 체계의 변화를 요약하자면 단순화 및 최고세율의 인하 및 최저세율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 부담을 여타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과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주로 과표와 한계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부담 분포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일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세의 세율체계를 다단계화하는 효과도 지닌다¹⁵⁾.

1980년대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으로부터 일정률을 공제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1989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재신설되면서

15) 성명재·전영준(1998) 참조

<표 III-8>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의 변화추이

(단위: 만원, %)

1982년 17단계		1983년 16단계		1989년 8단계		1991년 5단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이하	6	180이하	6	250이하	5	400이하	5
120~180	7	180~250	8	250~500	10	400~1,000	16
180~240	8	250~350	10	500~800	15	1,000~2,500	27
240~300	10	350~480	12	800~1,200	20	2,500~5,000	38
300~390	12	480~630	15	1,200~1,700	25	5,000 초과	50
390~480	15	630~800	18	1,700~2,300	30		
480~600	18	800~1,000	21	2,300~5,000	40		
600~840	22	1,000~1,250	24	5,000 초과	50		
840~1,140	26	1,250~1,550	27				
1,140~1,500	30	1,550~1,900	31				
1,500~1,900	34	1,900~2,300	35				
1,900~2,400	38	2,300~2,900	39				
2,400~3,000	42	2,900~3,700	43				
3,000~3,800	46	3,700~4,700	47				
3,800~4,800	50	4,700~6,000	51				
4,800~6,000	55	6,000 초과	55				
6,000 초과	60						

<표 III-8>의 계속

(단위 : 만원, %)

1993년 6단계		1994년 6단계		1996년 4단계		2002년 4단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이하	5	400이하	5	1,000이하	10	1,000이하	9
400~800	10	400~800	9	1,000~4,000	20	1,000~4,000	18
800~1,600	20	800~1,600	18	4,000~8,000	30	4,000~8,000	27
1,600~3,200	30	1,600~3,200	27	8,000~8,000	40	8,000~8,000	36
3,200~6,400	40	3,200~6,400	36				
6,400 초과	50	6,400 초과	4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정책50년 소득세자료집』, 1997.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02.

<표 III-9> 근로소득세액공제 변화추이(1982~2002년)

(단위: 만원)

	주요내용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급여액 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 월정급여액 4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급여액 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30% • 월정급여액 4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 월정급여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
1989	※ 폐지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자: 산출세액의 20%, 3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신설
1991	•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50만원 한도
1993	• 산출세액의 20%, 50만원 한도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60만원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40만원 ※ 1997년 개정과 동일하며 공제한도만 40만원으로 하향조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공제하는 제도로 개편되었다. 1990년대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공제한도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의 단계 수를 사실상 늘리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세부담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명재·전영준(1998)의 연구에서 보듯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이용하더라도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세 변천

최근 5년간(1998~2002) 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일부 특별공제의 공제한도,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변화 및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의 한시적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수준과 공제율이 거의 매년 상향조정되었다. 500만원 이하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해준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범위는 1998년 30%에서 1999년 40%, 2002년 45%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의 공제한도도 1998년까지는 900만원, 2000년까지는 1,2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철폐는 사실상 근로소득의 최고세율을 현재 수준에서 5/100만큼 인하해주는 효과를 가진다¹⁶⁾. 이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1998년 약 1,157만원에서 1999~2001년 약 1,267만원, 2002년에는 약 1,33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0%, 20%, 30%, 40%의 4단계 세율이 적용되어 오다가 2001년 말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 귀속분 소득부터는 9%, 18%, 27%, 36%로 종전에 비해 각각 1/10씩 하향조정되어 적용되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한계세율은 각각 9.9%, 19.8%, 29.7%, 39.6%이다.

16)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의 규모와 납세자의 인적특성, 각종 비용공제 항목 및 소득공제 수준, 세액공제 수준 등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한도 철폐에 따른 효과가 반드시 최고세율만의 5% 인하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세율구간에서도 일부의 납세자에 대해 5/100의 세율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각종 비용공제적 성격을 지니는 특별공제의 공제한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기타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는 2000년부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의료비공제 한도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액 중 종전의 100만원 한도에서 2000년에는 200만원, 2001년부터는 3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되었다.

성명재(1997B)의 연구에서 1995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특별공제의 한도 확대는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특별공제의 한도를 철폐하더라도 세수감소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상기의 연구는 1995년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현재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로 대표되듯이 경제여건이 매우 급격히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된 만큼 1995년과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제반 환경과 가정이 달라진 상황에서 기존 연구의 결과가 변화된 현재 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기 연구의 결과가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또다른 연구(성명재 2000B)에 의하면 의료비지출이 도시가구의 총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2.7~2.9% 정도로 상당히 낮다. 그러나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중년가구 및 노년가구의 경우 점유비가 3%를 초과하며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점유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연구의 제VI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미리 인용하면,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의료비특별공제의 한도를 폐지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는 최대한 근로소득세 세수의 약 4% 정도에 불과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특별공제의 허용범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비공제제도하에서는 실제로 의료비공제의 한도를 확대해주더라도 세수감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의료비공제의 한도 확대는 일시적으로 목돈을 의료비로 지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료비 특별공제의 의의가 있다¹⁷⁾.

그 밖에도 감가상각 및 유지보수비 등을 통해 물적자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응하여 인적자본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측면에서 의료비공제의 한도를 확대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비 중 유치원과 본인의 대학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도 다소 상향조정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어 2001년도분 근로소득세부터 적용되었다.

17) 물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세 면세자거나 또는 실제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아 의료비공제를 확대해주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보기에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그들의 실질적인 세경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의료비공제의 확대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의료비공제 한도의 확대에 따른 세부담 경감과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실제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평균적인 효과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게 추정되므로 통계적·경제학적으로 유의하게 얼마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 III-10> 최근의 주요 특별공제한도 변화

(단위: 만원)

	공제한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보장성보험료	50	50	70	70	70
의료비	100	100	200	300	300
교육비(유치원)	70	70	100	100	100
교육비(본인, 대학)	230	230	300	300	300

주: 1. 보장성보험료 중 의료보험료는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공제
 2.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대상으로 공제함.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최장 2년에 걸쳐 불입액(최고한도 5천만원)의 5%(1차연도)(장기증권저축의 경우 보유 2차연도의 경우 7%)를 세액공제해 준다.

2001~2002년에 걸쳐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소득공제대상한도액이 폐지되는 등 공제대상소득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외환위기 및 그에 뒤이은 금융위기로 인해 1997년 말의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면서 1998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되었다. 동년 10월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22%로 상향조정되었다. 경제가 회복된 2000년부터는

<표 III-1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변동추이

(단위: %)

	1996.1.1~	1998. 1. 1~	1998. 10. 1~	2000. 1. 1~	2001. 1. 1~
이자소득	15	20	22	20	15
배당소득	15	20	20	20	15

주: 실제 적용된 일자 기준이며, 장기채권, 장기저축,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은 제외

이자·배당소득세율이 20%로 단일화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서 세율도 15%로 하향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소비세

1) 1982~1999년 기간의 소비세 변천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10%의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담배가 새로이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등 과세대상의 범위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세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별소비세는 지난 20년간 여러 번 개편되었으며 그 중 1989년, 1994년, 1999년의 개편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89년부터는 거의 모든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세율구조도 단순화되었다. 식음료품에 대해서는 14~28%의 세율을 10~20%로 인하하였으며, 가전제품은 19.6~28%에서 15~25%, 자동차는 10.5~28%에서 10~25%로 인하되면서 10%, 15%, 20%, 25%의 기본세율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1994년에는 기본세율구조가 10%, 15%, 20%의 세 가지로 통합되면서 가전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세율을 단일세율로 개편하였다. 1994년부터는 10년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신설된 교통세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다. 1999년 12월에는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였다.

주세는 1991년 7월에 주종 분류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위스키와 청주의 세율을 각각 200%와 120%에서 150%와 70%로 인하하였다. 1994년과 1996년에는 위스키의 세율을 각각 120%와 100%로 인하하였으며, 1997년에는 맥주 세율이 150%에서 130%로 인하되었다.

전화세는 1989년부터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2000 ~ 2002년 기간의 소비세 변천

최근 소비세제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2001년 9월의 전화세 폐지와 부가가치세로의 통합, 간이과세를 비롯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 개편, 식유류 관련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개편이다. 이 가운데 세부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편은 식유류 관련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개편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형태의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간이과세제도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도시기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논외로 한다.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음료품과 소비가 대중화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대해 1999년 12월 3일부터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였다.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998년 7월 이래 2005년까지 본래의 기본세율(10%, 15%, 20%)에서 30/100만㎞ 세율을 인하한 탄력세율(7%, 10.5%, 14%)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11월 20일부터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여기서부터 한시적으로 다시 기본세율을 인하(5%, 7.5%, 10%)하여 2002년 6월까지 적용하고 있다¹⁸⁾.

교통세의 경우 고유가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도모 및 연료유 간의 왜곡된 세율 및 가격구조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시행되고 있다.

18) 특별소비세법은 2001년 12월 15일 개정되었다. 인하된 세율은 11월 20일부터 소급적용되었다.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67

<표 III-12> 석유류 관련 소비세의 세율변천

(단위: %, 원/리터, 원/kg[LPG, LNG])

		80.11.14~	83.3.26~	87. 6.9~	89.3.27~	91. 7. 1~	92.1. 1~
휘발유	유연	160(130)	100	100	100(85)	100(120)	-
	무연	-	-	100(85)	100(70)	100(100)	100(109)
경유		10(7)	10(9)				
등유		비과세					
액화석유가스		비과세	10	10(8)			
액화천연가스		비과세					
		94.1.1~	94.2.15~	94.7.15~	95.8.12~	96.1.1~	96.12.14~
(무연)휘발유		150	150(190)	150(170)	150(195)	345	345(414)
경유		20	20(25)	20		40	
등유		10	10(13)	10		17	
액화석유가스		10			18		
액화천연가스		10			14		
		97.1.1~	98.1.8~	98.5.3~	98.9.16~	99.5.6~	99.12.3~
(무연)휘발유		345(414)	455	591	691	651	630
경유		40(48)	85	110	160	160	155
등유		17(25)	60				
액화석유가스		18	40				
액화천연가스		14	40				
		00. 3. 2~	00. 5. 1~	01. 7. 1~	02. 7. 1~	03. 7. 1~	04. 7. 1~
(무연)휘발유		600	630	630(588)			
경유		137	155	185	234	276	315
등유		43	60	82	107	131	154
액화석유가스	비수송용	40					
	수송용	40	114	226	323	420	
액화천연가스		40					
중유		비과세		3	6	9	11
		05. 7. 1~	06. 7. 1~				
(무연)휘발유		630(588)					
경유		412	460				
등유		178	231				
액화석유가스	비수송용	40					
	수송용	515	704				
액화천연가스		40					
중유		15	20				

주: 1. 유연휘발유는 1993년 1월 1일부터 생산금지
 2. () 안의 숫자는 탄력세율
 3. 1996년 1월 1일부터 중가세 체계에서 중량세 체계로 과세체계 개편
 4. 교육세는 1996년 7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대상으로 본세의 15% 과세
 5. 교통세에 대해 2001년에는 3.2%, 2002년부터는 11.5%의 주행세 과세
 6. 등유에 대해서는 1리터당 20원의 기금 부과
 7. 2006년 7월 1일 이후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세분 세율을 포함한 세율
 자료: 재정경제부.

주세는 한·EU 및 미국간 WTO 주세분쟁의 결과, 2000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distilled spirits)에 대한 주세율이 72%로 단일화되었다. 소주는 종전의 35%에서 대폭 인상되었으며 위스키, 브랜디 등은 100%에서 세율이 크게 인하되었다. 2000년 맥주에 대한 주세율도 종전의 130%에서 115%로 인하되었다. 2001년에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100%로 인하되었으며 2002년에는 청주의 세율이 70%에서 30%로 하향조정되었다.

4. 주요 세목별 세부담 분포

가. 소득세

도시가계조사자료에는 이자·배당소득 관련 통계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도시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대부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종합소득세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체계는 일정한 소득공제의 바탕 위에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득세 부담은 누진적이다.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상승하여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부담비중이 증가한다. <표 III-13>은 소득계층별로 소득세 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구유형별로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소득세 부담은 근로자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하여 특별공제 등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인해 소득규모가 동일하다면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자영업자가구보다 작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일반 사업소득세의 면세점보

다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액을 경감시켜주는 또다른 요인이다.

물론 근로소득은 거의 대부분이 과세당국에 의해 포착되지만 자영업자가구의 종합소득은 일부만이 과세당국에 신고 또는 포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이 훨씬 과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1~2분위의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실업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무직가구를 근로자가구에 편입하였으며, 무직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점에서도 일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4>에서 보듯이 근로자가구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자영업자가구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5>에 의하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근로자가구가 자영업자가구보다 다소 더 높다. 이는 근로자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비중이 더 낮은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 부가가치세

도시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대체로 소득에 비례하는 편이다. 가구유형별로는 자영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더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득이 근로자가구보다 더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소득대비 점유비, 즉 실효부가가치세 부담률도 자영업자가구가 다소 더 높다.

자영업자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근로자가구보다 더 높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효부가가치세 부담률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득수준이 근로자가

<표 III-13>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 채 가 구	1982	8	15	28	42	55	78	93	137	217	567	124
	1983	6	12	25	36	47	64	84	119	226	502	112
	1984	5	15	28	43	59	77	108	154	273	595	136
	1985	10	24	40	51	64	94	130	200	283	729	162
	1986	12	31	54	64	84	114	161	244	334	806	190
	1987	15	41	53	81	95	133	198	279	464	1000	236
	1988	24	61	92	122	171	215	314	402	618	1361	338
	1989	16	56	85	122	158	224	295	410	622	1449	344
	1990	29	66	107	172	190	257	355	466	726	1435	380
	1991	28	77	104	139	192	263	371	534	771	1568	404
	1992	44	99	150	210	328	417	565	749	1084	2171	582
	1993	47	122	177	219	292	377	518	659	987	2077	547
	1994	50	134	196	253	337	434	646	825	1226	2248	635
	1995	62	174	225	327	424	581	777	1060	1426	2681	774
	1996	48	150	230	332	446	592	807	1009	1503	2884	800
	1997	10	102	227	317	455	592	811	1107	1617	3276	851
	1998	2	27	98	214	301	449	629	874	1328	2804	673
	1999	17	86	165	268	369	457	622	864	1428	2890	717
	2000	24	102	218	299	433	588	748	1223	1808	3501	895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 로 자 가 구	1982	1	6	15	23	26	41	57	95	137	352	75
	1983	1	3	11	18	30	37	51	73	133	395	75
	1984	1	10	14	23	31	44	61	91	177	462	91
	1985	4	11	23	34	42	57	60	97	229	633	119
	1986	5	19	29	42	63	75	99	145	256	722	146
	1987	9	28	49	71	71	128	145	241	379	868	199
	1988	20	53	77	118	171	210	250	351	597	1282	313
	1989	12	55	72	108	143	205	275	418	583	1294	316
	1990	22	58	87	156	167	226	297	375	616	1234	324
	1991	20	63	87	105	170	200	298	426	580	1339	329
	1992	34	88	120	182	258	350	476	730	1047	1923	521
	1993	36	101	136	180	222	280	424	539	776	1639	433
	1994	44	100	151	189	256	347	510	703	1034	1900	523
	1995	45	137	175	226	350	471	747	888	1193	2309	654
	1996	33	84	127	215	286	452	655	903	1432	2650	684
	1997	4	56	104	192	291	393	614	945	1374	2643	662
	1998	1	14	45	101	176	297	449	734	1171	2433	542
	1999	9	8	45	93	157	267	394	697	1256	2324	525
	2000	8	25	69	153	259	359	484	836	1487	2473	616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21	35	55	81	115	154	168	226	386	1015	225
	1983	18	31	55	76	84	122	156	221	428	734	192
	1984	15	28	59	89	124	155	219	300	496	905	239
	1985	25	55	82	91	118	182	300	448	415	965	268
	1986	30	61	113	116	135	206	310	481	522	1006	298
	1987	32	76	65	107	160	147	342	383	696	1360	337
	1988	37	81	132	133	170	228	480	535	671	1566	403
	1989	24	57	114	155	194	267	341	393	711	1800	406
	1990	44	85	152	209	240	326	487	671	975	1884	507
	1991	46	106	140	213	241	400	530	772	1189	2041	568
	1992	66	121	213	267	473	557	753	789	1160	2692	709
	1993	71	170	272	308	452	601	732	935	1473	3084	810
	1994	62	206	295	393	514	624	941	1091	1644	3003	878
	1995	99	251	329	541	581	812	840	1420	1916	3464	1025
	1996	79	282	434	566	768	872	1110	1222	1645	3353	1033
	1997	23	196	474	570	786	994	1208	1432	2106	4554	1234
	1998	3	51	197	421	530	729	960	1130	1618	3489	913
	1999	32	240	400	610	784	828	1067	1189	1765	3997	1091
	2000	56	247	501	574	762	1021	1248	1966	2415	5448	1423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71

<표 III-14> 소득계층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 체 가 구	1982	0.50	0.74	1.16	1.48	1.72	2.18	2.26	2.83	3.68	6.25	3.13
	1983	0.37	0.54	0.91	1.17	1.32	1.60	1.86	2.24	3.50	5.15	2.59
	1984	0.29	0.59	0.91	1.24	1.49	1.72	2.15	2.62	3.79	5.51	2.82
	1985	0.50	0.86	1.24	1.38	1.56	2.05	2.49	3.30	3.83	6.43	3.23
	1986	0.56	1.01	1.45	1.52	1.77	2.13	2.68	3.50	3.93	6.39	3.32
	1987	0.58	1.13	1.27	1.66	1.74	2.16	2.81	3.39	4.63	6.60	3.50
	1988	0.78	1.38	1.76	2.06	2.56	2.88	3.70	4.15	5.24	7.67	4.20
	1989	0.40	1.03	1.34	1.69	1.96	2.47	2.88	3.48	4.36	6.67	3.50
	1990	0.59	0.99	1.37	1.95	1.93	2.34	2.89	3.32	4.33	5.88	3.26
	1991	0.47	0.93	1.08	1.28	1.58	1.93	2.44	3.10	3.83	5.53	2.86
	1992	0.64	1.02	1.33	1.64	2.31	2.63	3.21	3.79	4.61	6.59	3.54
	1993	0.63	1.18	1.45	1.59	1.89	2.21	2.72	3.08	3.97	5.76	3.08
	1994	0.59	1.14	1.42	1.62	1.94	2.23	2.96	3.33	4.22	5.61	3.14
	1995	0.67	1.30	1.43	1.84	2.13	2.61	3.12	3.74	4.31	5.92	3.36
1996	0.47	1.02	1.33	1.68	2.00	2.37	2.87	3.18	4.08	5.61	3.11	
1997	0.15	0.76	1.32	1.57	1.98	2.30	2.79	3.34	4.14	5.90	3.24	
1998	0.03	0.27	0.71	1.27	1.52	2.00	2.44	2.94	3.75	5.45	2.92	
1999	0.18	0.62	0.99	1.40	1.70	1.86	2.24	2.70	3.77	5.35	2.79	
2000	0.24	0.67	1.19	1.41	1.79	2.14	2.40	3.40	4.22	5.50	3.08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 로 자 가 구	1982	0.09	0.29	0.63	0.82	0.81	1.15	1.38	1.95	2.31	3.88	1.90
	1983	0.04	0.15	0.40	0.58	0.84	0.93	1.13	1.36	2.06	4.06	1.74
	1984	0.07	0.38	0.47	0.67	0.79	0.97	1.21	1.55	2.46	4.28	1.90
	1985	0.19	0.39	0.72	0.94	1.02	1.25	1.15	1.61	3.09	5.57	2.36
	1986	0.22	0.62	0.78	1.01	1.33	1.41	1.65	2.08	3.01	5.73	2.54
	1987	0.34	0.76	1.17	1.46	1.30	2.08	2.06	2.92	3.79	5.73	2.95
	1988	0.63	1.21	1.47	1.98	2.57	2.81	2.95	3.62	5.07	7.23	3.88
	1989	0.31	1.01	1.14	1.49	1.76	2.26	2.68	3.55	4.08	5.96	3.22
	1990	0.45	0.87	1.11	1.76	1.70	2.06	2.41	2.67	3.67	5.06	2.78
	1991	0.33	0.77	0.91	0.97	1.40	1.47	1.96	2.47	2.88	4.75	2.33
	1992	0.49	0.91	1.06	1.43	1.82	2.21	2.71	3.70	4.46	5.84	3.17
	1993	0.48	0.98	1.11	1.31	1.44	1.64	2.23	2.52	3.12	4.54	2.44
	1994	0.53	0.85	1.09	1.21	1.47	1.78	2.33	2.84	3.55	4.74	2.59
	1995	0.48	1.03	1.11	1.27	1.75	2.12	3.00	3.13	3.60	5.10	2.84
1996	0.32	0.57	0.74	1.08	1.28	1.81	2.33	2.85	3.88	5.16	2.66	
1997	0.05	0.42	0.61	0.95	1.27	1.53	2.11	2.85	3.52	4.76	2.52	
1998	0.02	0.14	0.32	0.60	0.89	1.32	1.74	2.47	3.31	4.73	2.35	
1999	0.10	0.06	0.27	0.48	0.72	1.09	1.42	2.18	3.32	4.31	2.04	
2000	0.08	0.17	0.38	0.73	1.07	1.31	1.55	2.32	3.47	3.88	2.12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1.37	1.68	2.26	2.88	3.63	4.31	4.09	4.66	6.53	11.18	5.70
	1983	1.07	1.36	2.03	2.44	2.36	3.05	3.43	4.15	6.62	7.53	4.44
	1984	0.82	1.09	1.92	2.55	3.13	3.45	4.34	5.12	6.89	8.38	4.96
	1985	1.27	2.00	2.51	2.47	2.88	3.99	5.75	7.42	5.61	8.50	5.33
	1986	1.37	1.95	3.06	2.76	2.85	3.87	5.16	6.90	6.14	7.98	5.20
	1987	1.24	2.12	1.55	2.20	2.92	2.39	4.86	4.66	6.95	8.98	5.00
	1988	1.18	1.84	2.53	2.24	2.55	3.05	5.65	5.52	5.69	8.83	5.01
	1989	0.61	1.06	1.79	2.14	2.39	2.95	3.33	3.34	4.98	8.29	4.13
	1990	0.91	1.26	1.95	2.36	2.44	2.97	3.96	4.78	5.82	7.72	4.35
	1991	0.78	1.29	1.46	1.96	1.98	2.93	3.49	4.48	5.90	7.24	4.02
	1992	0.96	1.25	1.89	2.09	3.34	3.52	4.27	3.99	4.94	8.17	4.31
	1993	0.96	1.64	2.23	2.23	2.93	3.52	3.85	4.37	5.92	8.55	4.56
	1994	0.74	1.75	2.14	2.52	2.96	3.20	4.31	4.41	5.65	7.49	4.34
	1995	1.06	1.87	2.09	3.05	2.91	3.65	3.37	5.00	5.78	7.65	4.46
1996	0.77	1.92	2.51	2.86	3.43	3.49	3.95	3.85	4.46	6.53	4.01	
1997	0.34	1.46	2.77	2.83	3.43	3.87	4.16	4.32	5.39	8.20	4.69	
1998	0.06	0.50	1.43	2.50	2.68	3.24	3.73	3.81	4.57	6.78	3.96	
1999	0.34	1.73	2.40	3.19	3.61	3.38	3.84	3.71	4.66	7.40	4.24	
2000	0.54	1.63	2.74	2.71	3.14	3.72	4.01	5.44	5.64	8.55	4.90	

<표 III-15>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비중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가구	1982	0.61	1.24	2.29	3.37	4.41	6.27	7.48	11.09	17.56	45.67	100
	1983	0.54	1.08	2.19	3.25	4.18	5.69	7.49	10.71	20.11	44.75	100
	1984	0.39	1.11	2.05	3.16	4.32	5.70	8.01	11.33	20.10	43.83	100
	1985	0.61	1.45	2.50	3.13	3.93	5.76	7.99	12.30	17.42	44.90	100
	1986	0.64	1.65	2.81	3.34	4.41	6.00	8.47	12.77	17.50	42.41	100
	1987	0.64	1.72	2.26	3.44	4.02	5.66	8.36	11.84	19.71	42.35	100
	1988	0.72	1.80	2.72	3.62	5.06	6.36	9.31	11.89	18.33	40.18	100
	1989	0.45	1.61	2.48	3.56	4.62	6.52	8.59	11.94	18.12	42.12	100
	1990	0.76	1.75	2.82	4.51	4.99	6.75	9.34	12.27	19.17	37.64	100
	1991	0.70	1.89	2.57	3.44	4.77	6.53	9.15	13.26	19.10	38.59	100
	1992	0.76	1.70	2.58	3.60	5.62	7.18	9.68	12.93	18.62	37.32	100
	1993	0.85	2.24	3.23	3.99	5.36	6.87	9.43	12.05	18.02	37.95	100
	1994	0.78	2.11	3.09	3.99	5.32	6.81	10.18	12.99	19.27	35.46	100
	1995	0.81	2.25	2.90	4.23	5.50	7.49	10.06	13.68	18.46	34.63	100
	1996	0.60	1.88	2.87	4.13	5.58	7.40	10.07	12.62	18.82	36.03	100
	1997	0.12	1.20	2.66	3.73	5.36	6.94	9.54	13.00	18.95	38.51	100
	1998	0.03	0.40	1.46	3.17	4.47	6.69	9.35	13.00	19.74	41.69	100
	1999	0.24	1.20	2.31	3.73	5.15	6.38	8.67	12.06	19.93	40.34	100
	2000	0.27	1.13	2.44	3.35	4.84	6.56	8.36	13.67	20.21	39.17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근로자가구	1982	0.17	0.80	2.06	3.05	3.41	5.47	7.54	12.59	18.19	46.71	100
	1983	0.10	0.46	1.42	2.41	3.96	4.95	6.81	9.71	17.66	52.53	100
	1984	0.13	1.06	1.59	2.55	3.39	4.79	6.69	9.95	19.35	50.49	100
	1985	0.31	0.90	1.98	2.89	3.50	4.81	5.02	8.19	19.21	53.17	100
	1986	0.33	1.32	1.98	2.89	4.31	5.19	6.81	9.94	17.53	49.71	100
	1987	0.45	1.38	2.46	3.59	3.58	6.45	7.27	12.11	19.10	43.61	100
	1988	0.63	1.69	2.45	3.78	5.47	6.71	8.01	11.22	19.15	40.89	100
	1989	0.38	1.73	2.29	3.41	4.52	6.48	8.68	13.21	18.44	40.86	100
	1990	0.68	1.80	2.69	4.80	5.17	6.98	9.16	11.59	19.08	38.04	100
	1991	0.61	1.92	2.66	3.20	5.18	6.11	9.03	12.97	17.64	40.69	100
	1992	0.65	1.69	2.30	3.50	4.95	6.73	9.11	14.07	20.09	36.91	100
	1993	0.83	2.34	3.13	4.15	5.15	6.44	9.77	12.45	17.90	37.83	100
	1994	0.84	1.92	2.88	3.61	4.89	6.60	9.75	13.42	19.72	36.37	100
	1995	0.69	2.10	2.68	3.45	5.36	7.18	11.44	13.57	18.27	35.27	100
	1996	0.48	1.23	1.87	3.13	4.18	6.61	9.57	13.21	20.98	38.75	100
	1997	0.05	0.84	1.57	2.90	4.41	5.92	9.29	14.29	20.73	39.98	100
	1998	0.02	0.27	0.82	1.86	3.25	5.49	8.28	13.56	21.58	44.86	100
	1999	0.18	0.15	0.86	1.76	2.98	5.09	7.50	13.28	23.92	44.28	100
	2000	0.13	0.41	1.12	2.50	4.21	5.83	7.86	13.58	24.16	40.21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자영업자가구	1982	0.91	1.55	2.45	3.59	5.11	6.83	7.43	10.05	17.13	44.94	100
	1983	0.91	1.60	2.85	3.96	4.37	6.33	8.08	11.56	22.20	38.15	100
	1984	0.62	1.15	2.47	3.71	5.15	6.51	9.19	12.57	20.76	37.88	100
	1985	0.94	2.04	3.06	3.39	4.39	6.79	11.19	16.73	15.49	35.98	100
	1986	1.00	2.04	3.78	3.87	4.52	6.94	10.42	16.10	17.48	33.84	100
	1987	0.96	2.27	1.92	3.20	4.74	4.38	10.12	11.39	20.70	40.33	100
	1988	0.92	2.01	3.28	3.31	4.22	5.65	11.93	13.25	16.68	38.75	100
	1989	0.58	1.41	2.81	3.82	4.80	6.59	8.41	9.69	17.54	44.34	100
	1990	0.87	1.67	3.01	4.10	4.73	6.43	9.60	13.24	19.29	37.06	100
	1991	0.82	1.87	2.47	3.75	4.24	7.07	9.30	13.62	20.95	35.93	100
	1992	0.94	1.71	3.00	3.76	6.66	7.88	10.57	11.17	16.35	37.96	100
	1993	0.88	2.10	3.35	3.79	5.62	7.40	9.02	11.56	18.17	38.10	100
	1994	0.70	2.35	3.36	4.48	5.87	7.08	10.74	12.43	18.70	34.27	100
	1995	0.96	2.45	3.21	5.27	5.68	7.90	8.20	13.84	18.71	33.77	100
	1996	0.76	2.73	4.21	5.46	7.44	8.44	10.73	11.83	15.95	32.44	100
	1997	0.19	1.58	3.83	4.62	6.38	8.03	9.80	11.61	17.03	36.93	100
	1998	0.04	0.55	2.16	4.60	5.80	8.00	10.52	12.39	17.71	38.22	100
	1999	0.30	2.19	3.68	5.58	7.18	7.59	9.77	10.90	16.18	36.64	100
	2000	0.39	1.73	3.52	4.04	5.35	7.17	8.77	13.74	16.97	38.32	100

구보다 다소 더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구유형별로 소비패턴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교통세 부담이 월등히 높다. 이는 자영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자동차를 더 많이 보유·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개인사업소득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점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더욱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간의 교통세 부담 차이에 의한 실효교통세 부담률의 차이 역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유와 관련하여 두 가구유형 간의 부담 차이가 부가가치세 부담률 차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효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자영업자가구의 최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교통세 부담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근로자가구 및 다른 소득분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¹⁹⁾.

다. 교통세

아래의 <표 III-19>에서는 교통세(또는 휘발유와 경유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를 나타내었다. 교통세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교통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19)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향후 보완연구에서 원인을 찾기를 바란다.

<표 III-16>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 체 가 구	1982	32	45	54	62	65	73	86	105	126	205	85
	1983	40	48	57	70	74	83	92	109	143	220	94
	1984	41	57	63	77	77	86	110	119	148	225	100
	1985	43	60	73	74	86	94	103	127	151	246	106
	1986	51	74	79	83	94	108	122	141	180	268	120
	1987	64	87	94	111	123	130	152	182	212	317	147
	1988	77	95	109	123	144	165	173	198	266	402	175
	1989	96	134	151	170	200	228	260	298	375	637	255
	1990	112	163	185	200	238	264	325	370	429	726	301
	1991	143	207	232	273	299	338	388	447	556	810	369
	1992	166	238	266	317	351	396	441	493	609	901	418
	1993	187	269	318	376	402	461	523	577	685	1001	480
	1994	202	310	374	386	469	499	583	636	784	1128	537
	1995	224	352	424	484	525	586	648	742	858	1160	600
	1996	280	393	481	571	624	689	765	842	957	1401	700
	1997	334	432	518	562	622	665	760	878	1015	1468	726
	1998	285	400	410	470	553	608	643	764	839	1276	625
	1999	272	397	489	563	663	716	786	914	1022	1451	727
	2000	316	472	555	661	739	779	933	1005	1183	1672	831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 로 자 가 구	1982	34	51	62	63	64	68	89	107	122	173	83
	1983	47	53	60	71	82	78	91	105	125	192	90
	1984	47	69	69	78	74	86	103	110	141	194	97
	1985	48	67	78	75	90	92	92	110	158	221	103
	1986	57	82	73	85	98	111	116	130	171	243	117
	1987	69	89	101	116	120	140	140	181	182	265	140
	1988	88	105	109	130	146	173	156	195	246	346	169
	1989	114	155	155	164	194	216	246	296	351	527	242
	1990	134	179	196	211	251	246	310	334	377	631	287
	1991	171	229	250	254	315	310	393	398	467	727	351
	1992	193	264	276	340	339	387	403	495	566	785	405
	1993	219	289	326	392	401	444	495	544	615	847	457
	1994	247	318	395	392	452	484	561	632	756	983	522
	1995	257	387	458	447	531	570	681	676	775	1013	580
	1996	329	426	486	557	597	659	695	825	953	1281	681
	1997	468	492	530	585	600	609	686	864	962	1138	694
	1998	413	489	411	450	547	562	556	672	754	1031	588
	1999	352	408	484	518	587	725	750	919	1035	1205	698
	2000	390	504	545	697	764	743	909	929	1133	1308	792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28	33	37	58	68	84	81	101	133	271	89
	1983	24	40	53	69	59	94	95	119	181	282	101
	1984	26	31	47	73	84	86	127	140	163	299	108
	1985	31	43	60	72	78	100	130	171	136	309	113
	1986	37	56	93	76	84	102	138	168	202	326	128
	1987	50	83	74	97	132	101	186	187	294	461	166
	1988	48	70	110	105	139	144	217	208	320	549	191
	1989	54	87	142	184	215	257	291	303	429	887	285
	1990	64	127	159	176	208	302	359	451	548	937	333
	1991	81	160	192	314	264	399	379	555	751	993	409
	1992	111	183	247	267	375	415	522	490	697	1145	445
	1993	114	222	300	339	405	500	588	653	846	1357	532
	1994	105	292	329	373	505	533	629	643	847	1443	570
	1995	152	279	352	563	512	620	577	879	1034	1470	644
	1996	181	326	472	598	677	748	905	875	964	1642	739
	1997	62	311	494	514	667	779	909	907	1122	2135	790
	1998	50	236	409	508	563	693	804	932	996	1727	692
	1999	117	374	497	650	812	699	855	905	995	1932	784
	2000	174	411	572	592	692	847	977	1149	1279	2361	906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75

<표 III-17>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가구	1982	2.12	2.17	2.19	2.18	2.06	2.05	2.10	2.17	2.13	2.25	2.16
	1983	2.42	2.15	2.13	2.25	2.09	2.08	2.03	2.05	2.21	2.26	2.16
	1984	2.27	2.27	2.05	2.20	1.95	1.92	2.19	2.03	2.05	2.09	2.08
	1985	2.18	2.18	2.23	2.02	2.11	2.06	1.98	2.11	2.05	2.17	2.11
	1986	2.35	2.38	2.13	1.97	1.98	2.03	2.04	2.02	2.11	2.12	2.09
	1987	2.45	2.42	2.23	2.28	2.25	2.11	2.16	2.22	2.12	2.10	2.19
	1988	2.46	2.17	2.09	2.08	2.16	2.21	2.03	2.04	2.26	2.27	2.18
	1989	2.47	2.48	2.37	2.34	2.47	2.52	2.54	2.53	2.63	2.93	2.60
	1990	2.30	2.43	2.37	2.26	2.42	2.40	2.64	2.64	2.56	2.97	2.58
	1991	2.39	2.51	2.41	2.51	2.46	2.48	2.56	2.59	2.76	2.88	2.61
	1992	2.41	2.46	2.36	2.48	2.47	2.50	2.51	2.50	2.59	2.73	2.54
	1993	2.52	2.59	2.61	2.72	2.61	2.70	2.75	2.69	2.76	2.78	2.70
	1994	2.42	2.63	2.71	2.47	2.69	2.56	2.67	2.57	2.70	2.81	2.66
	1995	2.39	2.63	2.70	2.73	2.63	2.64	2.60	2.61	2.59	2.56	2.61
	1996	2.72	2.67	2.79	2.89	2.79	2.75	2.72	2.65	2.60	2.73	2.72
	1997	4.79	3.23	3.03	2.79	2.71	2.59	2.62	2.65	2.60	2.64	2.76
	1998	5.63	3.98	2.98	2.79	2.80	2.70	2.49	2.57	2.37	2.48	2.71
	1999	2.86	2.87	2.93	2.95	3.05	2.92	2.83	2.85	2.70	2.69	2.83
	2000	3.06	3.12	3.04	3.12	3.05	2.84	2.99	2.79	2.77	2.63	2.87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로자가구	1982	2.26	2.44	2.53	2.23	2.01	1.90	2.16	2.21	2.07	1.90	2.11
	1983	2.85	2.33	2.21	2.26	2.30	1.96	2.01	1.97	1.94	1.97	2.08
	1984	2.63	2.71	2.27	2.24	1.87	1.93	2.05	1.88	1.96	1.79	2.02
	1985	2.44	2.43	2.40	2.05	2.20	2.01	1.77	1.81	2.14	1.94	2.05
	1986	2.62	2.61	1.96	2.04	2.07	2.08	1.93	1.86	2.01	1.93	2.03
	1987	2.65	2.47	2.41	2.39	2.19	2.28	1.99	2.20	1.82	1.75	2.08
	1988	2.81	2.39	2.09	2.19	2.19	2.31	1.83	2.01	2.08	1.95	2.10
	1989	2.94	2.87	2.43	2.25	2.39	2.38	2.40	2.51	2.46	2.43	2.46
	1990	2.74	2.66	2.51	2.39	2.56	2.24	2.52	2.38	2.25	2.58	2.46
	1991	2.85	2.78	2.60	2.33	2.59	2.28	2.58	2.31	2.32	2.58	2.49
	1992	2.79	2.73	2.44	2.67	2.39	2.44	2.29	2.51	2.41	2.38	2.46
	1993	2.94	2.78	2.67	2.84	2.60	2.60	2.60	2.54	2.47	2.35	2.57
	1994	2.96	2.70	2.87	2.51	2.60	2.48	2.57	2.55	2.60	2.45	2.58
	1995	2.76	2.89	2.92	2.52	2.66	2.56	2.74	2.38	2.34	2.24	2.52
	1996	3.21	2.90	2.82	2.82	2.67	2.63	2.47	2.60	2.59	2.49	2.64
	1997	6.72	3.68	3.10	2.90	2.62	2.37	2.36	2.61	2.46	2.05	2.64
	1998	8.15	4.86	2.98	2.67	2.77	2.50	2.16	2.26	2.13	2.00	2.55
	1999	3.70	2.95	2.91	2.71	2.70	2.96	2.70	2.87	2.73	2.23	2.72
	2000	3.78	3.33	2.99	3.30	3.15	2.71	2.92	2.58	2.65	2.05	2.73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영업자가구	1982	1.84	1.60	1.49	2.07	2.16	2.36	1.97	2.08	2.25	2.98	2.26
	1983	1.48	1.75	1.96	2.22	1.65	2.35	2.09	2.22	2.81	2.89	2.34
	1984	1.43	1.24	1.55	2.09	2.12	1.92	2.52	2.38	2.26	2.77	2.23
	1985	1.55	1.56	1.83	1.95	1.91	2.18	2.49	2.82	1.84	2.73	2.24
	1986	1.71	1.81	2.53	1.81	1.78	1.92	2.30	2.42	2.37	2.59	2.24
	1987	1.90	2.29	1.76	1.99	2.41	1.65	2.64	2.27	2.94	3.04	2.47
	1988	1.54	1.59	2.10	1.77	2.09	1.92	2.56	2.14	2.72	3.10	2.37
	1989	1.40	1.62	2.22	2.53	2.65	2.83	2.84	2.57	3.00	4.08	2.90
	1990	1.30	1.90	2.04	1.99	2.12	2.75	2.92	3.21	3.27	3.84	2.86
	1991	1.36	1.94	2.00	2.88	2.17	2.92	2.50	3.22	3.73	3.52	2.89
	1992	1.62	1.90	2.19	2.09	2.64	2.62	2.97	2.48	2.97	3.48	2.71
	1993	1.54	2.14	2.46	2.45	2.62	2.93	3.10	3.05	3.40	3.76	3.00
	1994	1.26	2.48	2.39	2.39	2.91	2.73	2.88	2.60	2.91	3.60	2.82
	1995	1.63	2.09	2.24	3.17	2.57	2.79	2.32	3.10	3.12	3.24	2.80
	1996	1.76	2.22	2.73	3.02	3.03	2.99	3.22	2.76	2.62	3.20	2.87
	1997	0.89	2.33	2.89	2.55	2.91	3.03	3.13	2.74	2.87	3.85	3.00
	1998	0.99	2.35	2.97	3.02	2.85	3.08	3.12	3.14	2.81	3.36	3.00
	1999	1.23	2.70	2.98	3.40	3.73	2.85	3.08	2.82	2.63	3.58	3.05
	2000	1.68	2.72	3.14	2.80	2.85	3.09	3.14	3.19	2.99	3.71	3.12

<표 III-18>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가구	1982	3.74	5.29	6.31	7.20	7.66	8.58	10.11	12.37	14.78	23.95	100
	1983	4.22	5.16	6.14	7.48	7.93	8.86	9.81	11.70	15.22	23.49	100
	1984	4.06	5.71	6.28	7.62	7.61	8.64	11.03	11.85	14.73	22.46	100
	1985	4.06	5.63	6.90	7.02	8.14	8.89	9.76	12.03	14.30	23.27	100
	1986	4.28	6.18	6.55	6.86	7.82	9.06	10.22	11.72	14.96	22.36	100
	1987	4.34	5.93	6.36	7.57	8.33	8.83	10.29	12.40	14.41	21.53	100
	1988	4.39	5.44	6.23	7.05	8.22	9.39	9.87	11.29	15.24	22.87	100
	1989	3.77	5.26	5.91	6.65	7.87	8.95	10.19	11.69	14.72	24.98	100
	1990	3.73	5.42	6.16	6.62	7.90	8.74	10.80	12.30	14.31	24.04	100
	1991	3.87	5.60	6.28	7.38	8.11	9.18	10.48	12.13	15.05	21.93	100
	1992	3.99	5.69	6.38	7.57	8.38	9.49	10.52	11.86	14.56	21.56	100
	1993	3.90	5.61	6.62	7.81	8.43	9.58	10.88	12.03	14.26	20.88	100
	1994	3.76	5.77	6.96	7.18	8.74	9.26	10.87	11.83	14.58	21.04	100
	1995	3.72	5.87	7.06	8.06	8.77	9.75	10.81	12.34	14.32	19.32	100
	1996	3.99	5.61	6.88	8.13	8.91	9.84	10.91	12.02	13.69	20.00	100
	1997	4.60	5.95	7.13	7.75	8.59	9.15	10.49	12.11	13.96	20.25	100
	1998	4.57	6.39	6.58	7.51	8.83	9.75	10.29	12.23	13.42	20.42	100
	1999	3.75	5.45	6.74	7.73	9.12	9.86	10.79	12.57	14.05	19.96	100
	2000	3.80	5.66	6.67	7.96	8.88	9.36	11.22	12.08	14.24	20.13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근로자 가구	1982	4.07	6.10	7.45	7.56	7.66	8.15	10.66	12.91	14.71	20.73	100
	1983	5.16	5.81	6.62	7.82	9.05	8.65	10.06	11.68	13.87	21.28	100
	1984	4.85	7.04	7.17	8.02	7.55	8.93	10.66	11.31	14.55	19.91	100
	1985	4.66	6.46	7.62	7.31	8.69	8.92	8.98	10.64	15.32	21.40	100
	1986	4.91	7.01	6.22	7.31	8.40	9.55	9.97	11.10	14.62	20.93	100
	1987	4.92	6.35	7.20	8.32	8.52	10.01	9.92	12.90	12.98	18.87	100
	1988	5.19	6.21	6.45	7.72	8.63	10.20	9.21	11.48	14.55	20.36	100
	1989	4.74	6.40	6.40	6.76	8.04	8.92	10.18	12.24	14.54	21.78	100
	1990	4.67	6.24	6.86	7.33	8.75	8.57	10.81	11.66	13.17	21.94	100
	1991	4.86	6.50	7.11	7.23	8.99	8.86	11.13	11.34	13.29	20.69	100
	1992	4.77	6.51	6.81	8.40	8.37	9.57	9.91	12.28	13.99	19.39	100
	1993	4.79	6.34	7.12	8.55	8.83	9.69	10.81	11.91	13.45	18.53	100
	1994	4.73	6.08	7.56	7.51	8.67	9.23	10.78	12.11	14.46	18.87	100
	1995	4.44	6.68	7.91	7.70	9.18	9.81	11.77	11.65	13.38	17.46	100
	1996	4.83	6.27	7.15	8.17	8.77	9.68	10.19	12.12	14.03	18.80	100
	1997	6.76	7.09	7.63	8.45	8.67	8.76	9.91	12.47	13.84	16.42	100
	1998	7.02	8.30	7.00	7.63	9.28	9.56	9.44	11.43	12.81	17.52	100
	1999	5.04	5.84	6.95	7.41	8.40	10.39	10.73	13.16	14.83	17.25	100
	2000	4.94	6.34	6.88	8.81	9.64	9.37	11.47	11.72	14.30	16.53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자영업자 가구	1982	3.10	3.72	4.09	6.51	7.67	9.41	9.05	11.33	14.89	30.22	100
	1983	2.38	3.89	5.21	6.84	5.77	9.25	9.31	11.75	17.84	27.76	100
	1984	2.39	2.91	4.43	6.76	7.75	8.02	11.83	12.98	15.13	27.81	100
	1985	2.71	3.80	5.31	6.36	6.92	8.83	11.50	15.12	12.04	27.42	100
	1986	2.91	4.40	7.27	5.87	6.55	7.99	10.77	13.08	15.69	25.48	100
	1987	2.98	4.97	4.44	5.85	7.90	6.11	11.15	11.25	17.70	27.66	100
	1988	2.53	3.65	5.73	5.51	7.28	7.52	11.39	10.87	16.83	28.68	100
	1989	1.91	3.06	4.97	6.44	7.56	9.01	10.22	10.64	15.07	31.11	100
	1990	1.91	3.83	4.80	5.26	6.26	9.07	10.77	13.54	16.50	28.08	100
	1991	1.98	3.90	4.71	7.67	6.47	9.79	9.24	13.61	18.36	24.27	100
	1992	2.51	4.10	5.55	5.98	8.40	9.34	11.68	11.06	15.66	25.72	100
	1993	2.15	4.18	5.62	6.34	7.65	9.38	11.03	12.28	15.87	25.50	100
	1994	1.84	5.13	5.77	6.54	8.89	9.30	11.06	11.28	14.83	25.36	100
	1995	2.37	4.34	5.47	8.73	7.98	9.62	8.98	13.63	16.08	22.82	100
	1996	2.44	4.41	6.39	8.08	9.17	10.12	12.24	11.84	13.08	22.22	100
	1997	0.79	3.93	6.25	6.51	8.46	9.84	11.52	11.48	14.17	27.05	100
	1998	0.72	3.41	5.92	7.32	8.14	10.04	11.62	13.48	14.38	24.96	100
	1999	1.49	4.76	6.36	8.28	10.36	8.93	10.90	11.54	12.70	24.66	100
	2000	1.92	4.52	6.32	6.55	7.64	9.34	10.79	12.68	14.13	26.10	100

는 교통세와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교통세 부담이라 함은 교통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포괄한다.

특징적인 점은 1980년대의 경우 교통세 부담의 절대수준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극소수의 가구에서만 휘발유와 경유, 즉 자동차의 연료유를 소비하였다. 이는 1980년대에 걸쳐 교통세 부담이 최고소득층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다. 교통세 부담은 1989년부터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통세 부담의 절대수준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통세 부담은 저소득층으로까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는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1~2분위 등의 최저소득층에서도 교통세를 상당히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구의 교통세 부담액이 자영업자가구의 부담액보다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 가운데에는 고령에 따른 은퇴 등으로 인해 무직가구에 포함된 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직가구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으며 은퇴가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무직가구라 하면 유량(flow)으로 평가한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다. 그렇지만 그 중 일부, 즉 은퇴한 노령가구 중 일부에서는 비록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저량(stock)으로 평가한 자산(wealth)을 많이 축적한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구 중 일부에서는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도 있다. 성명재(1999)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중 극히 일부 가구에서는 대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9> 소득계층별 교통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 체 가 구	1982	0	0	0	0	0	0	0	1	1	0	
	1983	0	0	0	0	0	0	0	0	1	0	
	1984	0	0	0	0	0	0	0	0	1	0	
	1985	0	0	0	0	0	0	0	0	1	0	
	1986	0	0	0	0	0	0	0	1	1	0	
	1987	0	0	0	0	0	0	0	0	1	2	
	1988	0	0	0	0	0	0	0	1	2	0	
	1989	0	0	0	0	0	0	1	2	3	1	
	1990	1	1	4	4	4	8	16	18	37	74	17
	1991	2	8	8	18	16	24	35	51	77	127	37
	1992	5	9	16	20	36	44	51	73	115	172	54
	1993	7	22	37	46	56	63	91	111	133	202	77
	1994	15	58	59	76	119	116	155	177	232	311	132
	1995	22	58	94	106	128	143	186	241	241	359	158
	1996	34	68	104	135	153	192	218	235	318	406	186
	1997	75	110	133	174	213	240	268	346	358	503	242
	1998	78	133	190	243	287	338	405	449	503	725	335
	1999	76	168	212	310	343	391	431	565	590	904	399
	2000	82	176	232	322	373	414	459	521	596	803	398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 로 자 가 구	1982	0	0	0	0	0	0	0	1	1	0	
	1983	0	0	0	0	0	0	0	0	1	0	
	1984	0	0	0	0	0	0	0	0	1	0	
	1985	0	0	0	0	0	0	0	0	1	0	
	1986	0	0	0	0	0	0	0	1	1	0	
	1987	0	0	0	0	0	0	0	1	0	1	
	1988	0	0	0	0	0	0	0	0	1	0	
	1989	0	0	0	0	0	0	1	1	2	1	
	1990	0	1	3	2	3	6	13	15	26	65	13
	1991	3	5	5	11	14	16	35	37	48	114	29
	1992	2	6	13	22	36	35	49	77	108	151	50
	1993	6	18	34	48	52	62	81	105	118	181	71
	1994	13	51	59	74	90	102	139	180	219	282	121
	1995	20	54	86	90	126	139	194	222	223	341	149
	1996	38	65	99	123	140	182	215	229	331	376	180
	1997	105	113	126	184	209	216	261	321	344	442	232
	1998	114	159	176	225	256	312	362	412	458	621	310
	1999	91	163	198	287	274	409	434	548	615	748	377
	2000	89	164	226	337	384	383	442	479	562	649	371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0	0	0	0	0	0	0	1	3	0	
	1983	0	0	0	0	0	0	0	1	2	0	
	1984	0	0	0	0	0	0	1	0	1	0	
	1985	0	0	0	0	0	0	0	0	1	0	
	1986	0	0	0	0	0	0	0	1	1	0	
	1987	0	0	0	0	0	0	0	2	3	1	
	1988	0	0	0	0	0	0	0	1	4	1	
	1989	0	0	0	0	0	1	1	3	4	1	
	1990	2	2	7	8	6	12	22	23	64	94	24
	1991	2	15	15	32	21	41	34	82	142	154	54
	1992	12	16	21	18	36	63	56	65	131	218	63
	1993	8	29	43	40	65	65	113	126	166	250	91
	1994	20	72	59	81	181	145	190	169	260	373	155
	1995	26	65	110	140	132	152	169	283	281	396	175
	1996	26	75	112	161	178	210	224	247	292	465	199
	1997	13	104	147	154	220	290	280	395	385	626	262
	1998	10	86	216	274	344	385	484	518	586	915	382
	1999	45	178	239	355	477	355	426	596	542	1208	442
	2000	69	198	243	294	354	471	492	600	661	1094	448

Ⅲ. 소득 및 세부담 분포 79

<표 III-20> 소득계층별 교통세 실효세부담률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가구	198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2	0.01
	19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198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98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98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198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19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98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1
	1990	0.02	0.02	0.05	0.05	0.04	0.07	0.13	0.13	0.22	0.30
	1991	0.04	0.09	0.09	0.16	0.13	0.17	0.23	0.30	0.38	0.45
	1992	0.08	0.09	0.14	0.16	0.25	0.28	0.29	0.37	0.49	0.52
	1993	0.09	0.21	0.30	0.33	0.36	0.37	0.48	0.52	0.53	0.56
	1994	0.18	0.49	0.43	0.49	0.68	0.59	0.71	0.71	0.80	0.78
	1995	0.24	0.43	0.60	0.60	0.64	0.64	0.75	0.85	0.73	0.79
	1996	0.33	0.46	0.60	0.68	0.68	0.77	0.77	0.74	0.86	0.79
	1997	1.07	0.82	0.78	0.86	0.93	0.94	0.92	1.04	0.92	0.91
	1998	1.53	1.33	1.38	1.44	1.45	1.50	1.57	1.51	1.42	1.41
1999	0.79	1.22	1.27	1.62	1.58	1.59	1.55	1.76	1.56	1.67	
2000	0.79	1.16	1.27	1.52	1.54	1.51	1.47	1.45	1.39	1.26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로자가구	198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0
	19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198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8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98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198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19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89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1
	1990	0.01	0.02	0.03	0.03	0.03	0.06	0.10	0.11	0.15	0.27
	1991	0.04	0.06	0.06	0.10	0.12	0.12	0.23	0.21	0.24	0.40
	1992	0.03	0.06	0.12	0.17	0.26	0.22	0.28	0.39	0.46	0.46
	1993	0.08	0.17	0.28	0.35	0.34	0.37	0.43	0.49	0.47	0.50
	1994	0.16	0.43	0.43	0.47	0.52	0.52	0.64	0.73	0.75	0.70
	1995	0.22	0.41	0.55	0.51	0.63	0.62	0.78	0.78	0.67	0.75
	1996	0.37	0.44	0.58	0.62	0.63	0.73	0.76	0.72	0.90	0.73
	1997	1.51	0.84	0.73	0.91	0.91	0.84	0.90	0.97	0.88	0.80
	1998	2.26	1.59	1.28	1.34	1.29	1.39	1.40	1.39	1.29	1.21
1999	0.96	1.18	1.19	1.50	1.26	1.67	1.56	1.71	1.62	1.38	
2000	0.86	1.08	1.24	1.59	1.58	1.40	1.42	1.33	1.31	1.02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영업자가구	1982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3
	19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2
	1984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1
	198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1986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1987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2	0.02
	1988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1	0.02
	1989	0.00	0.00	0.00	0.01	0.00	0.00	0.01	0.01	0.02	0.02
	1990	0.04	0.03	0.09	0.08	0.06	0.11	0.18	0.16	0.38	0.39
	1991	0.03	0.18	0.15	0.29	0.17	0.30	0.22	0.48	0.70	0.55
	1992	0.17	0.16	0.18	0.14	0.25	0.40	0.32	0.33	0.56	0.66
	1993	0.11	0.28	0.36	0.29	0.42	0.38	0.59	0.59	0.67	0.69
	1994	0.24	0.61	0.43	0.52	1.04	0.74	0.87	0.68	0.89	0.93
	1995	0.27	0.49	0.70	0.79	0.66	0.69	0.68	1.00	0.85	0.88
	1996	0.25	0.51	0.65	0.81	0.79	0.84	0.80	0.78	0.79	0.90
	1997	0.19	0.78	0.86	0.77	0.96	1.13	0.97	1.19	0.99	1.13
	1998	0.19	0.85	1.57	1.63	1.74	1.71	1.88	1.74	1.66	1.78
1999	0.48	1.29	1.44	1.86	2.19	1.45	1.53	1.86	1.43	2.24	
2000	0.67	1.31	1.33	1.39	1.46	1.72	1.58	1.67	1.54	1.72	

<표 III-21> 소득계층별 교통세 부담 비중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계	
전 체 가 구	1982	0.05	0.02	0.22	0.23	0.04	0.08	3.36	6.34	29.52	60.13	100
	1983	0.00	0.00	0.00	0.00	0.15	0.00	2.94	11.19	15.42	70.30	100
	1984	0.00	0.00	0.00	0.00	0.00	0.40	20.99	7.28	0.75	70.58	100
	1985	0.00	0.00	0.00	0.00	0.01	0.00	0.00	12.24	13.77	73.98	100
	1986	0.00	3.43	1.60	0.05	0.15	2.01	1.24	0.01	50.77	40.74	100
	1987	0.00	0.23	0.00	0.00	0.00	0.19	7.94	14.71	21.72	55.20	100
	1988	0.08	3.02	4.60	1.41	3.47	6.71	5.81	7.34	16.03	51.52	100
	1989	0.06	2.91	2.15	3.44	2.57	6.36	6.50	13.87	24.06	38.08	100
	1990	0.57	0.77	2.37	2.40	2.47	4.73	9.37	10.53	22.50	44.29	100
	1991	0.65	2.12	2.27	4.86	4.49	6.51	9.44	13.96	21.09	34.60	100
	1992	0.98	1.63	2.86	3.77	6.64	8.08	9.37	13.59	21.27	31.80	100
	1993	0.88	2.81	4.82	5.95	7.35	8.23	11.80	14.54	17.27	26.34	100
	1994	1.16	4.38	4.47	5.77	9.04	8.74	11.79	13.42	17.58	23.65	100
	1995	1.39	3.66	5.95	6.72	8.11	9.05	11.78	15.27	15.32	22.74	100
	1996	1.83	3.66	5.57	7.25	8.20	10.29	11.67	12.63	17.11	21.78	100
	1997	3.09	4.54	5.48	7.22	8.82	9.91	11.08	14.30	14.76	20.81	100
	1998	2.31	3.98	5.69	7.23	8.55	10.10	12.07	13.41	15.02	21.63	100
	1999	1.90	4.21	5.32	7.76	8.59	9.81	10.79	14.16	14.80	22.66	100
	2000	2.06	4.40	5.82	8.11	9.38	10.39	11.54	13.10	14.99	20.21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근 로 자 가 구	1982	0.11	0.05	0.44	0.34	0.02	0.09	0.20	7.57	46.84	44.36	100
	19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34	88.66	100
	1984	0.00	0.00	0.00	0.00	0.00	0.08	0.00	17.36	1.56	81.00	100
	1985	0.00	0.00	0.00	0.00	0.01	0.00	0.00	14.65	15.41	69.93	100
	1986	0.00	0.82	0.00	0.08	0.00	3.29	1.82	0.01	55.51	38.48	100
	1987	0.01	0.24	0.00	0.00	0.00	0.38	8.03	28.84	10.78	51.72	100
	1988	0.17	3.62	2.80	2.73	4.49	13.76	5.28	10.08	21.45	35.63	100
	1989	0.11	4.40	2.33	2.68	2.99	7.75	4.92	17.63	20.10	37.09	100
	1990	0.31	0.82	1.96	1.82	2.40	4.58	9.40	11.37	19.14	48.21	100
	1991	0.91	1.60	1.89	3.95	4.99	5.48	12.10	12.84	16.58	39.66	100
	1992	0.44	1.13	2.62	4.37	7.27	6.97	9.72	15.61	21.63	30.25	100
	1993	0.88	2.58	4.85	6.82	7.41	8.81	11.46	14.91	16.67	25.61	100
	1994	1.09	4.23	4.87	6.11	7.49	8.40	11.49	14.91	18.07	23.34	100
	1995	1.36	3.63	5.77	6.03	8.42	9.26	12.98	14.81	14.92	22.82	100
	1996	2.13	3.60	5.53	6.80	7.80	10.13	11.91	12.74	18.44	20.92	100
	1997	4.53	4.84	5.41	7.95	9.03	9.28	11.28	13.84	14.80	19.05	100
	1998	3.70	5.15	5.70	7.27	8.25	10.10	11.68	13.31	14.80	20.06	100
	1999	2.42	4.33	5.26	7.61	7.28	10.87	11.49	14.56	16.32	19.85	100
	2000	2.40	4.40	6.07	9.08	10.32	10.31	11.90	12.90	15.13	17.50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0.00	0.00	0.02	0.13	0.06	0.08	6.21	5.24	13.94	74.32	100
	1983	0.00	0.00	0.00	0.00	0.26	0.00	5.06	19.23	18.36	57.09	100
	1984	0.00	0.00	0.00	0.00	0.00	0.63	36.15	0.00	0.17	63.05	100
	198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7	8.43	87.20	100
	1986	0.00	7.57	4.14	0.00	0.39	0.00	0.32	0.00	43.26	44.33	100
	1987	0.00	0.21	0.00	0.00	0.00	0.00	7.86	0.94	32.39	58.60	100
	1988	0.00	2.44	6.32	0.16	2.50	0.00	6.32	4.73	10.87	66.65	100
	1989	0.00	0.77	1.91	4.52	1.96	4.38	8.76	8.47	29.73	39.49	100
	1990	0.89	0.71	2.89	3.13	2.57	4.92	9.33	9.47	26.74	39.35	100
	1991	0.34	2.73	2.72	5.93	3.92	7.72	6.32	15.29	26.38	28.66	100
	1992	1.87	2.46	3.26	2.77	5.60	9.91	8.79	10.26	20.69	34.37	100
	1993	0.87	3.23	4.78	4.39	7.24	7.19	12.40	13.88	18.35	27.64	100
	1994	1.27	4.63	3.80	5.20	11.68	9.33	12.30	10.88	16.74	24.16	100
	1995	1.46	3.71	6.27	7.97	7.55	8.66	9.65	16.10	16.04	22.59	100
	1996	1.29	3.77	5.63	8.08	8.94	10.57	11.23	12.44	14.71	23.35	100
	1997	0.51	3.98	5.60	5.90	8.44	11.05	10.74	15.12	14.68	23.97	100
	1998	0.25	2.24	5.67	7.17	9.01	10.11	12.66	13.58	15.35	23.97	100
	1999	1.03	4.02	5.43	8.03	10.78	8.03	9.61	13.49	12.26	27.33	100
	2000	1.54	4.41	5.42	6.59	7.91	10.51	10.99	13.39	14.77	24.46	100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대형승용자동차 등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동차를 보유·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0분위의 교통세 부담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유형별 교통세 부담에 있어 최고소득층인 10분위를 보면 자영업자가구의 교통세 부담이 근로자가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가구의 1~9분위와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최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구의 10분위에서는 자동차의 유지·관리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의 상층 근로자가구에서는 기업체 등의 임원으로서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기업체 등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영업자가구의 10분위에 비해 근로자가구의 10분위의 교통세 부담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가구유형별로 10분위에서 교통세 부담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2000~2002년 세법을 중심으로

본장에서는 제Ⅱ장 2절 나항에서 논의한 표본조정을 거친 2002년 조정표본(adjusted sample)을 토대로 2000~2002년 사이의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를 분석·평가해본다.

1. 2002년도 소득 분포의 추정

소득세제 개편 등 최근의 세제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화무쌍한 소득 분포를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것이 편리하다. 본장에서는 소득 분포의 고찰시점을 2002년으로 하고 현재까지 이용가능한 자료 가운데 가장 최신인 2000년 자료를 토대로 2002년도 소득 분포로 조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1>과 같다.

2002년 소득 분포는 2000년 자료로부터 추정하였는데 소득증가율은 미국의 CBO, OTA, JCT 등에서 하는 바와 같이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을 비례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²⁰). 물론 실제로 실현되는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은 상이할 것이지만 최근과 같이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가 심하게 변화하고 소득분배 상태도 급격히 변화하는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각 표본자료의 소득증가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0년도의 상대소득 분포가 2002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상적으로 가정하였다. 서로 다른 세법연도 간의 세법을 상호 비교함에 있어서는 어떤 자

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CBO(2001), OTA(2001A)를 참조하기 바란다.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83

료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 변화를 평가함에 있어 편의상 2002년으로 자료연도를 고정시켰다.

소득증가율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인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각종 거시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로부터 예측치를 구할 수 없어 직접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다행히 이들 변수는 대체로 경상GDP증가율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리변수로서 경상GDP성장률을 소득증가율로 사용하였다. 2001년과 2002년의 경상성장률은 각각 4.42%와 6.46%로, 복리로 계산할 경우 2년 동안의 성장률은 11.1655%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한 2002년의 가상적인 소득 분포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2002년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추정치

(단위: 천원, %)

총소득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가구	11474	16818	20287	23504	26958	30487	34640	39995	47575	70796	32257
근로자	11346	16860	20239	23529	26970	30545	34704	39886	47563	71699	31109
자영업자	12061	16719	20372	23454	26936	30393	34526	40151	47598	69588	34430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3.56	5.20	6.29	7.30	8.35	9.44	10.74	12.40	14.75	21.97	100
근로자	4.59	5.81	6.35	7.72	8.61	9.29	10.89	11.57	15.01	20.17	100
자영업자	1.82	4.16	6.19	6.58	7.90	9.71	10.47	13.81	14.31	25.05	100

2. 소득세

가. 세부담 분포의 변화 효과

2002년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각각 2000~2002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분포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총소득세 부담 분포 추정치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33	137	279	379	538	755	998	1580	2271	4200	1117
	2001	33	137	279	378	537	754	995	1571	2239	4083	1101
	2002	29	118	241	322	457	644	854	1364	1936	3525	949
근로자	2000	6	41	112	216	350	525	710	1261	1978	3501	806
	2001	6	40	112	214	349	523	706	1255	1946	3382	791
	2002	5	28	83	164	272	414	572	1056	1648	2883	660
자영업자	2000	154	366	575	706	886	1129	1507	2041	2797	5134	1706
	2001	154	366	575	706	886	1129	1505	2026	2765	5021	1687
	2002	139	331	519	637	800	1019	1355	1808	2453	4383	1497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28	0.81	1.38	1.61	1.99	2.48	2.88	3.95	4.77	5.93	3.46
	2001	0.28	0.81	1.38	1.61	1.99	2.47	2.87	3.93	4.71	5.77	3.41
	2002	0.26	0.70	1.19	1.37	1.69	2.11	2.47	3.41	4.07	4.98	2.94
근로자	2000	0.06	0.24	0.55	0.92	1.30	1.72	2.04	3.16	4.16	4.88	2.59
	2001	0.06	0.24	0.55	0.91	1.29	1.71	2.03	3.15	4.09	4.72	2.54
	2002	0.05	0.17	0.41	0.70	1.00	1.36	1.65	2.65	3.46	4.02	2.12
자영업자	2000	1.27	2.19	2.82	3.01	3.29	3.71	4.37	5.08	5.88	7.38	4.96
	2001	1.27	2.19	2.82	3.01	3.29	3.71	4.36	5.04	5.81	7.21	4.90
	2002	1.16	1.98	2.55	2.72	2.97	3.35	3.92	4.50	5.15	6.30	4.35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0.29	1.22	2.50	3.40	4.81	6.75	8.93	14.14	20.33	37.63	100
	2001	0.30	1.24	2.53	3.44	4.87	6.84	9.03	14.27	20.34	37.13	100
	2002	0.31	1.24	2.54	3.40	4.81	6.78	9.00	14.37	20.39	37.17	100
근로자	2000	0.10	0.54	1.35	2.74	4.32	6.15	8.59	14.12	24.09	38.00	100
	2001	0.10	0.55	1.37	2.77	4.38	6.26	8.71	14.31	24.15	37.40	100
	2002	0.10	0.46	1.23	2.54	4.10	5.94	8.46	14.44	24.51	38.23	100
자영업자	2000	0.47	1.83	3.52	4.00	5.25	7.28	9.23	14.17	16.97	37.29	100
	2001	0.47	1.86	3.56	4.04	5.31	7.36	9.32	14.23	16.96	36.89	100
	2002	0.48	1.89	3.63	4.11	5.40	7.49	9.45	14.31	16.96	36.28	100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85

<표 IV-3>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근로·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27	129	270	366	508	725	978	1542	2219	4079	1085
	2001	27	129	270	365	507	724	975	1532	2187	3963	1068
	2002	24	110	232	308	427	615	835	1325	1883	3404	917
근로자	2000	2	36	108	207	319	494	698	1222	1921	3339	774
	2001	2	36	108	206	318	493	694	1216	1890	3221	759
	2002	1	24	79	155	241	384	560	1017	1591	2721	627
자영업자	2000	142	350	556	683	861	1100	1475	2003	2752	5068	1674
	2001	142	350	556	683	861	1100	1472	1987	2720	4955	1654
	2002	128	315	500	615	775	990	1321	1770	2408	4317	1464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24	0.77	1.33	1.56	1.89	2.38	2.82	3.86	4.66	5.76	3.36
	2001	0.24	0.77	1.33	1.55	1.88	2.38	2.82	3.83	4.60	5.60	3.31
	2002	0.21	0.66	1.14	1.31	1.59	2.02	2.41	3.31	3.96	4.81	2.84
근로자	2000	0.02	0.21	0.53	0.88	1.18	1.62	2.01	3.06	4.04	4.66	2.49
	2001	0.02	0.21	0.53	0.87	1.18	1.62	2.00	3.05	3.97	4.49	2.44
	2002	0.01	0.14	0.39	0.66	0.89	1.26	1.61	2.55	3.35	3.80	2.02
자영업자	2000	1.18	2.09	2.73	2.91	3.20	3.62	4.27	4.99	5.78	7.28	4.86
	2001	1.18	2.09	2.73	2.91	3.20	3.62	4.26	4.95	5.71	7.12	4.80
	2002	1.06	1.88	2.45	2.62	2.88	3.26	3.83	4.41	5.06	6.20	4.25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0.25	1.19	2.49	3.38	4.68	6.68	9.02	14.21	20.46	37.64	100
	2001	0.25	1.21	2.52	3.42	4.75	6.78	9.13	14.34	20.47	37.13	100
	2002	0.26	1.20	2.53	3.37	4.66	6.70	9.11	14.46	20.55	37.17	100
근로자	2000	0.03	0.50	1.36	2.74	4.10	6.05	8.81	14.26	24.39	37.77	100
	2001	0.03	0.51	1.39	2.77	4.16	6.15	8.94	14.46	24.45	37.15	100
	2002	0.02	0.41	1.24	2.52	3.81	5.79	8.71	14.63	24.90	37.96	100
자영업자	2000	0.44	1.79	3.47	3.95	5.19	7.23	9.20	14.17	17.02	37.53	100
	2001	0.45	1.81	3.51	3.99	5.26	7.32	9.30	14.23	17.02	37.12	100
	2002	0.45	1.84	3.57	4.06	5.34	7.44	9.43	14.32	17.02	36.53	100

제Ⅲ장에서 보았듯이 2000년 이후의 소득세 개편은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종합소득세율의 인하, 일부의 근로소득세 특별공제의 한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소득공제 및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의 도입,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개편은 모두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에서 개편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분포가 변화하였다.

2000년 이후에 소득세법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에도 2000년의 세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도시가구당 소득세 부담은 평균 111만 7천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2001년 세법을 적용하면 1.43%(1만 6천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여기에 2002년 세법을 적용하면 추가적으로 13.87%(16만 2천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1년 세법과 2002년 세법 모두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에서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종합소득세율을 1/10씩 인하한 2002년 귀속분 소득세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소득세부담률도 2000년 세법을 적용하면 3.46%로 나타나지만 2002년 세법을 적용하면 2.94%로 대폭 하락한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효세부담률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효세부담률의 변화가 미미하다. 이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미 소득세 면세자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경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의 혜택은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득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편의 혜택은 곧 소득세 부담의 경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상층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하면 저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공제액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경감혜택이 상대적

으로 작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역설적으로 소득세 과표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 대부분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확대에 따라 축소되는 과표 1단위당 세경감 혜택의 절대수준도 크게 나타난다.

<표 IV-3>은 근로·종합소득세의 부담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0~2002년 사이의 세법상 주요한 세법개정은 세율조정,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의 한도조정,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축소 등에 있는 만큼 소득세 부담의 변화는 전체 소득세 분포의 변화와 대동소이하다.

나. 면세비율의 변화 효과

최근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은 약 40~5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는 개인납세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구단위로 세부담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납세자의 경우보다 면세가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2년 추정소득 분포자료를 대상으로 2000년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면세가구의 비율은 23.19%로 추정된다(<표 IV-7> 참조). 각종 특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한도 확대 등 각종 소득공제가 확대된 2001년 세법을 적용하면 면세가구의 비율은 23.26%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종 소득공제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장기주식저축세액공제 등이 도입된 2002년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면세가구비율은 24.36%로 추정된다. 2000년 세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면세가구의 비율이 약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세집중도의 변화 효과

2000~2002년 소득세법의 개편내용 중 세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편은 2002년 세법에서의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율이 모두 1/10씩 비례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절대세부담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즉, 이는 세율이 비례적으로 인하될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또한 비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산출세부담의 상대적인 불평등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세부담 측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최종적인 상대세부담은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세율인하 다음으로 세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개편은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이다.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과세자 비율이 줄어들고 면세자 비율이 상승한다. 이는 곧 과세자 범위의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조세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소득공제의 확대는 비단 면세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과세자의 소득세 부담도 함께 경감시켜 준다. 또한 세부담의 경감 혜택은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일수록 커진다. 이는 역설적으로 과세자 내부에서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소득공제의 확대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고 이는 과세자와 면세자간의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증가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공제의 확대로 인해 소득세 과표가 하락하면서 고소득 과세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혜택이 중소득 과세자의 경감 혜택보다 절대적·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는 고소득 과세자의 경우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자 내부에서의 소득세의 집중도(또는 누진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소득공제 확대

를 통한 면세점 상승에 따른 과세자 대 면세자 간의 상대적 누진도와 과세자 내부에서의 상대적 누진도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의 조정이 소득세의 집중도(누진도)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표 IV-7>에 의하면 2000~2002년 기간 동안의 소득세법 개정 에 따라 면세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상승할 만한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이 집중됨에 따른 상반된 효과가 면세비율 상승에 의한 세부담의 집중도 상승 효과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집중도와 마찬가지로 세부담의 역진성(또는 누진성)을 나타내는 KPS 지수의 값도 미약하나마 1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소비세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자체로는 2000~2002년 세법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세법과 2002년 세법을 적용하였을 때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치 부가가치세 부담비중이 과중해지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전화세 폐지에 따른 전화세 부담 감소분이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효과로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 전화세 부담 감소로 상쇄됨으로써 소비세 전체의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 IV-4>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351	524	617	734	822	866	1037	1117	1316	1859	924
	2001	365	546	641	762	853	897	1072	1154	1357	1907	955
	2002	393	589	691	816	914	958	1142	1227	1439	2003	1017
근로자	2000	346	521	621	760	854	873	1035	1144	1283	1664	881
	2001	359	542	645	787	884	902	1070	1179	1321	1708	910
	2002	385	583	692	840	944	960	1139	1248	1399	1796	967
자영업자	2000	373	532	608	682	761	855	1040	1078	1374	2120	1007
	2001	392	556	635	711	793	888	1076	1117	1420	2173	1042
	2002	429	603	689	769	857	955	1148	1196	1511	2279	1112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3.06	3.12	3.04	3.12	3.05	2.84	2.99	2.79	2.77	2.63	2.87
	2001	3.18	3.25	3.16	3.24	3.16	2.94	3.09	2.88	2.85	2.69	2.96
	2002	3.42	3.50	3.41	3.47	3.39	3.14	3.30	3.07	3.02	2.83	3.15
근로자	2000	3.05	3.09	3.07	3.23	3.17	2.86	2.98	2.87	2.70	2.32	2.83
	2001	3.16	3.21	3.19	3.34	3.28	2.95	3.08	2.96	2.78	2.38	2.92
	2002	3.39	3.46	3.42	3.57	3.50	3.14	3.28	3.13	2.94	2.50	3.11
자영업자	2000	3.10	3.18	2.98	2.91	2.83	2.81	3.01	2.68	2.89	3.05	2.92
	2001	3.25	3.32	3.12	3.03	2.94	2.92	3.12	2.78	2.98	3.12	3.03
	2002	3.56	3.61	3.38	3.28	3.18	3.14	3.32	2.98	3.17	3.28	3.23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3.80	5.66	6.67	7.96	8.88	9.36	11.22	12.08	14.24	20.13	100
	2001	3.83	5.70	6.71	7.99	8.92	9.38	11.22	12.07	14.20	19.98	100
	2002	3.87	5.77	6.79	8.04	8.98	9.41	11.23	12.06	14.15	19.71	100
근로자	2000	4.94	6.34	6.88	8.81	9.64	9.37	11.47	11.72	14.30	16.53	100
	2001	4.96	6.38	6.92	8.83	9.66	9.38	11.48	11.69	14.27	16.43	100
	2002	5.01	6.45	6.98	8.86	9.70	9.39	11.50	11.64	14.20	16.25	100
자영업자	2000	1.92	4.52	6.32	6.55	7.64	9.34	10.79	12.68	14.13	26.10	100
	2001	1.95	4.57	6.37	6.60	7.69	9.38	10.79	12.70	14.10	25.85	100
	2002	2.00	4.64	6.48	6.68	7.78	9.45	10.78	12.74	14.05	25.40	100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91

<표 IV-4>에 의하면 세법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점유비가 소폭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화사용이 이미 국민 대중속에 생활화되어 있는 만큼 이미 폐지된 전화세 부담이 역진성을 가졌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명재(2000, 2001), 성명재·전영준(1999) 등의 연구에 따르면 폐지된 전화세의 세부담 구조는 확연히 역진적이다. 따라서 전화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로의 통합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부담 구조는 다소의 정도 차이가 존재할 뿐 기본적인 세부담 분포에서는 세목간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통세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소비세이다. 교통 혼잡 완화 및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한 2000년의 에너지 세제 개편의 결과로서 2001~2006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통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시행중이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교통세율이 오히려 2001년 7월 1일부로 소폭 인하되었다. 경유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비통계가 직접 소비분만을 통계로 잡기 때문에 소비비중이 상당히 작다. 그러므로 경유분 교통세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의 세율인하 효과로 인해 경유세율의 인상효과가 희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유에 대한 소비비중도 낮아 2000~2002년 동안의 교통세 부담의 증가효과는 소폭으로 나타났다.

교통세의 경우에는 소비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가 매우 높았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통세의 세부담은 상당히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당시까지만해도 승용차의 보급이 충분히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

으며, 따라서 연료유 부담, 즉 교통세 부담 역시 자동차를 보유한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고소득층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승용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부담의 누진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교통세의 실효세부담률이 비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최근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다소 역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려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7~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교통세율이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는 승용자동차의 보급 대중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의 교통세 부담을 과중하게 증대시켜 세부담이 다소 역진적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연료유의 절대가격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한계소비자가 자동차 보유 또는 자동차 운행을 포기하게 함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연료유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에 대한 신규 수요 및 기존의 보유중인 자동차에 의해 파생되는 이차적인 형태의 수요 특성을 지니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가인상에 따라 소비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경과되기 이전의 단기에 있어서는 소비감소 및 그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유가의 변화는 연료유간의 소비대체를 초래하여 LPG 승용차가 급속히 인기를 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의 교통세율의 인상은 소득계층별로 대부분 절대세부담 수준의 비례적인 증가를 가져왔을 뿐 상대적인 세부담의 차이, 즉 소득계층별로 교통세 부담의 점유비 변화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휘발유 또는 경유의 세부담이 변하여 소비자가격이 변하더라도 한계소비자들의 소비대체 또는 수요량 감소 효과가 작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 수요 또는 연료유에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93

대한 수요가 상당히 비탄력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교통세 부담의 급격한 증대가 일반적으로 소비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세부담의 역진도를 강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머지 않은 장래에는 교통세 부담이 상당히 역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조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 및 교통혼잡 완화 등 사회적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자원재배분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한 만큼 형평성 측면만을 강조하여 개편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주 세

2001년의 맥주세율 인하(115%→100%)와 2002년의 청주세율 인하(70%→30%)로 인해 주세 부담이 감소하였다. 맥주와 청주 모두 대중적인 소비기반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주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보다는 세부담의 경감효과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부담 규모에 비해 맥주 세율인하에 따른 세경감효과도 크지 않을 뿐더러 청주의 경우에는 세율인하폭이 상당히 크지만 청주의 소비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세부담의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표 IV-6>을 보더라도 실효주세부담률이 세율인하 전·후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다.

4. 평 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2002년 동안에 발생한 주요 세목의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해보면, 미소하나마 그 효

<표 IV-5>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교통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91	195	258	358	415	460	510	579	663	893	442
	2001	91	194	256	356	413	458	508	577	660	889	440
	2002	93	200	264	366	425	470	522	592	677	912	452
근로자	2000	79	170	257	367	429	450	503	591	636	826	413
	2001	78	169	256	366	427	448	501	588	633	822	411
	2002	81	173	263	375	439	460	514	603	650	844	422
자영업자	2000	148	256	258	339	390	476	524	563	710	982	498
	2001	147	255	257	338	388	474	521	560	707	978	496
	2002	152	262	264	347	398	486	535	575	727	1004	509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79	1.16	1.27	1.52	1.54	1.51	1.47	1.45	1.39	1.26	1.37
	2001	0.79	1.16	1.26	1.52	1.53	1.50	1.47	1.44	1.39	1.26	1.36
	2002	0.81	1.19	1.30	1.56	1.57	1.54	1.51	1.48	1.42	1.29	1.4
근로자	2000	0.69	1.01	1.27	1.56	1.59	1.47	1.45	1.48	1.34	1.15	1.33
	2001	0.69	1.00	1.27	1.55	1.58	1.47	1.44	1.47	1.33	1.15	1.32
	2002	0.71	1.03	1.30	1.60	1.63	1.51	1.48	1.51	1.37	1.18	1.36
자영업자	2000	1.23	1.53	1.27	1.45	1.45	1.56	1.52	1.40	1.49	1.41	1.45
	2001	1.22	1.53	1.26	1.44	1.44	1.56	1.51	1.40	1.49	1.41	1.44
	2002	1.26	1.57	1.30	1.48	1.48	1.60	1.55	1.43	1.53	1.44	1.48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2.06	4.40	5.82	8.11	9.38	10.39	11.54	13.10	14.99	20.21	100
	2001	2.06	4.40	5.82	8.11	9.38	10.39	11.54	13.09	14.99	20.21	100
	2002	2.07	4.40	5.83	8.11	9.38	10.39	11.54	13.09	14.99	20.20	100
근로자	2000	2.40	4.40	6.07	9.08	10.32	10.31	11.90	12.90	15.13	17.50	100
	2001	2.40	4.40	6.08	9.08	10.32	10.31	11.90	12.90	15.13	17.50	100
	2002	2.40	4.40	6.09	9.08	10.32	10.31	11.89	12.90	15.12	17.49	100
자영업자	2000	1.54	4.41	5.42	6.59	7.91	10.51	10.99	13.39	14.77	24.46	100
	2001	1.54	4.41	5.43	6.59	7.91	10.52	10.99	13.39	14.77	24.46	100
	2002	1.54	4.41	5.43	6.59	7.91	10.52	10.98	13.39	14.78	24.45	100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95

<표 IV-6>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주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11	15	16	16	17	22	22	24	25	32	20
	2001	11	15	16	16	17	21	21	23	24	31	19
	2002	10	14	15	15	16	20	20	21	22	29	18
근로자	2000	11	15	15	16	18	22	23	22	23	30	19
	2001	11	15	15	16	17	21	22	21	22	29	19
	2002	10	14	14	15	16	20	21	20	21	27	17
자영업자	2000	12	16	18	16	17	21	21	26	28	34	22
	2001	11	15	18	16	16	21	20	25	27	33	21
	2002	10	15	17	15	15	20	19	24	25	31	20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10	0.09	0.08	0.07	0.06	0.07	0.06	0.06	0.05	0.04	0.06
	2001	0.10	0.09	0.08	0.07	0.06	0.07	0.06	0.06	0.05	0.04	0.06
	2002	0.09	0.08	0.07	0.06	0.06	0.07	0.06	0.05	0.05	0.04	0.06
근로자	2000	0.10	0.09	0.07	0.07	0.07	0.07	0.07	0.06	0.05	0.04	0.06
	2001	0.10	0.09	0.07	0.07	0.06	0.07	0.06	0.05	0.05	0.04	0.06
	2002	0.09	0.08	0.07	0.06	0.06	0.07	0.06	0.05	0.04	0.04	0.06
자영업자	2000	0.10	0.09	0.09	0.07	0.06	0.07	0.06	0.06	0.06	0.05	0.06
	2001	0.09	0.09	0.09	0.07	0.06	0.07	0.06	0.06	0.06	0.05	0.06
	2002	0.08	0.09	0.08	0.06	0.06	0.06	0.05	0.06	0.05	0.04	0.06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5.69	7.69	8.05	8.08	8.67	10.72	11.05	11.77	12.41	15.87	100
	2001	5.75	7.70	8.05	8.06	8.67	10.70	11.01	11.75	12.40	15.90	100
	2002	5.65	7.80	8.16	8.19	8.59	10.93	11.09	11.64	12.27	15.68	100
근로자	2000	7.44	8.56	7.61	8.60	9.25	10.68	11.77	10.44	11.87	13.78	100
	2001	7.51	8.58	7.61	8.58	9.27	10.64	11.73	10.42	11.86	13.80	100
	2002	7.49	8.72	7.73	8.74	9.19	10.91	11.79	10.17	11.66	13.59	100
자영업자	2000	2.78	6.24	8.79	7.22	7.69	10.79	9.85	13.97	13.32	19.35	100
	2001	2.81	6.24	8.79	7.20	7.67	10.79	9.81	13.97	13.30	19.41	100
	2002	2.60	6.27	8.89	7.27	7.59	10.95	9.91	14.10	13.28	19.15	100

과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가장 세부담 경감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세율의 비례적 인하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부담을 비례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세부담의 누진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소득공제의 확대는 과세자 대 면세자 간의 집중도 변화, 과세자 내부자 간의 상대적 집중도의 변화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미약하나마 결과적으로 세부담의 집중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체계로 인해 세부담이 누진적이기 때문에, 비록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소득공제 확대 및 세율인하로 인해 2000~2002년 세법 사이에 세부담이 약 17.9% 하락하면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미소하게나마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세부담 분포가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후의 지니계수는 2000년 세법을 적용하였을 때 0.27008이었던 것이 2002년 세법을 적용하면 0.27168로 추정되어 0.6%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니계수 차이는 표본추출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를 논하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Ⅱ장 2절 나항에서 예를 든 것처럼 소득세 면세가구비율로부터 개인 기준 면세비율을 역산해보면 2000~2002년 소득세법의 경우 각각 47.03%, 47.08%, 47.85%로 면세비율(개인기준)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면세자와 과세자 간의 상대적인 조세집중도가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이는 2000~2002년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상층으로의 공제확대였을 뿐, 100%의 근로소득공제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97

율이 적용되는 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세자 비율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반면에 2002년 세법에서 상방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른 과표 감소와 소득세율의 인하는 전체 과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최소한 1/10씩 경감시켜 주었다. 또한 과세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더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과세자 내의 소득세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2000~2002년 사이의 소득세제 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조세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2002년 사이에 소득공제가 확대된 데에는 중산층의 소득세 경감 측면보다는 연봉제 확산 및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한도가 축소됨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정책에 따라 접대비를 인건비에 엮어주는 새로운 관행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기형적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또한 정보기술 혁명으로 대표되는 벤처 붐에 힘입어 고액연봉자가 속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급두뇌의 활발한 국제간 이동에 따른 인력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취해진 측면도 크다. 그러므로 2000~2002년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 개편을 반드시 형평성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2000~2002년의 소득세법 사이의 형평성 저하의 정도도 매우 미미하고, 또한 형평성 이외의 다른 과세목적의 충족에 따른 효용을 고려할 때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평가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비세 부담 자체의 집중도, 특히 그 가운데 KPS 지수의 값이 1 정도로 나타나 사실상 소비세 부담이 소득계층별로 비례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더욱이 전화세 폐지에 따라 소비세 부담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으나 전화세 부담이 부가가치

세 부담으로 이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비세 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과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이 높은 세목에서 세율개편의 정도가 작았으며, 따라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작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교통세와 같이 세율의 변화가 상당히 큰 세목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부담이 비례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며, 비록 세부담의 역진성이 큰 전화세의 경우

<표 IV-7> 세법연도별 조세부담 특성 요약

(단위: %)

	2000년 세법	2001년 세법	2002년 세법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0.27988	0.27988	0.27988
근로·종합소득세 면세가구 비율	23.19	23.26	24.36
조세집중도			
소득세+소비세	0.36992	0.36666	0.35591
소득세	0.55833	0.55430	0.55545
소비세	0.25202	0.25082	0.24964
부가가치세	0.24953	0.24702	0.24246
특별소비세	0.31195	0.29312	0.26152
주세	0.16109	0.16454	0.16385
전화세	0.17223	0.17223	-
교통세	0.29015	0.29011	0.28994
담배소비세	0.06274	0.06274	0.06274
소비세분교육세	0.26299	0.26000	0.25831
KPS 지수			
소득세+소비세	0.90386	0.90768	0.91921
소득세	0.69862	0.70392	0.70263
소비세	1.03222	1.03349	1.03455
부가가치세	1.03355	1.03628	1.04124
특별소비세	0.94627	0.96535	0.99710
주세	1.12555	1.12577	1.13044
전화세	1.11776	1.11776	-
교통세	1.00197	1.00201	1.00218
담배소비세	1.22641	1.22641	1.22641
소비세분교육세	1.01912	1.02218	1.02305

IV. 세제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99

<표 IV-8> 세법연도별·소득종류별 지니계수의 변화 추정결과

소득의 종류	2000년 세법	2001년 세법	2002년 세법
시장소득	0.28459	0.28459	0.28459
총소득	0.27988	0.27988	0.27988
총소득-소득세	0.27008	0.27037	0.27168
총소득-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0.27007	0.27037	0.27169
총소득-소비세	0.28188	0.28194	0.28199
총소득-소득세-소비세	0.27166	0.27203	0.27344
총소득-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소비세	0.27186	0.27222	0.27365
총소득-소득세-재산세 등	0.26965	0.26994	0.27126
총소득-소득세-재산세 등-사회보장기여금	0.26971	0.27002	0.27135

주: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는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계 조사자료에 보고된 수치를 사용하였음.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 여타 조사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세금과 준조세 등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세와 소비세는 주어진 자료로부터 추정(imputation)하여 사용하였음. 그러나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음에 유의하기 바람.

에도 그 부담이 대부분 부가가치세로 이전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00~2002년 사이의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편이 소득 재분배에 미친 영향은, 비록 아주 미약하게나마 상대적인 소득격차를 다소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준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표 IV-8>에서 보듯이 각 세법연도별로 총소득으로부터 각종 세금을 차감한 후의 지니계수 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앞의 제IV장에서는 기존의 제도개편에 대한 평가를 사후적(ex post)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본장과 제VI장에서는 이미 제기되었던 제도개편의 효과 대신 현재 논의중이거나 향후에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선행적(ex ante)인 관점에서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관심대상은,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조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나 또는 개선이 필요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장에서는 특정 제도의 구체적 항목 개편에 의한 효과 분석보다는 자료분포의 변화 또는 세원별 과세비중의 조정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정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자료분포를 특정 시점에 고정시켜 놓고 대안별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의 제VI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 개 요

가. 소득 및 물가조정을 통한 면세비율 조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 소득세는 면세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01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및 소득분배구조에 비해 각종 소득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거의 대부분이 과세당국에 의해 포착되는 반면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일부만이 신고 또는 포착되기 때문에 소득형태별로 실효과세율이 다르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였고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둬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공제를 포함한 각종 소득공제 수준이 현재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상당부분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아 조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해 면세점이 과도하게 높아진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면세자의 비율이 40~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반면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국세 점유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연방세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비록 세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높으나 세부담(세수) 규모가 작아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수준이 낮은 데에는 면세점이 높아 면세비율이 높다는 점이 많이 지적된다.

그러므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면세점 조정을 통해 면세비율을 축소하면 다소 세부담의 누진도가 완화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낮추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명목 소득공제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질면세점을 낮추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 이는 제VI장의 <표 VI-5>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구간이나 세율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는다. 이는 소득공제 수준이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높게 설정됨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공제수준이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없이 최소한 수년간은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정치적으로 명목공제 수준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제 수준을 현 수준에 고정시키고 소득이나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별도의 조정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소득공제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명목소득공제의 축소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소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서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흔히 조세정책이라고 하면 세제개편을 연상하기 쉬우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편을 미루는 것도 조세정책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Ⅲ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소득공제를 개편한 후 수년 동안 추가적인 개편을 하지 않았던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면세비율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행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한 소득공제 수준을 실질적으로 축소 또는 정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이 수행된 적이 별로 없다. 소득공제 제도의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도 정책결정 과정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지만, 상기와 같이 소득조정 및 물가조정을 이용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03

하여 소득세 면세점의 실질가치를 조정해주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분석이 긴요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면세점의 실질가치를 정책목표상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소득조정·물가조정 기간 등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세수탄력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기초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소득조정 및 물가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경로

면세비율이 높을수록 면세자와 과세자 간의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면세점이 높게 설정될수록 과세자의 과표가 그만큼 축소되고 따라서 세부담(세수) 규모도 축소된다. 이 경우 비록 세부담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만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다. 왜냐하면 높은 세부담의 집중도는 단순히 세부담 1단위당 한계 또는 평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반드시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크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총세부담(총세수)의 크기라는 두 가지 요인 모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세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높으나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작은 것보다, 비록 세부담의 누진도는 다소 낮으나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충분히 더 큰 세목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종 소득공제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 물가상승 및 소득 증가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면세비율이 하락하고 과세자 비율 및 소득세 과표가 함께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처럼 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세 부담(세수)을 증대시키면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만큼 증대될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목소득증가율이 달라짐에 따라 세부담 증가율 및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본장의 제2절에서는 바로 이 점을 분석하고자, 면세비율 축소를 목적으로 명목소득이 충분히 증가할 때까지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가상적인 시나리오하에서 소득증가율에 대응한 세부담(세수) 효과, 즉 세수탄력성을 추정해본다. 아울러 소득증가율과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민감도도 함께 분석해보았다.

나.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22% 수준이다. 여타의 OECD 회원국의 경우 약 30%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론 일본과 미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본격화되면서 복지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등 향후의 경제여건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 조세부담률 수준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제도나 세원별 세수비중이 변하면 소득분배구조도 변하듯, 조세부담률 수준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분배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의 상승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세부담률의 변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제3절에서 분석해본다.

다.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전절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득재분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일정하더라도 세원별로 과세비중이 변하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변한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세부담(세수)을 전제로 하더라도 과세대상 및 과세체계의 차이로 인해 세원별로 세부담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세원별 세부담의 분포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세조합의 형태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동일한 세수를 나타내더라도 소득세의 비중이 더 높은지 또는 소비세의 비중이 더 높은지에 따라 세후소득의 소득분배 상태가 달라진다. 또한 전체적인 조세부담률 차이에 의해서도 소득분배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4절에서는 세수중립적인 개편을 전제로 세원별 과세비중의 조합이 바뀔 때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2. 소득공제 수준 동결을 통한 면세비율의 축소와 소득재분배 효과

가. 소득조정 및 물가조정 시나리오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수년간 근로소득공제를 위시하여 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다. 높은 소득공제 수준은 필연적으로 높은 면세비율을 가져다주었으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등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당분간 소득공제를 조정하지 않는 것 또

한 조세정책의 하나이다. 이는 소득공제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효과의 강도(또는 탄력성)와 소득계층별 분배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많이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별로 없다. 본절에서는 소득세법이 2002년 현재의 세법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상 소득세법은 2002년 과세연도로 고정시키도록 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소득 및 물가조정은 아래의 <표 V-1>에서 보듯이 일곱가지의 가상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해본다.

먼저 2000~2002년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1~3을 작

<표 V-1> 소득·물가조정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소득세 면세가구 비율의 변화

(단위: %)

소득배수	소득세 면세가구 비율	비 고
1.00	27.29	2000년 조정표본 적용
1.0442	26.15	2001년 조정표본 적용
1.0442×1.0646=1.111655	24.36	2002년 조정표본 적용
1.10	24.73	2002년 조정표본×소득배수 적용
1.20	22.67	
1.30	21.30	
1.40	19.98	
1.50	18.77	

주: 1. 소득배수는 2000년 조정표본에 의한 소득을 1로 보았을 경우의 비율을 나타냄.

2. 2002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임.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07

성하고, 시나리오 4~8은 2000년 소득 분포(시나리오 1)에서 10%p씩 소득·소비지출을 증가시킨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 때의 소득 분포는 <표 V-2>와 같다.

<표 V-2> 소득·물가조정 시나리오별 소득 분포

(단위: 천원, %)

시나리오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가구	1	10322	15129	18250	21143	24250	27425	31160	35978	42797	63685	29017
	2	10778	15798	19056	22078	25322	28637	32538	37568	44688	66500	30300
	3	11474	16818	20287	23504	26958	30487	34640	39995	47575	70796	32257
	4	11354	16642	20075	23258	26675	30168	34276	39575	47076	70053	31919
	5	12386	18155	21900	25372	29100	32910	37392	43173	51356	76422	34821
	6	13418	19667	23725	27486	31526	35653	40508	46771	55636	82790	37722
	7	14450	21180	25550	29601	33951	38395	43624	50369	59916	89159	40624
	8	15482	22693	27375	31715	36376	41138	46741	53966	64195	95527	43526
근로자가구	1	10206	15166	18206	21166	24261	27477	31218	35880	42785	64498	27985
	2	10658	15837	19011	22101	25333	28692	32598	37466	44677	67348	29222
	3	11346	16860	20239	23529	26970	30545	34704	39886	47563	71699	31109
	4	11227	16683	20027	23282	26687	30225	34340	39468	47064	70947	30783
	5	12248	18200	21848	25399	29113	32973	37462	43056	51342	77397	33582
	6	13268	19716	23668	27515	31539	35720	40583	46644	55621	83847	36380
	7	14289	21233	25489	29632	33965	38468	43705	50232	59900	90297	39179
	8	15310	22750	27310	31749	36391	41216	46827	53820	64178	96746	41977
자영업자가구	1	10850	15040	18326	21099	24231	27340	31058	36118	42817	62598	30972
	2	11329	15705	19136	22031	25302	28548	32431	37714	44710	65365	32341
	3	12061	16719	20372	23454	26936	30393	34526	40151	47598	69588	34430
	4	11935	16544	20159	23209	26654	30074	34164	39730	47099	68858	34069
	5	13020	18048	21992	25318	29077	32808	37270	43342	51381	75118	37166
	6	14105	19552	23824	27428	31500	35542	40376	46953	55662	81378	40264
	7	15190	21056	25657	29538	33923	38276	43482	50565	59944	87638	43361
	8	16275	22560	27489	31648	36346	41010	46588	54177	64226	93898	46458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3.56	5.20	6.29	7.30	8.35	9.44	10.74	12.40	14.75	21.97	100	
근로자	4.59	5.81	6.35	7.72	8.61	9.29	10.89	11.57	15.01	20.17	100	
자영업자	1.82	4.16	6.19	6.58	7.90	9.71	10.47	13.81	14.31	25.05	100	

주: 시나리오 1 - 2000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
 시나리오 2 - 2001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442)
 시나리오 3 - 2002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111655)
 시나리오 4 - 2000년 조정표본 × 1.1 (소득배수=1.1)
 시나리오 5 - 2000년 조정표본 × 1.2 (소득배수=1.2)
 시나리오 6 - 2000년 조정표본 × 1.3 (소득배수=1.3)
 시나리오 7 - 2000년 조정표본 × 1.4 (소득배수=1.4)
 시나리오 8 - 2000년 조정표본 × 1.5 (소득배수=1.5)

<표 V-3> 근로·종합소득세의 가상적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

세부담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가구	1	15	79	177	238	334	464	609	994	1458	2760	713
	2	18	91	198	265	369	517	692	1123	1623	3011	791
	3	24	110	232	308	427	615	835	1325	1883	3404	917
	4	23	107	226	301	417	597	809	1290	1838	3335	894
	5	32	139	277	369	522	769	1036	1599	2235	3939	1092
	6	42	174	331	447	655	972	1277	1918	2645	4577	1304
	7	54	211	389	547	815	1191	1534	2251	3067	5255	1532
	8	68	251	458	673	993	1424	1805	2592	3507	5970	1774
근로자가구	1	0	12	46	102	165	257	370	708	1168	2104	456
	2	0	16	59	122	193	301	439	826	1331	2342	521
	3	1	24	79	155	241	384	560	1017	1591	2721	627
	4	1	22	76	149	232	369	538	983	1545	2655	608
	5	2	39	110	203	321	518	737	1281	1949	3244	780
	6	5	61	147	268	435	698	957	1597	2373	3880	968
	7	9	85	191	355	570	901	1200	1935	2815	4561	1174
	8	15	113	246	469	727	1125	1465	2288	3286	5283	1399
자영업자가구	1	83	240	408	509	648	800	1031	1408	1978	3637	1200
	2	100	270	444	551	697	869	1140	1551	2148	3905	1303
	3	128	315	500	615	775	990	1322	1770	2408	4317	1464
	4	123	307	491	604	761	968	1290	1732	2363	4245	1436
	5	167	375	573	700	895	1178	1565	2057	2748	4868	1683
	6	214	442	656	806	1066	1417	1844	2382	3133	5508	1941
	7	261	510	738	931	1271	1662	2125	2707	3518	6182	2208
	8	309	577	833	1081	1488	1909	2406	3031	3903	6887	2485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가구	1	0.15	0.52	0.97	1.12	1.38	1.69	1.95	2.76	3.41	4.33	2.46
	2	0.17	0.58	1.04	1.20	1.46	1.81	2.13	2.99	3.63	4.53	2.61
	3	0.21	0.66	1.14	1.31	1.59	2.02	2.41	3.31	3.96	4.81	2.84
	4	0.20	0.64	1.12	1.29	1.56	1.98	2.36	3.26	3.90	4.76	2.80
	5	0.26	0.76	1.27	1.45	1.79	2.34	2.77	3.70	4.35	5.15	3.14
	6	0.31	0.88	1.39	1.63	2.08	2.73	3.15	4.10	4.75	5.53	3.46
	7	0.37	1.00	1.52	1.85	2.40	3.10	3.52	4.47	5.12	5.89	3.77
	8	0.44	1.10	1.67	2.12	2.73	3.46	3.86	4.80	5.46	6.25	4.08
근로자가구	1	0.00	0.08	0.25	0.48	0.68	0.94	1.19	1.97	2.73	3.26	1.63
	2	0.00	0.10	0.31	0.55	0.76	1.05	1.35	2.20	2.98	3.48	1.78
	3	0.01	0.14	0.39	0.66	0.89	1.26	1.61	2.55	3.35	3.80	2.02
	4	0.01	0.13	0.38	0.64	0.87	1.22	1.57	2.49	3.28	3.74	1.98
	5	0.02	0.22	0.50	0.80	1.10	1.57	1.97	2.97	3.80	4.19	2.32
	6	0.04	0.31	0.62	0.97	1.38	1.95	2.36	3.42	4.27	4.63	2.66
	7	0.06	0.40	0.75	1.20	1.68	2.34	2.75	3.85	4.70	5.05	3.00
	8	0.10	0.50	0.90	1.48	2.00	2.73	3.13	4.25	5.12	5.46	3.33
자영업자가구	1	0.76	1.60	2.23	2.41	2.68	2.93	3.32	3.90	4.62	5.81	3.87
	2	0.88	1.72	2.32	2.50	2.76	3.05	3.51	4.11	4.80	5.97	4.03
	3	1.06	1.88	2.45	2.62	2.88	3.26	3.83	4.41	5.06	6.20	4.25
	4	1.03	1.86	2.43	2.60	2.85	3.22	3.78	4.36	5.02	6.17	4.22
	5	1.29	2.08	2.61	2.77	3.08	3.59	4.20	4.75	5.35	6.48	4.53
	6	1.52	2.26	2.75	2.94	3.39	3.99	4.57	5.07	5.63	6.77	4.82
	7	1.72	2.42	2.88	3.15	3.75	4.34	4.89	5.35	5.87	7.05	5.09
	8	1.90	2.56	3.03	3.42	4.09	4.66	5.16	5.60	6.08	7.33	5.35

주: 시나리오 1 - 2000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
 시나리오 2 - 2001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442)
 시나리오 3 - 2002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111655)
 시나리오 4 - 2000년 조정표본 × 1.1 (소득배수=1.1)
 시나리오 5 - 2000년 조정표본 × 1.2 (소득배수=1.2)
 시나리오 6 - 2000년 조정표본 × 1.3 (소득배수=1.3)
 시나리오 7 - 2000년 조정표본 × 1.4 (소득배수=1.4)
 시나리오 8 - 2000년 조정표본 × 1.5 (소득배수=1.5)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09

<표 V-3>의 계속

(단위: 천원, %)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가구	1	0.21	1.11	2.48	3.34	4.68	6.50	8.54	13.94	20.45	38.75	100
	2	0.23	1.15	2.50	3.36	4.66	6.54	8.75	14.19	20.53	38.10	100
	3	0.26	1.20	2.53	3.37	4.66	6.70	9.11	14.46	20.55	37.17	100
	4	0.25	1.19	2.52	3.37	4.66	6.67	9.05	14.42	20.55	37.33	100
	5	0.29	1.27	2.54	3.38	4.77	7.04	9.49	14.64	20.47	36.11	100
	6	0.32	1.33	2.54	3.44	5.02	7.45	9.79	14.71	20.28	35.13	100
	7	0.35	1.37	2.54	3.58	5.32	7.77	10.01	14.69	20.02	34.34	100
	8	0.38	1.41	2.58	3.80	5.59	8.02	10.17	14.61	19.77	33.68	100
근로자가구	1	0.01	0.27	0.99	2.28	3.60	5.34	7.93	14.01	25.17	40.41	100
	2	0.01	0.32	1.10	2.39	3.68	5.47	8.24	14.31	25.11	39.37	100
	3	0.02	0.41	1.24	2.52	3.81	5.79	8.71	14.63	24.90	37.96	100
	4	0.02	0.39	1.21	2.50	3.79	5.73	8.64	14.58	24.94	38.19	100
	5	0.04	0.54	1.37	2.66	4.10	6.29	9.23	14.82	24.55	36.41	100
	6	0.06	0.67	1.48	2.83	4.46	6.82	9.65	14.88	24.07	35.08	100
	7	0.10	0.77	1.58	3.09	4.82	7.26	9.98	14.87	23.54	33.99	100
	8	0.14	0.86	1.71	3.42	5.16	7.61	10.22	14.75	23.06	33.05	100
자영업자가구	1	0.36	1.71	3.55	4.10	5.46	7.34	8.97	13.90	17.06	37.56	100
	2	0.40	1.77	3.57	4.09	5.40	7.34	9.14	14.10	17.06	37.14	100
	3	0.45	1.84	3.57	4.06	5.34	7.44	9.43	14.32	17.02	36.53	100
	4	0.44	1.83	3.57	4.06	5.35	7.41	9.38	14.29	17.03	36.63	100
	5	0.52	1.90	3.56	4.02	5.37	7.70	9.71	14.48	16.90	35.85	100
	6	0.57	1.95	3.53	4.01	5.55	8.04	9.93	14.54	16.71	35.18	100
	7	0.61	1.98	3.50	4.07	5.81	8.28	10.05	14.52	16.49	34.69	100
	8	0.64	1.99	3.50	4.20	6.04	8.45	10.11	14.45	16.25	34.34	100

주: 시나리오 1 - 2000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
 시나리오 2 - 2001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442)
 시나리오 3 - 2002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111655)
 시나리오 4 - 2000년 조정표본 × 1.1 (소득배수=1.1)
 시나리오 5 - 2000년 조정표본 × 1.2 (소득배수=1.2)
 시나리오 6 - 2000년 조정표본 × 1.3 (소득배수=1.3)
 시나리오 7 - 2000년 조정표본 × 1.4 (소득배수=1.4)
 시나리오 8 - 2000년 조정표본 × 1.5 (소득배수=1.5)

<표 V-4>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가구유형별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감효과

(단위: %)

시나리오	소득배수	전체 (근로·종합소득세)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세)	자영업자가구 (종합소득세)
1	1.0	-	-	-
2	1.0442	10.9	14.3	8.6
3	1.111655	28.6	37.5	22.0
4	1.1	25.4	33.3	19.7
5	1.2	53.2	71.1	40.3
6	1.3	82.9	112.3	61.8
7	1.4	114.9	157.5	84.0
8	1.5	148.8	206.8	107.1

주: 시나리오 1 - 2000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
 시나리오 2 - 2001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0442)
 시나리오 3 - 2002년 조정표본 (소득배수=1.111655)
 시나리오 4 - 2000년 조정표본 × 1.1 (소득배수=1.1)
 시나리오 5 - 2000년 조정표본 × 1.2 (소득배수=1.2)
 시나리오 6 - 2000년 조정표본 × 1.3 (소득배수=1.3)
 시나리오 7 - 2000년 조정표본 × 1.4 (소득배수=1.4)
 시나리오 8 - 2000년 조정표본 × 1.5 (소득배수=1.5)

나. 기대효과: 면세비율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득세 면세자에서 과세자로 전환되는 납세자가 증가하면서 면세비율이 하락한다. <표 V-1>에서 보듯이 소득세법을 2002년에 고정시킨 채 2000년 자료의 소득 분포를 적용하면 전체 면세가구의 비율은 27.29%이다. 만약 여기에서 2002년 세법하에서의 소득공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소득세법을 그대로 묶어둔다고 가정하자.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소득수준(경상치)이 4.42% 증가(시나리오 2)증가하였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면세점은 거꾸로 4.42%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세가구비율은 26.15%로 하락한다.

만약 1년 동안의 소득 및 물가조정이 불충분하여 추가적으로 1년간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물가조정(6.46%)을 지속한다면 면세가구비율은 24.36%로 더욱 축소된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10%에서 50%까지 10%p별로 가상적으로 소득조정·물가조정을 해본 결과 면세비율은 첫 번째 조정시 2.56%p(27.29%→24.73%) 하락하고, 추가적으로 10%씩 소득·물가조정을 추가할 때마다 2.06%p, 1.37%p, 1.32%p, 1.21%p씩 면세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물가조정비율이 상승할 때마다 단위당 면세비율의 하락폭은 감소한다.

다. 기대효과: 소득계층별 실효세부담률과 세부담(세수) 효과

소득·물가조정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면세비율이 줄고 과세자비율이 상승하면서 과세자의 과표도 함께 증가한다. 소득세제는 누진세율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의 상승은 곧 한계세율의 상승을 의미하여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효세부담률을 상승시킨다.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11

과표가 증가함에 따른 한계세율의 상승 정도는 계층별로 차이가 난다. 면세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세비율의 축소와 과세자로의 편입으로 인해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한다. 중소득층과 대다수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과표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이 상승하면서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한다. 그러나 최고세율 36%(2002년 세법 기준)를 적용받는 극히 일부의 소득자에게는 한계세율의 변화가 없으며 다만 그들의 소득 가운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효세부담률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러므로 소득·물가조정에 따라 모든 납세자의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지만 그 정도는 각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소득계층별 근로·종합소득세의 점유비는 소득·물가조정이 커질수록 1~9분위에서 상승하는 반면 10분위에서는 하락한다(<표 V-3> 참조). 이러한 현상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숫적으로는 극히 일부지만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표가 아무리 크게 증가하더라도 한계세율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여타의 소득계층에 비해 세부담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4>에서 보듯이 소득·물가조정을 10%로 하였을 경우(시나리오 4)에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시나리오 1)에 비해 소득은 비례적으로 10% 높지만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또는 세수)은 25.39% 증가하여 세부담(세수) 탄력성이 2.54에 이른다. 극단적으로 소득·물가조정이 50%인 경우(시나리오 5)와 비교해보면 소득은 50% 높지만 세부담(세수)은 148.81% 증가하여 세수탄력성은 2.98에 이른다. 소득·물가조정이 10%인 경우보다 훨씬 높다. 만약 소득·물가조정을 더 높은 수준에서 한다면 세수탄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실질면세점이 낮아지면서 과세자비율이 상승하고 한계세율 또한 상승함에 따른 두 가지 효과가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효근로·종합소득세부담률도 상승한다. 소득·물가조정을 많이 할수록 실효세부담률 또한 더 크게 상승한다. 전혀 소득·물가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실효근로·종합소득세부담률은 2.46%이지만 10%씩 추가적으로 소득·물가조정을 할 경우 실효세부담률은 각각 2.80%, 3.14%, 3.46%, 3.77%, 4.08%로 상승한다.

라. 기대효과: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10분위의 세부담 점유비가 하락하고 다른 분위의 세부담 점유비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세부담의 집중도 즉, 누진도가 완화되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소득배수가 상승할수록 소득세의 집중도는 하락한다. KPS 지수의 상승이 소득세의 누진도 하락을 뒷받침해준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 완화는 소득세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부담의 비중에 따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 속도가, 단위당 세부담의 누진도 악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상승한다.

<표 V-5>에서 보듯이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소득배수가 커질수록 소득세후의 지니계수는 점점 더 작아진다. 이는 소득세 집중도의 완화 또는 누진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두고 소득·물가조정에 의한 소득배수가 가상적으로 10% 상승하였다고 하면 소득세후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0.28%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소득조정을 지속하여 소득배수가 50%에 이르면 지니계수는 1.03% 하락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13

<표 V-5> 소득·물가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계수 및 조세집중지수의 변화효과

(단위: %)

	소득배수	지니계수		총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총소득-소득세	조세집중도	KPS 지수	조세집중도	KPS 지수	
전체 가구	1.00	0.27251 (-)	0.56559	0.68876	0.56938	0.68475	
	1.0442	0.27216 (-0.13)	0.56174	0.69410	0.56515	0.69054	
	1.111655	0.27168 (-0.30)	0.55545	0.70263	0.55837	0.69966	
	1.10	0.27176 (-0.28)	0.55658	0.70113	0.55957	0.69806	
	1.20	0.27112 (-0.51)	0.54696	0.71375	0.54933	0.71142	
	1.30	0.27058 (-0.71)	0.53751	0.72572	0.53938	0.72395	
	1.40	0.27010 (-0.88)	0.52843	0.73683	0.52990	0.73551	
	1.50	0.26970 (-1.03)	0.51937	0.74753	0.52051	0.74657	
근로 자가 가구	1.00	0.28072 (-)	0.65909	0.58899	0.66448	0.58346	
	1.0442	0.28029 (-0.15)	0.65145	0.59939	0.65592	0.59495	
	1.111655	0.27968 (-0.37)	0.63984	0.61491	0.64319	0.61179	
	1.10	0.27978 (-0.33)	0.64187	0.61222	0.64539	0.60890	
	1.20	0.27895 (-0.63)	0.62525	0.63389	0.62750	0.63203	
	1.30	0.27821 (-0.89)	0.61046	0.65265	0.61184	0.65177	
	1.40	0.27755 (-1.13)	0.59649	0.66992	0.59723	0.66974	
	1.50	0.27698 (-1.33)	0.58286	0.68633	0.58310	0.68668	
자영 업 자가 가구	1.00	0.25529 (-)	0.45621	0.79254	0.46094	0.78746	
	1.0442	0.25510 (-0.07)	0.45307	0.79641	0.45754	0.79161	
	1.111655	0.25486 (-0.17)	0.44813	0.78048	0.45226	0.79808	
	1.10	0.25489 (-0.16)	0.45898	0.80144	0.45316	0.79697	
	1.20	0.25461 (-0.27)	0.44176	0.81015	0.44551	0.80617	
	1.30	0.25441 (-0.34)	0.43440	0.81876	0.43777	0.81519	
	1.40	0.25424 (-0.41)	0.42795	0.82600	0.43102	0.82276	
	1.50	0.25412 (-0.46)	0.42195	0.83244	0.42477	0.82947	

주: 1. 소득배수는 2000년 조정표본에 의한 소득을 1로 보았을 경우의 비율을 나타냄.

2. 2002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추정된 결과임.

3. () 안은 소득배수 1.00(시나리오 1) 대비 지니계수의 증감률임.

3.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본절에서는 가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조세부담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그것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목이 어떤 방향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이 변화하느냐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달라진다. 조세부담률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세원별 조합은 무수히 많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한 형태, 즉 모든 세목의 세수비중이 일정한 상태에서 세수의 절대규모만 일정 배수로 증가하여 조세부담률을 상승시키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²²⁾.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세와 소비세 모두 세부담의 상대적인 집중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 또는 누진도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제2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³⁾.

기준이 되는 세법은 2002년 세법으로 한다. 조세부담률 수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모든 세목의 세수(세부담)가 비례적으로 최대 2배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우

22) 엄밀한 의미에서 논한다면 조세부담률이라 함은 소득세와 소비세 이외에도 법인세, 재산세 등 무수히 많은 세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해 비록 전 세목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소득세와 소비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비는 높다. 본절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한 소득세와 소비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23) 앞 절에서 세부담의 누진도(또는 집중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에는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을 상기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를 상정한다.

소득세를 과세하기 이전 단계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27988이다. 2002년 현재의 세법과 2002년 조정표본자료를 사용한 경우(세부담 배수=1.0) 소득세·소비세 과세 후의 지니계수는 0.27344로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2.30%이다. 소득세 과세후의 변화율 -2.93%에 비해 0.63%p 작다.

가상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률을 10%씩 비례적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세수 지니계수는 0.27281로 낮아져 0.27988 대비 2.53%의 지니계수 하락 효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을 비례적으로 10%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세부담의 누진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적으로 증가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증대시키는 경우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계속 커진다. 이는 <표 IV-7>에서 보듯이 세부담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PS 지수의 값이 2002년 세법·2002년 분포 기준으로 0.91921로서 1보다 작은 값을 가져 소득세·소비세 부담이 총체적으로 계속 누진적인 세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증가한다. 소득세·소비세후의 지니계수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율(<표 V-6>의 증감률 B)은 조세부담률이 매 10%씩 상승할 때마다 0.19~0.23%p씩 지니계수(변화율의 증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하여 조세부담률 상승에 의한 한계소득재분배 효과는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이 상승함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승추세는 가구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공제 수준이 근로자가구보다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집중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표 V-6> 조세부담률 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결과

(단위: %)

가구	세부담 배수	총소득-소득세			총소득-소비세		총소득-소득·소비세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지니계수	증감률 A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전 체 가 구	1.0	0.27168	-	-2.93	0.28199	-	0.27344	-	-2.30
	1.1	0.27085	-0.31	-3.23	0.28226	0.10	0.27281	-0.23	-2.53
	1.2	0.27002	-0.61	-3.52	0.28254	0.20	0.27219	-0.46	-2.75
	1.3	0.26919	-0.92	-3.82	0.28283	0.30	0.27156	-0.69	-2.97
	1.4	0.26836	-1.22	-4.12	0.28313	0.40	0.27095	-0.91	-3.19
	1.5	0.26752	-1.53	-4.42	0.28345	0.52	0.27034	-1.13	-3.41
	1.6	0.26669	-1.84	-4.71	0.28378	0.63	0.26974	-1.35	-3.62
	1.7	0.26585	-2.15	-5.01	0.28412	0.76	0.26916	-1.57	-3.83
	1.8	0.26502	-2.45	-5.31	0.28448	0.88	0.26858	-1.78	-4.04
	1.9	0.26418	-2.76	-5.61	0.28485	1.01	0.26802	-1.98	-4.24
	2.0	0.26334	-3.07	-5.91	0.28524	1.15	0.26747	-2.18	-4.43
근 로 자 가 구	1.0	0.27968	-	-2.61	0.29011	-	0.28232	-	-1.69
	1.1	0.27893	-0.27	-2.87	0.29046	0.12	0.28186	-0.16	-1.85
	1.2	0.27818	-0.54	-3.13	0.29083	0.25	0.28142	-0.32	-2.01
	1.3	0.27743	-0.80	-3.40	0.29121	0.38	0.28098	-0.47	-2.16
	1.4	0.27668	-1.07	-3.66	0.29160	0.51	0.28055	-0.63	-2.31
	1.5	0.27593	-1.34	-3.92	0.29200	0.65	0.28013	-0.78	-2.45
	1.6	0.27518	-1.61	-4.18	0.29242	0.80	0.27973	-0.92	-2.59
	1.7	0.27443	-1.88	-4.44	0.29286	0.95	0.27934	-1.06	-2.73
	1.8	0.27368	-2.15	-4.70	0.29331	1.10	0.27896	-1.19	-2.86
	1.9	0.27294	-2.41	-4.96	0.29377	1.26	0.27860	-1.32	-2.99
	2.0	0.27219	-2.68	-5.22	0.29425	1.43	0.27826	-1.44	-3.11
취 업 근 로 자 가 구	1.0	0.26004	-	-3.25	0.27329	-	0.26421	-	-1.70
	1.1	0.25916	-0.34	-3.58	0.27381	0.19	0.26379	-0.16	-1.86
	1.2	0.25827	-0.68	-3.91	0.27435	0.39	0.26337	-0.32	-2.01
	1.3	0.25739	-1.02	-4.24	0.27490	0.59	0.26296	-0.47	-2.17
	1.4	0.25650	-1.36	-4.57	0.27548	0.80	0.26257	-0.62	-2.31
	1.5	0.25561	-1.70	-4.90	0.27606	1.01	0.26219	-0.76	-2.45
	1.6	0.25472	-2.05	-5.23	0.27667	1.24	0.26182	-0.90	-2.59
	1.7	0.25384	-2.38	-5.56	0.27729	1.46	0.26146	-1.04	-2.72
	1.8	0.25295	-2.73	-5.89	0.27793	1.70	0.26113	-1.17	-2.85
	1.9	0.25205	-3.07	-6.22	0.27859	1.94	0.26081	-1.29	-2.97
	2.0	0.25116	-3.41	-6.56	0.27927	2.19	0.26051	-1.40	-3.08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17

<표 V-6>의 계속

(단위: %)

가구	세부담 배수	총소득-소득세		총소득-소비세		총소득-소득·소비세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지니계수	증감률 A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자 영 업 자 가 구	1.0	0.25486	-	-3.18	0.26396	-	0.25512	-	-3.08
	1.1	0.25398	-0.35	-3.51	0.26408	0.05	0.25426	-0.34	-3.41
	1.2	0.25310	-0.69	-3.85	0.26421	0.09	0.25340	-0.67	-3.73
	1.3	0.25220	-1.04	-4.19	0.26435	1.15	0.25253	-1.02	-4.06
	1.4	0.25131	-1.39	-4.53	0.26450	0.20	0.25165	-1.36	-4.40
	1.5	0.25040	-1.75	-4.87	0.26466	0.27	0.25078	-1.70	-4.73
	1.6	0.24948	-2.11	-5.22	0.26484	0.33	0.24989	-2.05	-5.07
	1.7	0.24856	-2.47	-5.57	0.26503	0.41	0.24901	-2.39	-5.40
	1.8	0.24763	-2.84	-5.93	0.26523	0.48	0.24812	-2.74	-5.71
	1.9	0.24669	-3.21	-6.28	0.26544	0.56	0.24723	-3.09	-6.08
2.0	0.24575	-3.57	-6.64	0.26567	0.65	0.24634	-3.44	-6.42	

주: 1. 세부담배수는 2002년 조정표본 및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부담을 1로 보았을 경우의 비율을 나타냄.
 2. 증감률 A는 세부담배수 1.0의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증감률임. 증감률 B는 2000년 또는 2002년 조정표본의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전체·근로자·취업근로자·자영업자가구 각각 0.27988, 0.28718, 0.26878, 0.26323) 대비 각각의 지니계수의 증감률임.

4. 세원별 과세비중의 조정과 소득재분배²⁴⁾

본절에서는 동일 세수(세부담)의 가정아래 세부담의 누진도가 상이한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수점유비, 즉 소득세·소비세간의 세원별 과세비중을 조정하였을 경우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효과를

24) 본절에서는 세수중립의 가정하에 소득세와 소비세간의 상대비중만을 변화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다. 이는 곧 각종 공제나 면세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 상대세율체계를 유지하되 절대세율 수준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와 동일하다. 세수중립적 개편방안에는 무수히 많은 정책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어 개별가구의 세부담이 비례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상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하였다.

먼저 2002년 세법에 2002년 조정표본자료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소득세와 소비세의 가구당 평균 세부담은 각각 94만 9천원과 178만 3천원으로 총부담은 273만 2천원이며, 각각의 과세비중, 즉 세수점유비는 34.74%와 65.26%로 추정되었다.

동일 세수 가정하에서 소득세의 과세비중을 15%에서 시작하여 매 5%p씩 90%에 이를 때까지 증가시키고, 소비세의 비중은 이에 대응하여 85%에서 시작하여 10%에 이를 때까지 하락시켰다. 단, 소득세의 비중이 3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2002년 세법·조정분포시의 소득세 비중이 34.74%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소비세의 점유비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소비세목에 따라 서로 상이한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조합을 사용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분석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본절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모든 소비세목의 세수비중이 모두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표 IV-7>에서 보듯이 소득세의 KPS 지수는 0.70263으로 누진적이고 소비세는 1.03455로 미약하게 역진적이다. 이는 곧 동일 세수의 가정하에서 소득세의 비중을 늘릴수록 소득세·소비세의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승한다. 이 경우 소득세 비중을 매 5%p씩 증대시키는 한편 소비세 비중은 이에 대응하여 5%p씩 하향조정하면, 전체가구의 소득세후 또는 소비세후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각각으로부터 0.40~0.43%p와 0.05~0.08%p의 지니계수 하락률, 즉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소득세의 경우 세부담이 누진적이므로 소득세 비중의 상승에 따라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대되는 한편, 소비세의 경우 세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소비세 비중의 하락에 따라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함으로써 양자 모두로부터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수준은 소득세가 소비세에 비해 약

V. 소득세 면세비율 및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119

5배 수준에 이른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비중이 커질수록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크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V-7>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에 따른 소득종류별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결과

(단위: %)

가구	소득세 비중	총소득-소득세			총소득-소비세			총소득-소득·소비세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전 채 가 구	0.15	0.27636	1.72	-1.26	0.28284	0.30	1.06	0.27913	2.08	-0.27
	0.20	0.27518	1.29	-1.68	0.28261	0.22	0.98	0.27767	1.55	-0.79
	0.25	0.27399	0.85	-2.10	0.28240	0.15	0.90	0.27623	1.02	-1.30
	0.30	0.27281	0.42	-2.53	0.28219	0.07	0.83	0.27480	0.50	-1.82
	0.3474	0.27168	-	-2.93	0.28199	-	0.75	0.27344	-	-2.30
	0.40	0.27043	-0.46	-3.38	0.28179	-0.07	0.68	0.27196	-0.54	-2.83
	0.45	0.26923	-0.90	-3.81	0.28160	-0.14	0.61	0.27056	-1.05	-3.33
	0.50	0.26803	-1.34	-4.23	0.28141	-0.21	0.55	0.26917	-1.56	-3.83
	0.55	0.26683	-1.79	-4.66	0.28123	-0.27	0.48	0.26780	-2.06	-4.32
	0.60	0.26563	-2.23	-5.09	0.28106	-0.33	0.42	0.26643	-2.56	-4.81
	0.65	0.26443	-2.67	-5.52	0.28089	-0.39	0.36	0.26508	-3.06	-5.29
	0.70	0.26322	-3.11	-5.95	0.28073	-0.45	0.30	0.26374	-3.55	-5.77
	0.75	0.26201	-3.56	-6.38	0.28058	-0.50	0.25	0.26241	-4.03	-6.24
	0.80	0.26080	-4.00	-6.82	0.28043	-0.55	0.20	0.26110	-4.51	-6.71
	0.85	0.25960	-4.45	-7.25	0.28028	-0.61	0.14	0.25979	-4.99	-7.18
0.90	0.25839	-4.89	-7.68	0.28014	-0.66	0.09	0.25851	-5.46	-7.64	
근 로 자 가 구	0.15	0.28394	1.52	-1.13	0.29122	0.38	1.41	0.28782	1.95	0.22
	0.20	0.28286	1.14	-1.50	0.29092	0.28	1.30	0.28641	1.45	-0.27
	0.25	0.28178	0.75	-1.88	0.29064	0.18	1.20	0.28501	0.95	-0.76
	0.30	0.28070	0.36	-2.26	0.29036	0.09	1.11	0.28362	0.46	-1.24
	0.3474	0.27968	-	-2.61	0.29011	-	1.02	0.28232	-	-1.69
	0.40	0.27854	-0.41	-3.01	0.28983	-0.10	0.92	0.28089	-0.51	-2.19
	0.45	0.27746	-0.79	-3.38	0.28958	-0.18	0.84	0.27954	-0.98	-2.66
	0.50	0.27638	-1.18	-3.76	0.28933	-0.27	0.75	0.27821	-1.46	-3.12
	0.55	0.27531	-1.56	-4.13	0.28909	-0.35	0.67	0.27690	-1.92	-3.58
	0.60	0.27423	-1.95	-4.51	0.28885	-0.43	0.58	0.27559	-2.38	-4.04
	0.65	0.27316	-2.33	-4.88	0.28862	-0.51	0.50	0.27430	-2.84	-4.48
	0.70	0.27208	-2.72	-5.26	0.28840	-0.59	0.42	0.27303	-3.29	-4.93
	0.75	0.27101	-3.10	-5.63	0.28818	-0.67	0.35	0.27177	-3.74	-5.37
	0.80	0.26994	-3.48	-6.00	0.28797	-0.74	0.28	0.27053	-4.18	-5.80
	0.85	0.26888	-3.86	-6.37	0.28776	-0.81	0.20	0.26930	-4.61	-6.23
0.90	0.26782	-4.24	-6.74	0.28756	-0.88	0.13	0.26809	-5.04	-6.65	

<표 V-7>의 계속

(단위: %)

가구	소득세 비중	총소득-소득세			총소득-소비세			총소득-소득·소비세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취 업 근 로 자 가 구	0.15	0.26503	1.92	-1.40	0.27492	0.60	2.28	0.27099	2.57	0.82
	0.20	0.26377	1.43	-1.86	0.27449	0.44	2.12	0.26925	1.91	0.17
	0.25	0.26251	0.95	-2.33	0.27407	0.29	1.97	0.26753	1.26	-0.47
	0.30	0.26124	0.46	-2.81	0.27367	0.14	1.82	0.26582	0.61	-1.10
	0.3474	0.26004	-	-3.25	0.27329	-	1.68	0.26421	-	-1.70
	0.40	0.25870	-0.52	-3.75	0.27287	-0.15	1.52	0.26244	-0.67	-2.36
	0.45	0.25743	-1.00	-4.22	0.27249	-0.29	1.38	0.26077	-1.30	-2.98
	0.50	0.25616	-1.49	-4.70	0.27212	-0.43	1.24	0.25911	-1.93	-3.60
	0.55	0.25448	-2.14	-5.32	0.27175	-0.56	1.10	0.25747	-2.55	-4.21
	0.60	0.25360	-2.48	-5.65	0.27139	-0.70	0.97	0.25584	-3.17	-4.81
	0.65	0.25232	-2.97	-6.12	0.27104	-0.82	0.84	0.25422	-3.78	-5.42
	0.70	0.25103	-3.46	-6.60	0.27070	-0.95	0.71	0.25262	-4.39	-6.01
	0.75	0.24975	-3.96	-7.08	0.27036	-1.07	0.59	0.25104	-4.98	-6.40
	0.80	0.24847	-4.45	-7.56	0.27003	-1.19	0.47	0.24947	-5.58	-7.18
0.85	0.24719	-4.94	-8.03	0.26971	-1.31	0.35	0.24791	-6.17	-7.76	
0.90	0.24590	-5.44	-8.51	0.26939	-1.43	0.23	0.24637	-6.75	-8.34	
자 영 업 자 가 구	0.15	0.25970	1.90	-1.34	0.26435	0.15	0.43	0.26058	2.14	-1.01
	0.20	0.25850	1.43	-1.80	0.26424	0.11	0.38	0.25919	1.60	-1.53
	0.25	0.25728	0.95	-2.26	0.26414	0.07	0.35	0.25781	1.02	-2.06
	0.30	0.25604	0.46	-2.73	0.26404	0.03	0.31	0.25643	0.51	-2.58
	0.3474	0.25486	-	-3.18	0.26396	-	0.28	0.25512	-	-3.08
	0.40	0.25353	-0.52	-3.68	0.26387	-0.03	0.24	0.25366	-0.57	-3.64
	0.45	0.25225	-1.02	-4.17	0.26379	-0.06	0.21	0.25228	-1.11	-4.16
	0.50	0.25095	-1.53	-4.67	0.26372	-0.09	0.19	0.25090	-1.65	-4.68
	0.55	0.24964	-2.05	-5.16	0.26365	-0.12	0.16	0.24951	-2.20	-5.21
	0.60	0.24831	-2.57	-5.67	0.26358	-0.14	0.13	0.24813	-2.74	-5.74
	0.65	0.24697	-3.10	-6.18	0.26352	-0.17	0.11	0.24674	-3.28	-6.26
	0.70	0.24561	-3.63	-6.69	0.26347	-0.19	0.09	0.24536	-3.83	-6.79
	0.75	0.24423	-4.17	-7.22	0.26342	-0.20	0.07	0.24398	-4.37	-7.31
	0.80	0.24284	-4.72	-7.75	0.26337	-0.22	0.05	0.24260	-4.91	-7.84
0.85	0.24142	-5.27	-8.29	0.26333	-0.24	0.04	0.24121	-5.45	-8.37	
0.90	0.23999	-5.83	-8.83	0.26329	-0.25	0.02	0.23983	-5.99	-8.89	

주: 1. 소득세 비중은 2002년 조정표본 및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소비세 부담 총액과 동일한 세부담(세수)을 진디는 전제하에 소득세의 세수 비중을 나타냄.

2. 증감률 A는 소득세 비중이 34.74%인 경우의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증감률임. 증감률 B는 2002년 조정표본의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전체·근로자·취업근로자·자영업자가구 각각 0.27988, 0.28718, 0.26878, 0.26323) 대비 지니계수의 증감률임.

3. 빗금친 부분은 2002년 조정표본 및 세법적용시의 추정치임(소득세 비중=34.74%).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본장에서는 주요 항목별로 가상적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였을 경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제IV장에서 보았듯이 소비세는 세부담이 대체로 비례적이기 때문에 소비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장의 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편의상 분석자료는 2003년 기준 추정조정표본을 사용하였다²⁵⁾.

1. 시나리오의 종류

본장의 분석대상은 근로소득공제의 조정, 최고세율의 하향 조정, 종합소득세율 적용구간의 확대, 특별공제 중 의료비공제의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및 상기 정책의 정책조합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 가운데 최고세율 및 종합소득세율 적용구간의 확대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되는 항목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표 VI-1>에 정리된 바와 같으며 검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25) 2003년 귀속분 추정조정표본을 사용하는 것은 소득세제의 개편이 2002년에 이루어질 경우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최소한 2003년도부터이기 때문이다. 표본조정방법은 제IV장 및 제V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 근로소득공제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성항목 중 가장 빈번하게 개편된 것을 들자면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자영업자와의 소득세 과세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한 세경감의 일환으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와 별개로 금융·IT산업 등의 부문에서 고액연봉자가 급증하고 있고, 법인세 등에서 기업의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를 축소하면서 접대비를 임금에 얹어주는 기형적인 임금지급체계가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급두뇌의 유치 및 해외유출 방지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편법적·기형적인 임금지급체계가 확산됨에 따른 고액임금자들에게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최근, 특히 1998년부터는 거의 매년 근로소득공제 체계가 확대되었다. 주된 개편의 목표대상(target)은 중상위 소득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구간이 넓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기업체 임원들은 실제의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인세 비용인정 조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될 접대비를 임금에 얹은 형태로 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실질세후소득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기형적인 경우가 계속되는 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노사정간 주요 쟁점이 토요일무제이고 이와 관련하여 휴가 및 보수에 대한 문제도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와의 소득과세의 형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공제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23

확대 및 이를 통한 면세점 상향조정과 세부담 경감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의 조정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말의 세법개정을 통해 2002년 귀속분 소득부터 1/10씩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2년 1월과 3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제프리 존스 회장이 소득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면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다. 국내의 높은 소득세율은 국내 세원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세수감소는 물론이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한국 유치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골자였는데 재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이에 동조하면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및 물류기지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쟁상대국으로 홍콩과 싱가포르가 거론되는데 이들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지만 자본과 인력의 국제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고급인력의 국내유치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최고세율을 최소한 우리의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낮추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잠재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일부의 최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소득세 과세의

누진성이 하락하는 만큼 과연 얼마만큼의 누진도가 하락하며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도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 소득세율 구간

한국조세연구원(2001)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세부담의 누진도가 소득증가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웬만한 고액소득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고급인력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른 부류에 비해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외로의 유출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소득세율구간은 1996년 이래 한번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급격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도 연계하여 소득세율 구간에 대한 조정 문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라.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로서 의료비공제는 해당 공제항목 중 하나이다. 의료비공제는 소득금액의 3% 초과분만을 공제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특별공제 항목 중 유일하게 공제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 1회 이상 병의원 또는 약국으로부터 진료·치료를 받기 때문에 공제하한을 없앨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납세자가 공제대상이 되므로 납세

협력 및 징세비용이 크게 증대될 것을 우려하여 공제의 하한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제의 하한을 설정하면 그만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또는 기타의 기능·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공제의 상한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세수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명재(1997B)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비공제의 상한을 철폐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적자본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제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응하여 의료비지출을 인적자본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간주하여 세제상 비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도입한다면 공제의 상한을 두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 항목으로서 현실에 맞게 공제의 상하한을 조정해주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마.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자영업자보다 낮추어주는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1990년에 재도입된 이래 2001년까지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공제한도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원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중복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절히 조정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역시 근로소득공제와

<표 VI-1> 소득세법 개정효과 추정을 위한 시나리오의 종류

시나리오	내용	
O	2002년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	A1	(1998년 제도) 근로소득금액 기준 0~500만원: 전액공제 500만원~ : 30% 공제 공제한도: 900만원
	A2	(1999~2000년 제도) 0~500만원: 전액공제 500만원~1,500만원: 40% 공제 1,500만원~ : 10% 공제 공제한도: 1,200만원
	A3	(2001년 제도) 0~500만원: 전액공제 500만원~1,500만원: 40% 공제 1,500만원~4,500만원: 10% 공제 4,500만원~ : 5% 공제 공제한도 폐지
	A4	O + 각 구간한도를 200만원씩 상향조정
	A5	O + 각 구간한도를 500만원씩 상향조정
최고세율	B1	최고세율 인하: 36% → 32%
	B2	최고세율 인하(폐지): 36% → 27%
소득세율 구간	C1	9% 구간: 0~1,000만원 → 0~1,500만원 18% 구간: 1,000만~4,000만원 → 1,500만~5,000만원 27% 구간: 4,000만~8,000만원 → 5,000만~1억원 36% 구간: 8,000만원~ → 1억원~
	C2	9% 구간: 0~1,000만원 → 0~2,000만원 18% 구간: 1,000만~4,000만원 → 2,000만~6,000만원 27% 구간: 4,000만~8,000만원 → 6,000만~1억2,000만원 36% 구간: 8,000만원~ → 1억 2,000만원~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D1	의료비 공제상한: 300만 → 500만원
	D2	의료비 공제상한: 300만 → 1,000만원
	D3	의료비 공제상한 폐지
	D4	의료비 공제허용 최저수준: 소득금액의 3% → 2%
	D5	의료비 공제허용 최저수준: 소득금액의 3% → 1%
	D6	의료비 공제허용 최저수준 폐지: 소득금액의 3% → 0%
	D7	의료비 공제상한 및 최저수준 폐지
근로소득세액공제	E1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60만원 → 80만원
	E2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60만원 → 100만원
	E3	세액공제율 조정: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45%로 단일화
	E4	E1 + E3
	E5	E2 + E3
정책조합	F1	A4 + C1 + D3 + E1
	F2	A4 + C1 + D3 + E2
	F3	A4 + C2 + D3 + E1
	F4	A4 + C2 + D3 + E2
	F5	A4 + C2 + D3 + E3
	F6	A4 + C2 + D3 + E4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27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강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2002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다소 축소되어 일면 세제의 중복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지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2. 기대효과

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

1) 근로소득공제의 조정

먼저 2002년 소득세법에 대비하여 종전 수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경우(A1~A3)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공제 축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세 과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 한계세율도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세수의 증가율은 근로소득공제를 얼마나 많이 축소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A3의 경우 13.4%, A2의 경우 11.4%, A1의 경우 29.0%씩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4와 A5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별 공제구간의 범위를 현행(2002년 세법)보다 200만원 또는 500만원씩 정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세 부담(또는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을 각각 16.1%와 36.3%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자의 면세점을 200만원 또는 500만원씩 높이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서 세부담의 감소효과가 매우 크다²⁶⁾. 이러한 효과는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에

26)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세 과표가 2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표가 과표감소분이 된다.

이르는 공제한도를 종전의 500만원에서 700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 최고세율의 하향조정

종합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2002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36%)을 32% 또는 27%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세수가 별로 많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최고한계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른 최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개별적으로는 극히 일부지만 이들의 소득세 부담은 매우 크게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작게 추정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세 납세자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비율이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아 최고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서베이 자료의 특성상 고소득층이 자신의 소득노출을 꺼림으로써 실제보다 최고소득층에서 표본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추출됨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실제보다 과소추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소득세율 구간의 조정

소득공제나 소득세율 체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세율 적용소득 구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세 등과 같은 종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담은 구간의 확대 정도에 따라 13.0~14.6% 또는 20.6~23.4% 정도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방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29

안은 지나치게 급격한 소득세의 누진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의료비 특별공제의 조정

의료비 특별공제의 한도를 아래 위로 조정하여 확대해본 결과 세수는 크게 손실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의료비 공제의 상하한을 모두 폐지하더라도 근로소득세의 세수는 최대한 4.1%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침으로써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해주는 것에 비해 세부담 감소효과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명재(1997B) 및 성명재·전영준(1998)에서 논의하였듯이 물적자본 투입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통한 비용처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의료비 지출의 의미를 찾는다면, 의료비 공제는 성격상 인적자본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비로 간주하여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그러한 취지에서 의료비 특별공제의 한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준다고 할 때 근로소득세의 세수감소는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인적자본의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비용공제를 허용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확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성명재·전영준(1998)의 연구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곧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율 체계의 다양화 또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대체가 가능한 만큼 기준이 되는 소득에 미달하는 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반면에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

<표 VI-2>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의 변화 효과

(단위: %)

시나리오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O	-	-	-
A1	13.7	29.0	-
A2	5.4	11.4	-
A3	6.3	13.4	-
A4	-7.4	-16.1	-
A5	-17.2	-36.3	-
B1	0.0	0.0	-0.1
B2	-0.1	-0.1	-0.1
C1	-13.7	-14.6	-13.0
C2	-22.0	-23.4	-20.6
D1	-0.1	-0.1	-
D2	-0.1	-0.1	-
D3	-0.1	-0.1	-
D4	-0.3	-0.6	-
D5	-0.8	-1.7	-
D6	-1.7	-3.6	-
D7	-1.9	-4.1	-
E1	-4.8	-10.3	-
E2	-6.2	-13.1	-
E3	-3.6	-7.6	-
E4	-6.2	-13.3	-
E5	-8.4	-17.7	-
F1	-23.6	-35.5	-13.0
F2	-24.5	-37.2	-13.0
F3	-30.7	-41.9	-20.6
F4	-31.3	-43.2	-20.6
F5	-28.2	-36.6	-20.6
F6	-32.2	-45.2	-20.6

주: 세부담 변화율은 2002년 세법 및 2003년 추정표본에 의한 소득세 부담 대비 세부담의 증감률임.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31

므로 세부담은 감소하되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의 중·고소득층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전체적인 소득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7.6~17.7% 정도 사이로 추정된다.

6) 정책조합

상기의 개별 정책수단별 세수효과 가운데 향후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조합해본 결과,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확대 및 소득세율 구간의 확대 방안이 포함된 경우 상당한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와 세율구간의 확대가 별로 중복되지 않고 정책조합안에 따라 작게는 2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의 세수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의료비특별공제나 최고세율의 하향조정 등의 경우에는 정책조합에 포함시키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정책 효과 추정결과에서 보았듯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세부담의 누진도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²⁷⁾

1) 근로소득공제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은 소득구간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조정해주면 전반적으로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세 면세자에게는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만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면세자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주더라도 실효소득세율의 변

27) 본 항은 <표 VI-4>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표 VI-3> 소득세 개편 시나리오별 근로·종합세부담 분포 추정결과

(단위: 천원, %)

세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계
O	35	150	294	392	561	831	1109	1697	2362	4135	1157
A1	41	170	322	449	661	979	1299	1947	2710	4577	1316
A2	36	158	307	418	605	895	1186	1790	2488	4304	1219
A3	36	158	307	418	605	895	1186	1795	2532	4364	1230
A4	33	131	264	347	493	738	995	1562	2183	3938	1069
A5	33	120	233	295	422	634	853	1380	1937	3667	958
B1	35	150	294	392	561	831	1109	1697	2362	4133	1157
B2	35	150	294	392	561	831	1109	1697	2362	4130	1156
C1	35	150	294	390	521	702	884	1370	1993	3639	998
전 C2	35	150	294	390	521	696	843	1193	1683	3225	903
D1	35	150	294	391	560	830	1108	1697	2360	4133	1156
D2	35	150	294	391	560	830	1108	1697	2360	4132	1156
체 D3	35	150	294	391	560	830	1108	1697	2360	4132	1156
D4	35	149	293	391	558	827	1105	1691	2356	4127	1153
D5	35	148	291	388	553	820	1098	1681	2344	4115	1148
가 D6	35	147	289	385	546	810	1085	1662	2322	4088	1137
D7	35	147	289	384	545	809	1083	1661	2316	4077	1135
E1	35	150	294	392	552	801	1049	1587	2195	3949	1101
구 E2	35	150	294	392	552	801	1044	1559	2142	3878	1085
E3	35	150	292	384	536	787	1053	1623	2261	4029	1115
E4	35	150	292	384	532	767	1015	1563	2173	3932	1085
E5	35	150	292	384	531	762	994	1513	2095	3845	1060
F1	33	131	264	345	468	630	772	1179	1704	3307	884
F2	33	131	264	345	468	630	772	1173	1671	3250	874
F3	33	131	264	345	468	630	751	1040	1436	2923	802
F4	33	131	264	345	468	630	751	1039	1413	2876	795
F5	33	131	263	342	462	627	762	1090	1538	3063	831
F6	33	131	263	342	458	609	720	997	1395	2894	784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33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세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계	
근 로 자 가 구	O	3	46	121	222	355	572	803	1377	2080	3438	837
	A1	10	74	165	308	509	812	1100	1801	2622	4210	1080
	A2	5	58	142	261	423	675	923	1534	2277	3734	932
	A3	5	58	142	261	423	675	923	1542	2345	3838	949
	A4	1	19	74	154	251	422	625	1148	1801	3094	702
	A5	0	4	26	77	143	255	402	840	1418	2621	533
	B1	3	46	121	222	355	572	803	1377	2080	3436	837
	B2	3	46	121	222	355	572	803	1377	2080	3433	836
	C1	3	46	121	220	318	474	651	1132	1756	2985	715
	C2	3	46	121	220	318	464	600	971	1512	2638	641
	D1	3	46	121	221	354	571	801	1377	2076	3434	836
	D2	3	46	121	221	354	571	801	1377	2076	3433	836
	D3	3	46	121	221	354	571	801	1377	2076	3433	836
	D4	3	45	120	220	351	565	797	1367	2070	3425	832
	D5	3	43	117	217	343	555	785	1349	2052	3403	823
	D6	2	42	114	212	333	538	764	1317	2017	3356	807
	D7	2	42	113	210	331	537	761	1316	2008	3336	803
	E1	3	46	121	222	341	525	708	1190	1821	3114	751
	E2	3	46	121	222	341	525	701	1142	1738	2989	727
	E3	3	46	118	210	317	502	715	1252	1923	3252	773
	E4	3	46	118	210	310	470	655	1150	1785	3084	726
	E5	3	46	118	210	310	461	622	1065	1664	2931	689
	F1	1	19	74	154	236	358	475	808	1307	2406	540
	F2	1	19	74	154	236	358	475	798	1255	2306	526
	F3	1	19	74	154	236	357	456	712	1128	2110	486
	F4	1	19	74	154	236	357	456	710	1092	2027	475
	F5	1	19	73	149	227	352	473	795	1287	2355	531
	F6	1	19	73	149	220	324	407	638	1064	2060	459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세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계
O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A1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A2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A3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A4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A5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B1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4	1762
B2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1	1762
자 C1	182	396	599	729	900	1074	1297	1714	2419	4512	1533
C2	182	396	599	729	900	1074	1273	1514	1989	4010	1400
영 D1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D2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업 D3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D4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자 D5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D6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D7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가 E1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E2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구 E3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E4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E5	182	396	599	732	943	1252	1652	2159	2869	5067	1763
F1	182	396	599	729	900	1074	1297	1714	2419	4512	1533
F2	182	396	599	729	900	1074	1297	1714	2419	4512	1533
F3	182	396	599	729	900	1074	1273	1514	1989	4010	1400
F4	182	396	599	729	900	1074	1273	1514	1989	4010	1400
F5	182	396	599	729	900	1074	1273	1514	1989	4010	1400
F6	182	396	599	729	900	1074	1273	1514	1989	4010	1400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35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계	
전 체 가 구	O	0.27	0.80	1.31	1.50	1.88	2.46	2.89	3.83	4.48	5.27	3.24
	A1	0.32	0.91	1.43	1.73	2.21	2.90	3.39	4.40	5.14	5.84	3.68
	A2	0.29	0.85	1.37	1.60	2.03	2.65	3.09	4.04	4.72	5.49	3.41
	A3	0.29	0.85	1.37	1.60	2.03	2.65	3.09	4.05	4.80	5.56	3.44
	A4	0.26	0.70	1.17	1.33	1.65	2.19	2.59	3.53	4.14	5.02	2.99
	A5	0.26	0.64	1.04	1.13	1.41	1.88	2.22	3.12	3.67	4.68	2.68
	B1	0.27	0.80	1.31	1.50	1.88	2.46	2.89	3.83	4.48	5.27	3.24
	B2	0.27	0.80	1.31	1.50	1.88	2.46	2.89	3.83	4.48	5.27	3.24
	C1	0.27	0.80	1.31	1.50	1.75	2.08	2.30	3.09	3.78	4.64	2.79
	C2	0.27	0.80	1.31	1.50	1.75	2.06	2.20	2.69	3.19	4.11	2.53
	D1	0.27	0.80	1.31	1.50	1.88	2.46	2.89	3.83	4.48	5.27	3.24
	D2	0.27	0.80	1.31	1.50	1.88	2.46	2.89	3.83	4.48	5.27	3.24
	D3	0.27	0.80	1.31	1.50	1.88	2.46	2.89	3.83	4.48	5.27	3.24
	D4	0.27	0.80	1.30	1.50	1.87	2.45	2.88	3.82	4.47	5.26	3.23
	D5	0.27	0.79	1.30	1.49	1.85	2.43	2.86	3.79	4.45	5.25	3.21
	D6	0.27	0.79	1.29	1.48	1.83	2.40	2.83	3.75	4.41	5.21	3.18
	D7	0.27	0.79	1.29	1.47	1.82	2.40	2.82	3.75	4.39	5.20	3.18
	E1	0.27	0.80	1.31	1.50	1.85	2.37	2.73	3.58	4.17	5.04	3.08
	E2	0.27	0.80	1.31	1.50	1.85	2.37	2.72	3.52	4.07	4.94	3.04
	E3	0.27	0.80	1.30	1.47	1.80	2.33	2.74	3.66	4.29	5.14	3.12
	E4	0.27	0.80	1.30	1.47	1.78	2.27	2.65	3.53	4.12	5.01	3.04
	E5	0.27	0.80	1.30	1.47	1.78	2.26	2.59	3.41	3.97	4.90	2.97
	F1	0.26	0.70	1.17	1.33	1.57	1.87	2.01	2.66	3.23	4.22	2.47
	F2	0.26	0.70	1.17	1.33	1.57	1.87	2.01	2.65	3.17	4.14	2.45
	F3	0.26	0.70	1.17	1.33	1.57	1.86	1.96	2.35	2.72	3.73	2.25
	F4	0.26	0.70	1.17	1.33	1.57	1.86	1.96	2.35	2.68	3.67	2.23
	F5	0.26	0.70	1.17	1.31	1.55	1.86	1.99	2.46	2.92	3.91	2.33
F6	0.26	0.70	1.17	1.31	1.53	1.80	1.88	2.25	2.65	3.69	2.20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계	
근 로 자 가 구	O	0.02	0.24	0.54	0.85	1.19	1.69	2.09	3.12	3.95	4.33	2.43
	A1	0.08	0.40	0.73	1.18	1.70	2.40	2.86	4.08	4.98	5.30	3.13
	A2	0.04	0.31	0.63	1.00	1.42	2.00	2.40	3.47	4.32	4.70	2.70
	A3	0.04	0.31	0.63	1.00	1.42	2.00	2.40	3.49	4.45	4.83	2.75
	A4	0.00	0.10	0.33	0.59	0.84	1.25	1.62	2.60	3.42	3.90	2.04
	A5	0.00	0.02	0.12	0.29	0.48	0.75	1.05	1.90	2.69	3.30	1.55
	B1	0.02	0.24	0.54	0.85	1.19	1.69	2.09	3.12	3.95	4.33	2.43
	B2	0.02	0.24	0.54	0.85	1.19	1.69	2.09	3.12	3.95	4.32	2.43
	C1	0.02	0.24	0.54	0.85	1.06	1.40	1.69	2.56	3.33	3.76	2.08
	C2	0.02	0.24	0.54	0.85	1.06	1.37	1.56	2.20	2.87	3.32	1.86
	D1	0.02	0.24	0.54	0.85	1.19	1.69	2.08	3.12	3.94	4.32	2.43
	D2	0.02	0.24	0.54	0.85	1.19	1.69	2.08	3.12	3.94	4.32	2.42
	D3	0.02	0.24	0.54	0.85	1.19	1.69	2.08	3.12	3.94	4.32	2.42
	D4	0.02	0.24	0.53	0.84	1.17	1.67	2.07	3.09	3.93	4.31	2.41
	D5	0.02	0.23	0.52	0.83	1.15	1.64	2.04	3.05	3.89	4.28	2.39
	D6	0.02	0.22	0.51	0.81	1.11	1.59	1.99	2.98	3.83	4.23	2.34
	D7	0.02	0.22	0.51	0.81	1.11	1.59	1.98	2.98	3.81	4.20	2.33
	E1	0.02	0.24	0.54	0.85	1.14	1.55	1.84	2.69	3.46	3.92	2.18
	E2	0.02	0.24	0.54	0.85	1.14	1.55	1.82	2.59	3.30	3.76	2.11
	E3	0.02	0.24	0.53	0.80	1.06	1.48	1.86	2.83	3.65	4.10	2.24
	E4	0.02	0.24	0.53	0.80	1.04	1.39	1.71	2.60	3.39	3.88	2.11
	E5	0.02	0.24	0.53	0.80	1.04	1.36	1.62	2.41	3.16	3.69	2.00
	F1	0.00	0.10	0.33	0.59	0.79	1.06	1.24	1.83	2.48	3.03	1.57
	F2	0.00	0.10	0.33	0.59	0.79	1.06	1.23	1.81	2.38	2.90	1.53
	F3	0.00	0.10	0.33	0.59	0.79	1.05	1.19	1.61	2.14	2.66	1.41
	F4	0.00	0.10	0.33	0.59	0.79	1.05	1.19	1.61	2.07	2.55	1.38
	F5	0.00	0.10	0.33	0.57	0.76	1.04	1.23	1.80	2.44	2.96	1.54
	F6	0.00	0.10	0.33	0.57	0.74	0.96	1.06	1.45	2.02	2.59	1.33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37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계	
자 영 업 자 가 구	O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A1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A2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A3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A4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A5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B1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B2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C1	1.36	2.14	2.65	2.80	3.02	3.19	3.39	3.85	4.59	5.85	4.02
	C2	1.36	2.14	2.65	2.80	3.02	3.19	3.33	3.40	3.77	5.20	3.67
	D1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D2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D3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D4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D5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D6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D7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E1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E2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E3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E4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E5	1.36	2.14	2.65	2.82	3.16	3.72	4.32	4.85	5.44	6.57	4.62
	F1	1.36	2.14	2.65	2.80	3.02	3.19	3.39	3.85	4.59	5.85	4.02
	F2	1.36	2.14	2.65	2.80	3.02	3.19	3.39	3.85	4.59	5.85	4.02
	F3	1.36	2.14	2.65	2.80	3.02	3.19	3.33	3.40	3.77	5.20	3.67
	F4	1.36	2.14	2.65	2.80	3.02	3.19	3.33	3.40	3.77	5.20	3.67
F5	1.36	2.14	2.65	2.80	3.02	3.19	3.33	3.40	3.77	5.20	3.67	
F6	1.36	2.14	2.65	2.80	3.02	3.19	3.33	3.40	3.77	5.20	3.67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 체 가 구	O	0.30	1.29	2.54	3.39	4.84	7.17	9.59	14.67	20.42	35.78	100
	A1	0.31	1.29	2.44	3.42	5.02	7.44	9.87	14.80	20.60	34.82	100
	A2	0.30	1.29	2.52	3.43	4.96	7.33	9.73	14.68	20.41	35.34	100
	A3	0.30	1.28	2.50	3.40	4.92	7.27	9.65	14.59	20.59	35.51	100
	A4	0.31	1.22	2.47	3.25	4.61	6.90	9.31	14.61	20.43	36.89	100
	A5	0.34	1.25	2.43	3.09	4.41	6.62	8.91	14.41	20.22	38.33	100
	B1	0.30	1.29	2.54	3.39	4.84	7.18	9.59	14.67	20.43	35.77	100
	B2	0.30	1.29	2.54	3.39	4.85	7.18	9.59	14.67	20.43	35.75	100
	C1	0.35	1.49	2.94	3.91	5.22	7.03	8.86	13.73	19.97	36.49	100
	C2	0.39	1.65	3.25	4.32	5.76	7.70	9.33	13.21	18.63	35.74	100
	D1	0.30	1.29	2.54	3.39	4.84	7.18	9.59	14.68	20.42	35.78	100
	D2	0.30	1.29	2.54	3.39	4.84	7.18	9.59	14.68	20.42	35.78	100
	D3	0.30	1.29	2.54	3.39	4.84	7.18	9.59	14.68	20.42	35.78	100
	D4	0.30	1.29	2.54	3.39	4.83	7.16	9.58	14.66	20.43	35.82	100
	D5	0.30	1.29	2.54	3.39	4.81	7.14	9.57	14.64	20.43	35.89	100
	D6	0.30	1.29	2.54	3.39	4.80	7.12	9.54	14.61	20.42	35.99	100
	D7	0.31	1.29	2.54	3.39	4.80	7.13	9.54	14.64	20.41	35.96	100
	E1	0.32	1.35	2.67	3.57	5.01	7.27	9.53	14.42	19.95	35.92	100
	E2	0.32	1.37	2.71	3.62	5.08	7.38	9.63	14.36	19.75	35.78	100
	E3	0.31	1.34	2.62	3.45	4.80	7.05	9.44	14.55	20.28	36.16	100
E4	0.32	1.37	2.69	3.54	4.90	7.07	9.36	14.41	20.04	36.30	100	
E5	0.33	1.41	2.75	3.62	5.01	7.18	9.38	14.27	19.76	36.30	100	
F1	0.37	1.48	2.98	3.92	5.29	7.13	8.73	13.34	19.29	37.47	100	
F2	0.38	1.49	3.02	3.96	5.35	7.21	8.83	13.42	19.13	37.22	100	
F3	0.41	1.63	3.29	4.31	5.83	7.84	9.36	12.96	17.90	36.47	100	
F4	0.42	1.64	3.32	4.35	5.88	7.91	9.45	13.06	17.77	36.20	100	
F5	0.40	1.57	3.17	4.12	5.56	7.53	9.16	13.10	18.50	36.88	100	
F6	0.42	1.66	3.36	4.37	5.83	7.76	9.17	12.71	17.78	36.93	100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39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근로자가구	O	0.04	0.58	1.41	2.71	4.22	6.46	9.37	14.85	24.41	35.95	100
	A1	0.11	0.74	1.49	2.91	4.68	7.11	9.94	15.05	23.84	34.12	100
	A2	0.06	0.66	1.49	2.86	4.51	6.85	9.67	14.85	23.98	35.06	100
	A3	0.06	0.65	1.46	2.81	4.43	6.73	9.50	14.67	24.27	35.41	100
	A4	0.01	0.29	1.03	2.24	3.55	5.69	8.69	14.75	25.19	38.56	100
	A5	0.00	0.08	0.47	1.47	2.66	4.52	7.37	14.23	26.14	43.06	100
	B1	0.04	0.58	1.41	2.71	4.22	6.46	9.37	14.85	24.41	35.94	100
	B2	0.04	0.58	1.41	2.71	4.22	6.47	9.37	14.85	24.42	35.92	100
	C1	0.05	0.68	1.65	3.15	4.42	6.26	8.89	14.28	24.10	36.52	100
	C2	0.06	0.76	1.84	3.51	4.92	6.86	9.14	13.67	23.18	36.04	100
	D1	0.04	0.59	1.41	2.70	4.21	6.47	9.36	14.86	24.40	35.96	100
	D2	0.04	0.59	1.41	2.70	4.21	6.47	9.36	14.87	24.40	35.95	100
	D3	0.04	0.59	1.41	2.70	4.21	6.47	9.36	14.87	24.40	35.95	100
	D4	0.04	0.58	1.40	2.70	4.19	6.43	9.35	14.83	24.44	36.04	100
	D5	0.04	0.56	1.39	2.69	4.14	6.38	9.32	14.80	24.49	36.20	100
	D6	0.04	0.55	1.38	2.68	4.10	6.31	9.25	14.73	24.55	36.41	100
	D7	0.04	0.55	1.38	2.67	4.09	6.33	9.26	14.78	24.55	36.35	100
	E1	0.05	0.65	1.57	3.01	4.52	6.61	9.20	14.30	23.80	36.29	100
	E2	0.05	0.67	1.62	3.11	4.67	6.82	9.42	14.18	23.47	35.98	100
	E3	0.05	0.63	1.49	2.77	4.08	6.14	9.03	14.61	24.42	36.80	100
	E4	0.05	0.67	1.58	2.94	4.25	6.12	8.81	14.29	24.13	37.16	100
	E5	0.05	0.71	1.67	3.10	4.47	6.33	8.82	13.94	23.70	37.21	100
	F1	0.01	0.38	1.34	2.90	4.34	6.26	8.58	13.49	23.74	38.96	100
	F2	0.01	0.39	1.37	2.99	4.46	6.44	8.82	13.69	23.44	38.39	100
	F3	0.01	0.42	1.48	3.23	4.82	6.94	9.16	13.21	22.77	37.96	100
	F4	0.01	0.43	1.52	3.30	4.93	7.10	9.37	13.47	22.55	37.32	100
	F5	0.01	0.39	1.35	2.87	4.25	6.27	8.70	13.52	23.80	38.83	100
	F6	0.01	0.45	1.56	3.31	4.76	6.67	8.65	12.55	22.76	39.27	100

<표 VI-3>의 계속

(단위: 천원, %)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O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A1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A2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A3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A4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A5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B1	0.54	1.92	3.55	4.01	5.41	7.82	9.79	14.51	16.85	35.61	100
B2	0.54	1.92	3.55	4.01	5.41	7.82	9.79	14.51	16.85	35.60	100
C1	0.62	2.21	4.08	4.59	5.93	7.70	8.84	13.24	16.32	36.47	100
C2	0.67	2.42	4.47	5.03	6.49	8.44	9.50	12.81	14.70	35.48	100
D1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D2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D3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D4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D5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D6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D7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E1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E2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E3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E4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E5	0.54	1.92	3.55	4.01	5.40	7.81	9.79	14.51	16.84	35.62	100
F1	0.62	2.21	4.08	4.59	5.93	7.70	8.84	13.24	16.32	36.47	100
F2	0.62	2.21	4.08	4.59	5.93	7.70	8.84	13.24	16.32	36.47	100
F3	0.67	2.42	4.47	5.03	6.49	8.44	9.50	12.81	14.70	35.48	100
F4	0.67	2.42	4.47	5.03	6.49	8.44	9.50	12.81	14.70	35.48	100
F5	0.67	2.42	4.47	5.03	6.49	8.44	9.50	12.81	14.70	35.48	100
F6	0.67	2.42	4.47	5.03	6.49	8.44	9.50	12.81	14.70	35.48	100

자
영
업
자
가
구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41

화가 매우 작다. 왜냐하면 면세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면세자가 많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만큼 세부담의 변화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자에서 면세자로 전환되는 납세자가 많이 포함된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줄수록 면세전환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실효세부담률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의 면세자 전환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득세 부담 비중도 하락하여 세부담의 누진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확대가 반드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높은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동일한 규모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세 감면혜택은 그 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의 하락률 측면에서는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과세자에서 면세자로 전환되는 납세자 비중이 높은 소득계층이 가장 높지만 실효소득세율의 절대 하락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소득층에서는 실효세부담률의 변화가 별로 없으며, 중소득층에서는 과세자에서 면세자로 전환되는 납세자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실효세부담률의 절대하락 수준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소득계층별 실효세부담률의 변화추이만으로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표 VI-4>의 도움을 얻어 소득세후 지니계수와 소득세 집중도, KPS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근로소득공제의 공제구간별 한도를 각각 확대해준 A4와 A5의 경우 2002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 O에 비해 지니계수가 다소 상승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집중도는 O에 비해 다소 상승하고 KPS는 O에

비해 다소 하락함으로써 소득세 자체의 집중도와 누진도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고소득세율의 인하

최고세율의 인하를 나타내는 B1과 B2의 경우에는 최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효과의 절대수준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누진도 및 조세집중도, 소득세후 지니계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는 최고소득층의 경우 표본추출률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표본추출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최고소득세율의 인하가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소득세율 구간의 확대

소득세율 구간의 범위를 종전보다 다소 확대하는 경우에는 O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더 많이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주어 세부담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KPS 지수도 다소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소득세후 지니계수를 소폭 상승시킴으로써 미소하게나마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세부담의 형평 제고 차원에서만 본다면 소득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조세연구원(2001)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누진구조상 소득세의 한계 세부담률이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평 제고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4) 의료비 특별공제의 조정

의료비 특별공제의 경우 공제한도의 상하한을 완전히 철폐하더라도 세수효과는 근로소득세 세수의 4% 정도로 추정된다. 그만큼 의료비 공제를 전격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작다.

의료비 특별공제를 대폭 확대하더라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소득세후 지니계수, 조세집중도, KPS 지수 모두 기준이 되는 O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의료비 특별공제의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얻기 어렵지만, 의료비 지출을 인적자본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물적자본에 대한 유지·관리와 최소한 동등하게 처리함으로써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전격적으로 공제수준을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 및 공제율 조정이 소득세의 집중도와 KPS 지수에 미친 영향은 방안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체로 집중도와 누진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분배 기능도 미소하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점유비의 변화추이를 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점유비가 다소 상승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받게 되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점유비는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표 VI-4> 세법개정에 따른 지니계수 및 조세집중지수의 변화효과

(단위: %)

시나리오	총소득 - 소득세			총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조세집중도	KPS 지수	조세집중도	KPS 지수
O	0.27094	-	-3.19	0.54395	0.71761	0.54615	0.71547
A1	0.26994	-0.37	-3.55	0.53866	0.72543	0.54045	0.72376
A2	0.27059	-0.13	-3.32	0.54053	0.72221	0.54252	0.72031
A3	0.27042	-0.19	-3.38	0.54289	0.71941	0.54493	0.71745
A4	0.27132	0.14	-3.06	0.55385	0.70495	0.55656	0.70221
A5	0.27197	0.38	-2.83	0.56302	0.69204	0.56639	0.68849
B1	0.27095	0.00	-3.19	0.54386	0.71774	0.54606	0.71561
B2	0.27096	0.01	-3.19	0.54375	0.71791	0.543594	0.71578
C1	0.27242	0.55	-2.67	0.53466	0.72404	0.53687	0.72180
C2	0.27367	1.01	-2.22	0.51380	0.754684	0.51541	0.74527
D1	0.27095	0.00	-3.19	0.54398	0.71757	0.54618	0.71543
D2	0.27095	0.00	-3.19	0.54395	0.71760	0.54615	0.71546
D3	0.27095	0.00	-3.19	0.54395	0.71760	0.54615	0.71546
D4	0.27096	0.01	-3.19	0.54427	0.71718	0.54649	0.71502
D5	0.27099	0.02	-3.18	0.54480	0.71645	0.54705	0.71426
D6	0.27105	0.04	-3.15	0.54532	0.71567	0.54760	0.71343
D7	0.27108	0.05	-3.14	0.54509	0.71597	0.54736	0.71374
E1	0.27154	0.10	-2.98	0.53873	0.72236	0.54087	0.72027
E2	0.27176	0.18	-2.90	0.53561	0.72592	0.53768	0.72392
E3	0.27125	-0.00	-3.08	0.54432	0.71603	0.54661	0.71376
E4	0.27157	0.11	-2.97	0.54188	0.71802	0.54416	0.71575
E5	0.27186	0.22	-2.87	0.53853	0.72138	0.54074	0.71918
F1	0.27324	0.73	-2.37	0.53598	0.72063	0.53853	0.71795
F2	0.27339	0.79	-2.32	0.53287	0.72442	0.53532	0.72187
F3	0.27436	1.14	-1.97	0.51387	0.74541	0.51568	0.74357
F4	0.27448	1.19	-1.93	0.51093	0.74906	0.51263	0.74737
F5	0.27393	1.10	-2.13	0.52340	0.73466	0.52557	0.73242
F6	0.27447	1.18	-1.93	0.51460	0.74327	0.51649	0.74130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45

<표 VI-4>의 계속

(단위: %)

시나리오	총소득 - 소득세			총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지니계수	증감률 A	증감률 B	조세집중도	KPS 지수	조세집중도	KPS 지수
O	0.27871	-	-2.95	0.62040	0.64008	0.62234	0.63858
A1	0.27697	-0.62	-3.56	0.60141	0.66450	0.60228	0.66414
A2	0.27809	-0.22	-3.17	0.60957	0.65366	0.61090	0.65283
A3	0.27782	-0.32	-3.26	0.61333	0.64896	0.61478	0.64797
A4	0.27939	0.24	-2.71	0.65011	0.60314	0.65395	0.59945
A5	0.28048	0.64	-2.33	0.69260	0.54817	0.70055	0.53957
B1	0.27872	0.00	-2.95	0.62031	0.64022	0.62226	0.63871
B2	0.27872	0.00	-2.95	0.62021	0.64038	0.62215	0.63888
C1	0.27999	0.46	-2.50	0.61565	0.64279	0.61768	0.64117
C2	0.28099	0.82	-2.16	0.60122	0.65905	0.60268	0.65815
D1	0.27872	0.00	-2.95	0.62051	0.63994	0.62246	0.63842
D2	0.27872	0.00	-2.95	0.62047	0.64000	0.62242	0.63849
D3	0.27872	0.00	-2.95	0.62047	0.64000	0.62242	0.63849
D4	0.27874	0.01	-2.94	0.62131	0.63893	0.62331	0.63737
D5	0.27879	0.03	-2.92	0.62284	0.63695	0.62492	0.63528
D6	0.27890	0.07	-2.88	0.62476	0.63438	0.62697	0.63256
D7	0.27894	0.08	-2.87	0.62449	0.63479	0.624670	0.63298
E1	0.27969	0.16	-2.61	0.61412	0.64543	0.61599	0.64401
E2	0.28003	0.29	-2.49	0.60883	0.65179	0.61049	0.65063
E3	0.27923	0.00	-2.77	0.62453	0.63319	0.62683	0.63124
E4	0.27974	0.18	-2.59	0.62218	0.63445	0.62451	0.63244
E5	0.28021	0.35	-2.43	0.61722	0.63943	0.61941	0.63756
F1	0.28137	0.77	-2.02	0.63351	0.61926	0.637406	0.61554
F2	0.28161	0.85	-1.94	0.62794	0.62652	0.63156	0.62319
F3	0.28216	1.05	-1.75	0.61750	0.63870	0.62062	0.63600
F4	0.28235	1.12	-1.68	0.61211	0.64587	0.61490	0.64366
F5	0.28147	0.99	-1.99	0.63326	0.61998	0.63720	0.61624
F6	0.28235	1.12	-1.68	0.62298	0.62943	0.62673	0.62585

<표 VI-4>의 계속

(단위: %)

시나리오	지니계수			총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총소득 - 소득세	증감률 A	증감률 B	조세집중도	KPS 지수	조세집중도	KPS 지수	
취 업 근 로 자 가 구	O	0.25904	-	-3.60	0.56674	0.68732	0.56709	0.68762
	A1	0.25716	-0.73	-4.29	0.54538	0.71309	0.54503	0.71407
	A2	0.25840	-0.25	-3.83	0.55445	0.70175	0.55435	0.70250
	A3	0.25806	-0.38	-3.96	0.55856	0.69698	0.55860	0.69756
	A4	0.25965	0.24	-3.37	0.59996	0.64855	0.60185	0.64718
	A5	0.26076	0.66	-2.95	0.64846	0.58995	0.65378	0.58473
	B1	0.25904	0.00	-3.60	0.56664	0.68746	0.56699	0.68776
	B2	0.25905	0.00	-3.59	0.56652	0.68764	0.56686	0.68795
	C1	0.26054	0.58	-3.04	0.56261	0.68888	0.56284	0.68930
	C2	0.26177	1.05	-2.58	0.54685	0.70549	0.54634	0.70676
	D1	0.25905	0.00	-3.59	0.56687	0.68716	0.56723	0.68745
	D2	0.25905	0.00	-3.59	0.56682	0.68723	0.56717	0.68753
	D3	0.25905	0.00	-3.59	0.56682	0.68723	0.56717	0.68753
	D4	0.25906	0.01	-3.59	0.56774	0.68613	0.56813	0.68639
	D5	0.25911	0.03	-3.47	0.56945	0.68406	0.56990	0.68424
	D6	0.25923	0.07	-3.52	0.57167	0.68130	0.57222	0.68137
	D7	0.25928	0.09	-3.51	0.57133	0.68177	0.57187	0.68186
	E1	0.26020	0.21	-3.19	0.56031	0.69228	0.56044	0.69282
	E2	0.26063	0.38	-3.03	0.55438	0.69895	0.55425	0.69980
	E3	0.25960	-0.02	-3.42	0.57200	0.67945	0.57259	0.67945
	E4	0.26021	0.22	-3.19	0.56979	0.68033	0.57033	0.68037
	E5	0.26078	0.44	-2.98	0.56447	0.68528	0.56479	0.68555
	F1	0.26205	0.92	-2.50	0.58265	0.66402	0.58411	0.66314
	F2	0.26236	1.04	-2.39	0.27631	0.67175	0.57744	0.67130
	F3	0.26304	1.31	-2.14	0.56477	0.68434	0.56524	0.68466
	F4	0.26328	1.40	-2.05	0.55859	0.69204	0.55867	0.69287
	F5	0.26217	1.21	-2.43	0.58239	0.66477	0.58386	0.66392
	F6	0.26322	1.37	-2.07	0.57166	0.67382	0.57264	0.67344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47

<표 VI-4>의 계속

(단위: %)

시나리오	지니계수			총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총소득 - 소득세	증감률 A	증감률 B	조세집중도	KPS 지수	조세집중도	KPS 지수	
자영업자	O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A1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A2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A3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A4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A5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B1	0.25454	0.00	-3.30	0.43935	0.81303	0.44279	0.80919
	B2	0.25455	0.00	-3.30	0.43923	0.81320	0.44285	0.80936
	C1	0.25625	0.67	-2.65	0.426401	0.82166	0.43025	0.81745
	C2	0.25793	1.33	-2.01	0.39924	0.84977	0.40275	0.84589
	D1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D2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D3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D4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D5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D6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D7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E1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E2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E3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E4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E5	0.25454	-	-3.30	0.43945	0.81289	0.44307	0.80905	
F1	0.25625	0.67	-2.65	0.42640	0.82166	0.43025	0.81745	
F2	0.25625	0.67	-2.65	0.42640	0.82166	0.43025	0.81745	
F3	0.25793	1.33	-2.01	0.39924	0.84977	0.43075	0.84589	
F4	0.25793	1.33	-2.01	0.39924	0.84977	0.40275	0.84589	
F5	0.25793	1.33	-2.01	0.39924	0.84977	0.40275	0.84589	
F6	0.25793	1.33	-2.01	0.39924	0.84977	0.40275	0.84589	

주: 증감률 A는 2002년 세법 및 2003년 추정표본에 의한 총소득-소득세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증감률이고, 증감률 B는 해당년도·추정자료의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취업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 각각 0.27988, 0.28718, 0.26870, 0.26323) 대비 지니계수의 증감률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포착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소득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종 합

상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조세집중도와 소득재분배 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담의 누진도, 조세의 집중도가 상승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증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부담의 누진도와 집중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부담의 누진도가 증대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분배와 세부담의 형평성을 논함에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집중도만을 고찰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역으로, 비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완화되더라도 누진세부담 구조를 가진 세목의 세수비중이 누진도의 완화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대된다면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VI-4>에서 보듯이 2003년의 가상적인 소득 분포와 2002년 소득세법을 가상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19%(O의 증감률 B)이다. <표 VI-5>에서 보듯이 그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비중이 훨씬 높은 일본의 경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2.6%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VI. 소득세제 개편의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149

낮다고만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개인소득세의 세수가 전체 연방세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4.7%인 것을 감안하면 국세 중 소득세 전체의 비중이 미국의 약 1/3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3.19%라는 것은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표 VI-5>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지니계수 기준)

	기준연도	지니계수		A - B
		총소득 기준(A)	총소득-소득세·기여금(B)	
미국	1999	0.457	0.433	-0.024 (-4.7%)
영국	1999-2000	0.38	0.35	-0.03 (-5.7%)
일본	1996	0.3721	0.3606	-0.0115 (-2.6%)
뉴질랜드	1996	0.495	0.456	-0.039 (-6.4%)
캐나다	1998	0.357	0.315	-0.042 (-9.6%)

주: 1. () 안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율(%)임.
 2. 일본의 총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에 따른 재분배후 소득을 말함. 다른 나라와 달리 시장소득에 사회이전소득을 합산한 다음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것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사실상 조세만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보아야 함.

자료: 성명재·이명현(2001)의 <표 V-2>에서 발췌

원자료: 미국 - US Census Bureau(2000)

영국 - Harris(2000), Lakin(2001)

일본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00)

뉴질랜드 - Statistics New Zealand(1999)

캐나다 - Statistics Canada(1998)

<표 VI-6> 세법개정에 따른 면세자비율 추정결과

(단위: %)

시나리오	가구기준	개인기준 (환산치)
0	22.08	46.26
A1	20.20	45.00
A2	21.48	45.85
A3	21.48	45.85
A4	25.59	48.68
A5	31.17	52.53
B1	22.08	46.26
B2	22.08	46.26
C1	22.10	46.28
C2	22.15	46.31
D1	22.08	46.26
D2	22.09	46.27
D3	22.09	46.27
D4	22.10	46.28
D5	22.35	46.45
D6	22.56	46.59
D7	22.60	46.62
E1	22.09	46.27
E2	22.09	46.27
E3	22.09	46.27
E4	22.09	46.27
E5	22.12	46.29
F1	25.79	48.82
F2	25.79	48.82
F3	25.88	48.88
F4	25.89	48.89
F5	25.79	48.82
F6	25.94	48.92

주: <표 II-1>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수는 1.45인임. 논의의 편의상 개인기준 면세비율 환산치를 추정할 때 가구별 주소득원이 아닌 주소득자는 모두 근로·종합소득세 면세자로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면세가구는 주소득자 및 주소득자 모두 면세자인 경우로 가정하였음. 이러한 가정하에 가구기준 면세비율로부터 개인기준 면세자비율 환산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음.

개인기준 면세자비율 = $(45 + \text{면세가구비}) / 145 \times 100$, 단, 면세가구비는 백분율 표시임.

다. 면세비율

<표 VI-6>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점차 면세비율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면세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이 100%인 구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A4와 A5의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더욱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최고한계세율이나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B 또는 C의 경우에는 면세비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역시 면세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면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소득공제의 한 형태인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도 이론상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면세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면세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총 평

현 시점에서 소득세의 면세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면 면세비율을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소득재분배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임금체계의 기형적 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 등과 같은 여타 목적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당분간 소득공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10씩 하향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세율의 하향조정도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부의 중·장기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최고세율의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급격한 누진구조를 감안할 때 소득세율의 소득구간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단 소득세 부담의 급격한 누진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은 그 타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자영업자와의 소득세 과세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내부에서의 형평 제고와 별개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특별공제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제고 차원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적절한 대우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대 근로소득세 세수의 약 4%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개편에 비해 세수 감소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로 중립적인 만큼 소득재분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소득세제의 개편을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비용 차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I.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해보고 정책적으로 시사할 만한 점을 찾아본다.

1. 요약

가. 소득분배 동향

지니계수로 살펴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구조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하락함으로써 상대적인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도 지니계수가 저점에서 수년간 머물러 소득격차가 안정적으로 축소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지니계수가 상승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니계수의 추세적 반전에 그치지 않고 일시적·극단적으로 초과상승(overshooting)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1999년에 조기에 위기상황이 수습되고 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소득분배 격차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성명재(2001년)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경제로의 진입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증가 및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가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계은행의 Designers and Squire(1996, 1998)의 연구에서 보듯이 Kuznets의 ‘역U자 가설’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소득분배 변화 추세, 즉 선진국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부터 그러한 반전 추세가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도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나. 최근의 세계개편에 대한 평가

최근의 소득세제 개편은 공제수준 및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주된 골자였다. 근로소득공제수준 및 공제율의 확대는 면세자 비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소득세율의 인하는 종합소득세(또는 근로소득세) 부담의 비례적 하락을 의미하였다²⁸⁾.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에 따른 면세비율의 증가는 면세자와 과세자 간의 세부담 격차를 확대시켜 세부담의 집중도(누진도)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과세자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한계세율이 높은 계층, 즉 고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더 크게 해줌으로써 과세자 내부에서의 세부담

28) 물론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율의 비례적 인하가 반드시 소득세 부담의 비례적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세율이 비례적으로 인하된 만큼 비례적으로 감소하지만 산출세액을 산정한 이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장기주식저축세액공제 등과 같이 각종 세액공제는 세율의 인하에 의한 영향을 비례적으로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후의 결정세액, 즉 소득세 부담액은 세율의 비례적 인하율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의 집중도(누진도)를 완화시킨다. 그러므로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가 세부담의 누진도에 미친 효과의 방향(부호)은 상기의 두 가지 요인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그런데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100%인 최하위 소득구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만약 근로소득공제의 확대가 공제한도의 확대·폐지 또는 최상위 소득구간에서의 공제율 상향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고소득층에 세경감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경우에는 후자의 효과가 전자보다 커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소비세의 경우에는 세제개편이 전체적인 세부담 분포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세 전체의 세부담 분포가 전반적으로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최근의 소비세제 개편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수준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2001년 9월을 기점으로 세부담이 역진적인 전화세가 폐지됨으로써 소득분배 상태를 보다 균등한 상태로 변화시킬 만한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전화세의 폐지와 함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만큼의 경감된 세부담이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로 나타남으로써 소비세 전체로는 근본적으로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경유와 등유 등의 소비세율이 인상되었으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이들 소비품목에 대해 직접 소비된 비중이 상당히 낮아 석유류 관련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지속적인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소비세의 부담 분포 변화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여타 소비세의 경우에도 다소간 세부담 분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소비세 과세 전후의 소득 분포를 뒤바꾸거나 유의한 수준

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2000~2002년의 세계개편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만을 본다면, 미소하나마 소폭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다.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근로소득공제를 중심으로 한 소득공제의 확대는 면세점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중소득층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따라서 납세자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취해진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는 상당부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유래되었다기보다는 기업의 접대비 비용 공제한도 축소 등에 따라 기업들이 편법으로 접대비를 임금에 엮어주는 형태의 임금조정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부담 측면에서 고액 소득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불이익을 불식 또는 완화함으로써 고급두뇌 또는 생산성이 높은 관리자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근로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01년 소득세법부터는 근로소득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5%를 근로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의 소득세제와 유사하다²⁹⁾.

29) 4,500만원 초과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한도 없이 5%로 정해준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5/100만큼 인하해 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효과 간에 반드시 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가 점차 고소득층으로 집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세부담의 누진도는 세부담의 절대수준과 관계가 없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계층별 소득점유비가 결정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편의상 세부담의 누진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세부담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이고 둘째는 총세부담 규모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런데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세부담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총세부담 수준이 크지 않다면 그만큼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아진다. 세부담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누진적이기만 하면 총량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한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누진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이는 바로 위의 두 가지 요인 중 소득세부담 규모가 크지 않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각종 소득공제의 수준 확대와 세율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 공제수준을 확대하게 되면 과세자의 비율이 좁아지게 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표 하락과 함께, 과세자 내부에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점유비가 하락함으로써 세부담의 누진도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의 확대는 양자간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선형적·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는 동시에 소득세의 세수비중 감소를 초래한다.

세부담의 누진도 증가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대로 소득세의 세수비중 하락은 그 자체로서

소득재분배 효과의 총량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소득 공제의 확대는 항상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그 효과가 正(+)의 값을 가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負(-)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최종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라. 조세부담률과 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8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등락의 폭이 크게 증폭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OECD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3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최근의 조세부담률 변화추이와 선진국의 예, 그리고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곧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세목의 세부담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상적인 가정하에서 조세부담률의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수록 세후 지니계수는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총량적인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승한다. 이는 소득세·소비세 부담의 합이 완만한 누진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더라도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의 증가율이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최소한 소득세 증가율이 소비세 증가율에 비해 현격히 낮지 않다면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분포가 누진적인 소득세의 증가율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질 것임은 물론이다.

마. 세원별 과세비중 조정과 소득재분배

세원별로 보면 누진세율 체계와 각종 소득공제 제도를 갖춘 소득세의 세부담은 누진적이다. 반면에 소비세 부담은 미소하게 역진적이기는 하지만 역진도가 매우 낮아 비례적이라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므로 동일 규모의 세수를 전제로 소득세와 소비세의 과세비중을 조정한다면, 소득세의 비중을 높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한편 소비세의 비중을 높일수록 그 효과는 작아진다. 극단적으로 소득세의 비중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낮춘다면 소득세·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라지거나 또는 매우 작지만 負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원별 과세비중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부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할 것인가의 탄력성 분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탄력성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만 소득세와 소비세 간의 적정 과세비중 추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세수중립적 개편이라는 전제하에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 비중을 조정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변화한다. 이를테면 2002년 조정분포에 2002년 세법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의 비중은 34.74%로 추정되는데 소득세와 소비세의 총부담을 고정시키고 소득세의 비중을 5%p 증대시키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5%p 하락시키면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전자로부터 0.40~0.43%p, 후자로부터 0.05~0.08%p 정도의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다주어 전체적으로는 0.46~0.53%p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준다. 이는 전자의 경우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총량이 증대함에 따른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역진적인 소비세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됨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소비세의 비중이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증대시키지만 소득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의 증가 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2.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소득세의 대표적인 특징을 들자면, 면세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높아 소득세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소득세 부담 비중이 높지 않아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득공제의 추가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금체계의 변화 등 다른 목적에서 소득공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VI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본보다는 높지만 서구 선진국보다는 낮다. 물론 반드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이 아직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제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V장의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또는 공제율을 현 수준보다 높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⁰⁾.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2001)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가 지

30) 물론 효과측면에서 당장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조세저항 및 정치적 반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제VI장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세율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소득세 가운데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을 들자면 의료비 특별공제의 한도를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성명재(1997B)에서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표본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시사점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저자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준호, 「현행 부가가치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경상논총』 8, 서강대학교 경제경영문제연구소, 1984, pp. 125~126.
- 성명재, 「소비세에 대한 도·농별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역진도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1993.
- _____,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02, 한국조세연구원, 1993.
- _____,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 _____, 『미시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7-05, 한국조세연구원, 1997(A).
- _____,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1997(B).
- _____,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도시가구의 세부담 분석」, 미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0(A).
- _____,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00-02, 한국조세연구원, 2000(B).
- _____,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제7권 제2호, 2001(A).

- pp. 1~48.
- _____,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1, 2001(B).
- _____,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 미발표 자료, 2002.
- 성명재·이명헌,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지니계수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8-02,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_____,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유경준·김현경,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 강문수·이혜훈 편저, 한국개발연구원, 비봉출판사, 2001.
- 이계식·배준호,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조세정책과 세제발전』, 광태원·이계식(편), 연구보고 86-01,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 61~122.
- 전영준·성명재·노영훈·박종규,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제33회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999.
- 차병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에 관한 고찰」, 『경제논집』, 제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66.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_____, 『국제통계연감』, 2000.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2000.
- 한승수,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5, 한국경제연구원, 1982.
- 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 세제개편 운용방향 및 추진방안 연구』, 2001.

- _____, 「2003년도 국세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전망자료: 2002~2006년의 국세수입 전망」, 2002.
- 현진권, 「토지소유의 편중실태와 종합토지세의 세부담 분석」,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 편, 한국조세연구원, 1996(A).
- _____, 「동등화 소비단위를 사용한 조세의 형평성 측정」, 『공공경제』 창간호, 한국공공경제학회, 1996(B), pp. 3~26.
-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금융연구원, 1999, pp. 173~207.
- _____,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한국세무학회, 2001, pp. 191~209.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145~167.
- 현진권·나성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 편, 한국조세연구원, 1996(A).
- _____. _____,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자료를 사용한 소득세제의 세부담 분석」,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 편, 한국조세연구원, 1996(B).
- _____. _____,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자료를 사용한 간접세제의 세부담 분석」,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 편, 한국조세연구원, 1996(C).
- 현진권·임병인,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공공경제』, 제5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 pp. 95~114.
- Antolín, Pablo, Thai-Thanh Dang, and Howard Oxley (Assisted by Ross Finnie and Roger Sceviour),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 Working Papers No. 212, OECD, ECO/WKP(99)4, 1999.
- Atkinson, A.,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pp. 244~263.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1996-97, 1998.
-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7-98, 1999.
-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9-2000, 2001.
- Burniaux, Jean-Marc, Thai-Thanh Dang, Douglas Fore, and Michael Förster,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89, ECO/WKP(98)2, 1998.
- CBO, *Description of CBO's Models and Methods for Projecting Federal Revenues*, 2001.
- Census of Population Office, "Household Income Growth and Distribution," Advance Data Release No. 7,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1.
- Clark, Tom and Jayne Taylor, "Income Inequality: A Tale of Two Cycles?," *Fiscal Studies*, Vol. 20, 1999, pp. 387~408.
- Coady, David P. and Limin Wang, "Equity, Efficiency, and Labor-market Reforms in Urban China: the Impact of Bonus Wages o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China Economic Review*, Vol. 11, 2000, pp. 213~231.
- D'Ambrosio, Conchita,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Italy: An Application of Social Distance Measur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7*, No. 1, 2001, pp. 43~64.
- Deininger, K. and L. Squire,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

1996, pp. 565~591.

_____,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1998, pp. 259~287.

Fei, John, Gustav Ranis, and Shirley W. Y. Kuo, "Growth and the Family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8, pp. 17~53.

Ferreira, Francisco H. G., "Inequality and Economic Performance: A Brief Overview to Theories of Growth and Distribution," World Bank, 1999.

Förster, Michael F. (Assisted by Michelle Pellizzari),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 42, DEELSA/ELSA/WD(2000)3, OECD, 2000.

Harris, Tim,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8-99," Economic Trends No. 557,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0, pp. 45~83.

Jacobs, Didier, "Low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An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ed to Britai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January 2000.

Jones Jr., Arthur F. and Daniel H. Weinberg, "The Changing Shape of the Nation's Income Distribution 1947-1998,"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the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June 2000.

Khetan, C. P. and S. N. Poddar, "Measurement of Income Tax Progression in a Growing Economy: The Canadian

-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No. 4, November 1976, pp. 613~629.
- Lakin, Caroline,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9-2000,” *Economic Trends* No. 569,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1, pp. 35~79.
- Lee, Jongchul, “Changes in the Source of China’s Regional Inequality,” *China Economic Review*, Vol. 11, 2000, pp. 232~245.
- Litchfield, Julie A.,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World Bank, 1999.
- Manski, Charles F., *Analog Estimation Methods in Econometrics*, Chapman and Hall, 1988.
- Milanovic, Branko, “True World Income Distribution, 1988 and 1993: First Calculation Based on Households Surveys Alone,”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 1999.
- _____, “World Income Inequalit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First Draft, World Bank, 2001.
- Milanovic, Branko and Slomo Yitzhaki, “Decomposing World Income Distribution: Does the World Have a Middle Class?,” mimeo, 2001.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1999*, Japan, 2000.
(http://www.mhlw.go.jp/search/mhlwe/wp/wp_hw/vol1/p1c2s2.html)
- OECD,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Background Tables and Figures,” DEELSA/ELSA/WP1(99)15/ANN, 1999.
- _____, *OECD in Figures*, 2000.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 OTA, *OTA's Forecasting Methodology for Individual Income Tax Receipts*,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2001(A).
- _____, *Methodology Guide: Individual Capital Gains Baseline*,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2001(B).
- _____, *Documentation Guide: Corporate Receipts*,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2001(C).
- Pyatt, Graham,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Gini Coefficients," *The Economic Journal*, 86, 1976, pp. 243~255.
- Pyatt, Graham, Chau-nan Chen, and John Fei, "The Distribution of Income by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0, pp. 451~473.
- Smeeding, Timothy and Daniel H. Weinberg, "Toward a Uniform Definition of Household Incom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7, No. 1, 2001, pp. 1~24.
-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1998.
- Statistics New Zealand, *New Zealand Now Incomes*, 1999.
- Suits, Daniel 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September 1977, pp. 734~752.
- Sung, Myung Jae, "Changes in Tax Burden of Urban Households in Korea: 1982~1999," Working Paper 01-01,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1.
- _____, "Test of Sample Selection Bias Based on Bootstrapping and Recovery of Distribution Using Nearest Neighbor Estimation Method, mimeo, 2002.
- U.S Census Bureau, *Money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999.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September

2000.

Yitzhaki, Shlomo, "Economic Distance and Overlapping of Distribu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61, 1994, pp. 147~159.

Yitzhaki, Shlomo and Robert I. Lerman,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7, Number 3, September 1991, pp. 313~329.

부록 I.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의 연간화 및 표본조정

1.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특성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매월 표본가구가 작성한 가계부 형식을 빈 조사서를 면접원이 수집·정리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원시자료는 분기별로 묶어 일반에게 제공된다. 월별 조사자료 작성시에는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의 가구가 조사누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락가구의 자료는 삽입(imputation)가구의 자료로 대체되어 있다³¹⁾. 그러므로 삽입가구로는 누락가구의 분포와 일치되는 가구가 선정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이 문제에 대해 선택편의를 야기하지 않을 만한 명확한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연구자의 직관적 판단으로는 선택편의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삽입가구의 자료를 분석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각 경제주체의 세부담, 특히 대다수의 소득세 부담은 연간단위로 책정된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대표적이다. 또한 현실경제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임금을 결정할 때에도 대부분 연간단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분배 및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를 위해 소득계층을 구분하거나 세부담 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연간단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계절성 문제를 회피할

31) 유경준·김현경(2001) p. 37의 <표 1-2> 참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자료는 특성상 계절성(seasonality)에 의한 계절편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계절성이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데, 설날이나 추석 등과 같이 특정한 계절에만 도래하는 명절, 임금지급 형태, 휴가철, 기후 등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계절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계절성은 주기적·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습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만약 계절성이 없다면 동일 연도 내 각 분기의 소득·소비분포는 동일해야 한다. 반대로 계절성이 존재한다면 각 분기의 소득·소비분포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계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 분기 또는 그 이상의 분기에서 자료가 누락된 가구에 대해 누락된 분기의 자료값을 누락되지 않은 분기의 자료로 대체하여 연간자료를 생성하면 필연적으로 계절편의를 가지게 되어 왜곡된 분석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계절성 제거 또는 계절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개 분기 모두 자료가 완비된(누락되지 않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1982~1989년과 1993년의 자료는 1~2분기 사이 또는 3~4분기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의 피조사대상 가구 표본이 새 표본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이들 연도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고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연간자료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의 약 90% 가까운 표본자료가 탈락되는 결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1988년의 경우에는 4개 분기 모두 자료가 갖추어진 가구의 수가 10여 가구에 불과한 등, 분석자료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표본 크기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기간에 대해서는 계절성 제거를 위한 가정을 완화하여 분기 대신 반기별로

32) 성명재(2002) 참조

자료의 누락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 연간자료로의 환산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³³⁾.

2. 표본선택편의의 검정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표본선택편의란 계절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본자료의 탈락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편의를 지칭한다. 즉, 표본선택편의는 각 분기 또는 반기의 자료가 1개 분기(반기) 또는 그 이상의 분기(반기)에서 모두 누락된 가구를 계절편의로 인해 연단위 자료로의 환산시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표본선택편의에 대한 검정은 각 분기(반기)별로 전체 표본의 분포와 연간화 과정에서 탈락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의 분포가 서로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정한다. 선택편의 검정시 기준변수로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3. 계절성 검정

계절성이란 각 분기(반기)의 자료분포가 서로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만약 각 분기(반기)의 분포가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면 계절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분기(반기) 자료의 분포가 다른 분기(반기) 자료의 분포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면 계절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계절편의 검정시 기준변수로는 소득을 사용하였다.

33)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성명재(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연간자료의 구성

모든 분기(반기)의 자료가 전혀 누락되지 않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합산하여 연간자료를 구성한다. 단, 이때 연간자료 구성과정에서 계절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탈락되는 가구의 자료로 인해 자료탈락 후의 각 분기(반기) 표본의 자료분포가 탈락 전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자료 탈락 전후의 분포가 다르다면 계절조정 과정에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연간화 작업이 일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편의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자료 탈락 후의 자료분포를 자료 탈락 전의 자료분포로 회복시켜 주는 작업, 즉 표본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표본조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Sung (2002)에서 채택한 근방추정법³⁴⁾(nearest neighbor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근방추정법에 의한 표본조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분포가 연속 미분가능한 분포함수를 지닌다는 가정하에, 계절조정 과정에서 탈락되지 않는 자료 가운데 탈락자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표본자료에 탈락자료의 표본추출가중치를 엮어 주는 방법이다. 이는 자료 탈락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소하게 추정되는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해 줌으로써 표본분포의 원상복구를 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근방추정시의 분석기준(norm)으로는 일반적인 유클리드 공간(Euclidean space)의 기하기준(metric norm)을 사용하였다.

34) 이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nski(1988)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록 II. 소득계층별·연령별 소득 분포

1.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가. 시장소득

<부표 II-1>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분포(전체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1460	2032	2394	2788	3139	3513	4036	4772	5787	8911	3883
1983	1591	2214	2627	3078	3472	3892	4471	5260	6384	9576	4257
1984	1757	2484	3022	3403	3894	4416	4945	5783	7108	10572	4739
1985	1925	2677	3216	3643	4034	4522	5145	5929	7182	11082	4935
1986	2118	3046	3650	4114	4638	5287	5944	6910	8446	12411	5657
1987	2525	3510	4130	4801	5396	6064	6906	8109	9873	14971	6628
1988	3034	4312	5146	5853	6541	7351	8415	9608	11617	17517	7938
1989	3717	5285	6242	7099	7918	8878	10049	11541	14018	21382	9613
1990	4742	6500	7646	8711	9656	10846	12066	13730	16392	24008	11448
1991	5828	8089	9327	10722	11998	13411	14819	16873	19868	27574	13850
1992	6758	9471	11114	12593	14066	15539	17332	19403	23021	31888	16119
1993	7203	10254	12035	13543	15277	16809	18768	20954	24349	35624	17482
1994	8085	11577	13589	15438	17091	19143	21595	24561	28612	38946	19866
1995	9067	13085	15415	17402	19774	21965	24586	28041	32549	44569	22644
1996	9949	14431	17000	19568	22028	24788	27520	31229	36399	50346	25328
1997	6695	12997	16759	19703	22566	25335	28562	32387	38498	54196	25789
1998	4941	9675	13413	16534	19342	22280	25431	29323	34881	50811	22663
1999	9196	13486	16288	18663	21501	24131	27426	31728	37399	53045	25287
2000	9983	14731	17747	20825	23867	27057	30648	35412	42467	62936	28570
	1	2	3	4	5	6	7	8	9	10	계
1982	3.76	5.22	6.19	7.16	8.10	9.06	10.36	12.31	14.93	22.91	100
1983	3.73	5.20	6.18	7.23	8.16	9.15	10.47	12.42	14.96	22.5	100
1984	3.71	5.24	6.41	7.15	8.18	9.36	10.47	12.19	15.00	22.29	100
1985	3.91	5.40	6.55	7.38	8.17	9.14	10.44	12.02	14.55	22.45	100
1986	3.75	5.39	6.44	7.25	8.20	9.38	10.52	12.19	14.89	21.99	100
1987	3.81	5.29	6.22	7.27	8.12	9.17	10.39	12.25	14.92	22.56	100
1988	3.82	5.44	6.48	7.39	8.23	9.26	10.63	12.09	14.67	22.01	100
1989	3.87	5.49	6.48	7.38	8.26	9.23	10.45	12.01	14.60	22.23	100
1990	4.14	5.68	6.69	7.59	8.44	9.46	10.53	12.00	14.54	20.92	100
1991	4.21	5.83	6.74	7.73	8.67	9.71	10.66	12.20	14.35	19.9	100
1992	4.20	5.87	6.90	7.80	8.71	9.66	10.71	12.09	14.28	19.78	100
1993	4.12	5.88	6.88	7.72	8.79	9.59	10.71	12.00	13.92	20.39	100
1994	4.07	5.83	6.84	7.78	8.62	9.59	10.89	12.36	14.38	19.64	100
1995	4.00	5.78	6.81	7.68	8.75	9.68	10.87	12.37	14.39	19.67	100
1996	3.92	5.70	6.72	7.71	8.70	9.79	10.85	12.33	14.40	19.87	100
1997	2.60	5.04	6.49	7.65	8.76	9.80	11.09	12.64	14.90	21.03	100
1998	2.18	4.27	5.93	7.28	8.53	9.84	11.22	12.95	15.39	22.42	100
1999	3.64	5.32	6.46	7.37	8.50	9.55	10.83	12.55	14.79	20.98	100
2000	3.50	5.14	6.21	7.30	8.35	9.46	10.73	12.39	14.87	22.05	100

주: 시장소득이란 시장에서 획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을 일컫음. 따라서 각종 이전소득이나 조세는 포함되지 않음.

<부표 11-2>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분포(근로자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시 장 소 득 특	1982	1440	2026	2378	2772	3127	3491	3997	4731	5738	8702	3753
	1983	1561	2205	2590	3064	3438	3847	4450	5220	6331	9616	4097
	1984	1722	2470	3024	3368	3879	4382	4891	5737	7079	10380	4537
	1985	1900	2666	3193	3638	4028	4504	5121	5878	7073	10999	4797
	1986	2077	3015	3626	4079	4617	5255	5928	6884	8332	12193	5486
	1987	2513	3472	4105	4788	5370	6041	6829	8050	9659	14463	6356
	1988	2970	4275	5102	5819	6498	7308	8380	9567	11547	17114	7600
	1989	3662	5271	6204	7021	7825	8802	9963	11428	13904	20860	9199
	1990	4617	6452	7590	8671	9611	10763	12013	13513	16373	23738	10993
	1991	5766	8029	9255	10673	11969	13317	14684	16757	19655	27046	13367
	1992	6669	9407	11017	12557	14026	15391	17197	19299	22708	30834	15646
	1993	7049	10213	11965	13455	15191	16666	18667	20781	24135	35096	16853
	1994	7970	11479	13527	15405	16917	19034	21458	24456	28303	38391	19300
	1995	8835	12998	15330	17195	19722	21824	24558	27959	32140	43705	21975
	1996	9829	14281	16875	19489	21883	24658	27163	30916	36076	49512	24770
	1997	6496	12772	16575	19517	22300	25192	28405	32382	38405	52320	24352
	1998	4854	9438	13264	16303	19079	22240	25202	29239	34593	50357	21128
	1999	9090	13283	16091	18439	21407	24005	27243	31667	37377	52660	24604
	2000	9804	14627	17484	20712	23700	26901	30521	35049	42281	63232	27346
		1	2	3	4	5	6	7	8	9	10	계
점 유 비	1982	4.02	5.81	7.04	7.51	7.92	8.58	10.68	12.70	14.50	21.23	100
	1983	4.27	5.66	6.43	7.63	8.95	9.26	10.67	12.38	13.64	21.10	100
	1984	4.32	6.34	7.15	7.43	8.01	9.71	9.83	11.56	14.58	21.08	100
	1985	4.56	5.99	7.01	7.68	8.59	9.08	9.05	10.41	15.51	22.11	100
	1986	4.24	6.02	6.36	7.74	8.85	9.48	10.00	11.26	14.20	21.86	100
	1987	4.28	5.54	7.04	8.02	8.06	10.31	9.79	12.66	13.35	20.94	100
	1988	4.45	6.09	6.62	8.09	8.92	9.98	9.94	11.92	13.89	20.10	100
	1989	4.76	6.52	6.86	7.26	8.28	9.13	10.20	12.26	14.04	20.68	100
	1990	4.92	6.34	7.38	8.19	9.01	9.23	10.33	10.69	13.57	20.35	100
	1991	5.10	6.34	7.37	7.81	9.25	9.56	10.78	11.30	12.83	19.66	100
	1992	4.81	6.50	7.03	8.27	8.48	9.49	10.08	12.30	14.32	18.72	100
	1993	4.95	6.57	7.19	8.34	8.89	9.18	10.53	11.87	13.14	19.33	100
	1994	4.97	6.04	7.22	7.91	8.28	9.56	10.46	12.66	14.12	18.79	100
	1995	4.68	6.20	7.35	7.23	8.89	9.51	11.75	11.80	13.54	19.06	100
	1996	4.63	6.09	6.72	7.65	8.10	9.50	10.15	12.68	15.01	19.46	100
	1997	3.64	5.64	6.34	8.16	8.71	9.41	10.72	12.99	15.09	19.29	100
	1998	3.31	5.18	6.28	7.05	8.67	9.40	10.48	12.56	15.24	21.83	100
	1999	4.83	5.58	6.41	6.62	7.70	9.46	10.43	13.35	15.64	19.99	100
	2000	4.51	5.73	6.24	7.73	8.61	9.31	10.90	11.56	15.18	20.24	100

주: 시장소득이란 시장에서 획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을 일컫음. 따라서 각종 이전소득이나 조세는 포함되지 않음.

<부표 II-3>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분포(자영업자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시 장 소 득	1982	1511	2048	2442	2824	3160	3551	4119	4858	5874	9252	4154
	1983	1689	2240	2711	3110	3564	3986	4514	5338	6464	9513	4602
	1984	1893	2548	3018	3485	3921	4497	5041	5866	7164	10923	5207
	1985	2032	2715	3284	3656	4050	4560	5180	6006	7499	11260	5270
	1986	2272	3152	3701	4209	4698	5361	5974	6956	8667	12901	6068
	1987	2570	3621	4229	4846	5457	6154	7060	8268	10257	16023	7373
	1988	3335	4445	5256	5961	6672	7480	8481	9698	11752	18255	8821
	1989	3982	5337	6334	7250	8108	9028	10213	11785	14225	22283	10549
	1990	5274	6639	7802	8814	9768	11002	12166	14056	16962	24517	12467
	1991	6094	8245	9521	10823	12068	13592	15103	17061	20186	28633	14910
	1992	7046	9648	11317	12675	14138	15817	17556	19618	23655	33796	17113
	1993	7935	10380	12204	13782	15464	17073	18966	21305	24730	36590	18929
	1994	8624	11802	13738	15509	17407	19360	21841	24788	29214	39958	21097
	1995	9929	13300	15628	17750	19878	22227	24655	28180	33235	46170	24048
	1996	10372	14786	17239	19715	22256	25015	28096	31886	37105	51891	26444
	1997	8724	13570	17064	20099	23003	25559	28811	32973	38664	57011	28691
	1998	6154	10393	13687	16872	19779	22335	25735	29444	35319	51473	25490
1999	9863	13924	16651	18980	21635	24356	27729	31862	37447	53667	26621	
2000	10805	14975	18211	21051	24178	27309	30873	35936	42800	62540	30889	
	1	2	3	4	5	6	7	8	9	10	계	
점 유 비	1982	3.28	4.13	4.57	6.49	8.42	9.97	9.76	11.57	15.73	26.09	100
	1983	2.70	4.29	5.68	6.47	6.63	8.94	10.08	12.50	17.52	25.20	100
	1984	2.47	3.00	4.90	6.57	8.52	8.67	11.76	13.49	15.86	24.75	100
	1985	2.46	4.10	5.52	6.69	7.26	9.26	13.5	15.59	12.43	23.19	100
	1986	2.69	4.00	6.63	6.19	6.78	9.15	11.66	14.21	16.40	22.29	100
	1987	2.72	4.69	4.28	5.51	8.26	6.47	11.81	11.26	18.61	26.39	100
	1988	2.40	3.98	6.14	5.81	6.68	7.63	12.17	12.46	16.43	26.3	100
	1989	2.12	3.46	5.73	7.60	8.23	9.44	10.94	11.50	15.70	25.28	100
	1990	2.60	4.38	5.34	6.40	7.31	9.93	10.93	14.59	16.46	22.05	100
	1991	2.46	4.84	5.51	7.56	7.54	10.01	10.42	13.98	17.33	20.36	100
	1992	3.02	4.65	6.66	6.91	9.15	9.99	11.91	11.67	14.21	21.82	100
	1993	2.41	4.45	6.24	6.45	8.59	10.43	11.09	12.27	15.50	22.56	100
	1994	2.28	5.41	6.07	7.51	9.31	9.66	11.76	11.78	14.90	21.33	100
	1995	2.72	4.97	5.76	8.53	8.49	10.02	9.20	13.46	16.02	20.84	100
	1996	2.59	4.99	6.71	7.81	9.83	10.33	12.17	11.67	13.26	20.64	100
	1997	0.82	4.01	6.75	6.77	8.85	10.47	11.72	12.04	14.57	24.02	100
	1998	0.46	2.87	5.40	7.64	8.30	10.52	12.34	13.55	15.61	23.32	100
1999	1.50	4.87	6.54	8.72	9.96	9.71	11.56	11.10	13.27	22.78	100	
2000	1.81	4.15	6.17	6.58	7.9	9.73	10.44	13.78	14.34	25.09	100	

주: 시장소득이란 시장에서 획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을 일컫음. 따라서 각종 이전소득이나 조세는 포함되지 않음.

나.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소득세 등의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부표 II-4>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분포(전체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가 처 분 소 득	1982	1494	2063	2408	2772	3101	3472	3999	4677	5632	8403	3802
	1983	1628	2240	2664	3069	3485	3905	4411	5169	6144	9083	4180
	1984	1786	2509	3020	3430	3861	4369	4884	5651	6856	10077	4644
	1985	1955	2720	3198	3606	3992	4452	5046	5796	7005	10460	4823
	1986	2166	3079	3621	4103	4608	5185	5806	6655	8097	11592	5492
	1987	2586	3553	4123	4752	5327	5961	6766	7863	9421	13948	6429
	1988	3095	4303	5092	5765	6425	7169	8077	9155	11014	16127	7621
	1989	3839	5290	6227	7060	7845	8725	9793	11195	13427	19930	9333
	1990	4798	6562	7614	8526	9478	10558	11735	13349	15756	22548	11091
	1991	5876	8053	9356	10597	11794	13162	14583	16439	19068	26162	13509
	1992	6749	9427	10984	12357	13631	15187	16767	18648	21999	30235	15599
	1993	7279	10084	11786	13360	14898	16404	18162	20399	23421	33301	16910
	1994	8172	11444	13352	15052	16781	18756	20802	23518	27315	37088	19230
	1995	9159	12978	15239	17144	19189	21242	23668	26809	31091	41773	21828
	1996	10079	14315	16757	19092	21544	23983	26794	30125	34629	47492	24483
	1997	6787	13016	16549	19407	22035	24599	27655	31370	36614	51123	24916
	1998	4886	9746	13323	16202	18966	21500	24494	28024	33133	47408	21768
	1999	9252	13361	16037	18318	20727	23325	26295	30124	35224	49462	24213
	2000	10024	14595	17499	20138	23033	25951	29402	33585	39575	58401	27223
	1	2	3	4	5	6	7	8	9	10	계	
집 유 비	1982	3.93	5.42	6.35	7.27	8.17	9.15	10.48	12.32	14.84	22.07	100
	1983	3.89	5.35	6.38	7.34	8.34	9.35	10.52	12.43	14.66	21.73	100
	1984	3.84	5.39	6.53	7.35	8.27	9.45	10.55	12.16	14.76	21.68	100
	1985	4.06	5.62	6.66	7.47	8.28	9.21	10.47	12.03	14.52	21.68	100
	1986	3.95	5.61	6.59	7.45	8.39	9.47	10.59	12.09	14.71	21.16	100
	1987	4.03	5.52	6.40	7.42	8.27	9.29	10.49	12.24	14.68	21.67	100
	1988	4.06	5.65	6.67	7.58	8.42	9.40	10.62	12.00	14.49	21.10	100
	1989	4.12	5.67	6.66	7.55	8.43	9.34	10.49	12.00	14.40	21.34	100
	1990	4.33	5.92	6.88	7.67	8.55	9.51	10.58	12.04	14.25	20.28	100
	1991	4.35	5.95	6.93	7.83	8.74	9.77	10.75	12.19	14.12	19.36	100
	1992	4.33	6.04	7.05	7.91	8.72	9.76	10.7	12.00	14.10	19.38	100
	1993	4.30	5.98	6.97	7.88	8.86	9.68	10.72	12.08	13.84	19.70	100
	1994	4.25	5.95	6.94	7.83	8.75	9.71	10.84	12.23	14.18	19.32	100
	1995	4.20	5.95	6.98	7.84	8.81	9.72	10.86	12.27	14.26	19.12	100
	1996	4.11	5.85	6.85	7.78	8.80	9.8	10.93	12.31	14.17	19.39	100
	1997	2.73	5.22	6.63	7.80	8.86	9.85	11.12	12.60	14.67	20.54	100
	1998	2.25	4.47	6.13	7.43	8.70	9.89	11.25	12.89	15.22	21.78	100
	1999	3.82	5.51	6.64	7.55	8.56	9.64	10.85	12.44	14.55	20.43	100
	2000	3.69	5.35	6.43	7.41	8.45	9.53	10.8	12.33	14.54	21.47	100

<부표 II-5>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분포(근로자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가 처 분 소 득	1982	1494	2076	2419	2786	3119	3500	4023	4697	5665	8411	3736
	1983	1616	2251	2668	3081	3493	3919	4435	5184	6163	9188	4073
	1984	1764	2508	3043	3446	3881	4379	4907	5680	6904	10021	4503
	1985	1945	2741	3203	3626	4013	4482	5092	5865	7002	10511	4749
	1986	2145	3081	3631	4113	4625	5200	5863	6715	8050	11443	5378
	1987	2598	3558	4118	4761	5340	5961	6766	7856	9261	13508	6213
	1988	3054	4292	5086	5751	6403	7156	8072	9122	10927	15653	7320
	1989	3814	5306	6229	7043	7812	8695	9766	11133	13359	19492	8992
	1990	4718	6559	7636	8539	9493	10518	11737	13298	15617	22453	10738
	1991	5855	8057	9387	10628	11817	13169	14603	16504	19026	25944	13168
	1992	6716	9415	10980	12396	13660	15222	16747	18605	21825	29761	15282
	1993	7188	10102	11789	13376	14915	16424	18178	20422	23510	33115	16459
	1994	8124	11446	13393	15092	16776	18804	20794	23568	27275	37152	18867
	1995	9024	13035	15297	17184	19209	21247	23724	26820	31024	41302	21364
	1996	10064	14326	16834	19192	21604	23976	26748	30041	34467	47111	24152
	1997	6621	12960	16642	19484	22100	24743	27753	31469	36737	50084	23823
	1998	4796	9633	13373	16207	18938	21591	24420	28059	33001	47114	20452
	1999	9222	13387	16119	18498	20901	23470	26385	30079	35266	49683	23803
	2000	9949	14730	17618	20300	23208	26135	29627	33581	39661	59564	26427
	1	2	3	4	5	6	7	8	9	10	계	
점 유 비	1982	4.19	5.98	7.20	7.59	7.94	8.64	10.80	12.67	14.38	20.61	100
	1983	4.44	5.82	6.67	7.72	9.15	9.49	10.70	12.37	13.36	20.29	100
	1984	4.46	6.48	7.25	7.66	8.07	9.77	9.94	11.53	14.33	20.51	100
	1985	4.71	6.23	7.11	7.74	8.64	9.13	9.09	10.49	15.51	21.35	100
	1986	4.47	6.28	6.49	7.96	9.04	9.57	10.09	11.20	13.99	20.92	100
	1987	4.52	5.81	7.23	8.16	8.20	10.41	9.92	12.64	13.10	20.00	100
	1988	4.75	6.34	6.86	8.30	9.12	10.14	9.94	11.80	13.65	19.09	100
	1989	5.07	6.72	7.05	7.45	8.45	9.22	10.23	12.22	13.81	19.77	100
	1990	5.15	6.60	7.60	8.26	9.11	9.23	10.34	10.77	13.25	19.71	100
	1991	5.26	6.46	7.58	7.90	9.27	9.60	10.88	11.29	12.61	19.15	100
	1992	4.96	6.66	7.17	8.36	8.45	9.61	10.05	12.14	14.09	18.50	100
	1993	5.17	6.66	7.26	8.49	8.94	9.27	10.50	11.94	13.11	18.67	100
	1994	5.18	6.16	7.32	7.93	8.40	9.66	10.36	12.48	13.92	18.60	100
	1995	4.91	6.40	7.55	7.43	8.90	9.52	11.68	11.64	13.45	18.52	100
	1996	4.87	6.26	6.88	7.73	8.20	9.47	10.25	12.64	14.71	18.99	100
	1997	3.79	5.85	6.51	8.33	8.83	9.45	10.71	12.91	14.76	18.88	100
	1998	3.38	5.46	6.54	7.24	8.89	9.43	10.49	12.45	15.02	21.09	100
	1999	5.06	5.81	6.64	6.87	7.77	9.56	10.44	13.11	15.25	19.49	100
	2000	4.73	5.97	6.50	7.84	8.72	9.35	10.95	11.46	14.74	19.72	100

<부표 II-6> 소득계층별 가치분소득 분포(자영업자가구)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가 치 분 소 득	1982	1494	2026	2375	2739	3067	3427	3946	4633	5575	8389	3939
	1983	1668	2210	2655	3041	3464	3874	4361	5140	6115	8914	4413
	1984	1871	2513	2950	3391	3823	4344	4845	5600	6764	10179	4973
	1985	2001	2651	3186	3552	3938	4388	4977	5693	7017	10350	5004
	1986	2245	3074	3599	4076	4561	5149	5698	6551	8188	11928	5764
	1987	2539	3539	4144	4719	5297	5962	6765	7882	9708	14860	7023
	1988	3288	4343	5107	5808	6494	7207	8086	9226	11183	16995	8407
	1989	3958	5231	6222	7092	7912	8785	9843	11331	13549	20685	10106
	1990	5139	6572	7552	8493	9439	10633	11733	13426	15990	22727	11882
	1991	5968	8044	9272	10535	11737	13150	14540	16335	19131	26601	14257
	1992	6858	9461	10993	12266	13579	15122	16802	18739	22349	31091	16266
	1993	7712	10029	11777	13316	14860	16368	18131	20351	23263	33642	17945
	1994	8399	11441	13251	14968	16790	18660	20816	23409	27393	36969	20018
	1995	9656	12839	15093	17078	19149	21233	23530	26790	31204	42644	22802
	1996	10132	14288	16610	18906	21449	23995	26869	30301	34981	48196	25146
	1997	8479	13157	16395	19242	21923	24373	27499	31183	36392	52681	27123
	1998	6138	10087	13232	16196	19011	21374	24592	27975	33334	47837	24192
	1999	9442	13303	15888	18064	20481	23068	26146	30223	35135	49105	25015
	2000	10365	14276	17288	19815	22707	25652	29002	33590	39419	56846	28730
		1	2	3	4	5	6	7	8	9	10	계
점 유 비	1982	3.42	4.30	4.69	6.64	8.62	10.15	9.86	11.64	15.74	24.94	100
	1983	2.79	4.42	5.81	6.59	6.72	9.06	10.15	12.55	17.28	24.62	100
	1984	2.55	3.10	5.02	6.70	8.70	8.77	11.84	13.49	15.68	24.16	100
	1985	2.56	4.22	5.64	6.85	7.44	9.38	13.66	15.56	12.25	22.45	100
	1986	2.80	4.10	6.79	6.31	6.94	9.25	11.71	14.09	16.31	21.70	100
	1987	2.82	4.81	4.41	5.63	8.42	6.58	11.88	11.27	18.49	25.69	100
	1988	2.48	4.08	6.26	5.94	6.83	7.71	12.18	12.44	16.40	25.69	100
	1989	2.20	3.54	5.87	7.76	8.39	9.59	11.00	11.54	15.61	24.50	100
	1990	2.66	4.55	5.43	6.47	7.42	10.07	11.06	14.62	16.28	21.44	100
	1991	2.52	4.93	5.61	7.69	7.67	10.12	10.49	14.00	17.17	19.79	100
	1992	3.10	4.80	6.80	7.04	9.25	10.05	12.00	11.73	14.12	21.12	100
	1993	2.48	4.54	6.35	6.58	8.70	10.55	11.18	12.37	15.38	21.88	100
	1994	2.34	5.53	6.17	7.64	9.46	9.81	11.81	11.72	14.72	20.80	100
	1995	2.79	5.06	5.87	8.65	8.62	10.10	9.26	13.50	15.86	20.30	100
	1996	2.66	5.07	6.80	7.87	9.97	10.42	12.24	11.66	13.14	20.16	100
	1997	0.84	4.11	6.86	6.85	8.92	10.56	11.83	12.04	14.51	23.48	100
	1998	0.48	2.94	5.50	7.73	8.40	10.61	12.43	13.56	15.52	22.84	100
	1999	1.53	4.95	6.64	8.83	10.03	9.79	11.60	11.20	13.25	22.18	100
	2000	1.87	4.25	6.29	6.66	7.98	9.82	10.54	13.85	14.20	24.52	100

2. 연령별 소득 분포

<부표 II-7> 연령별 시장소득 분포

(단위: 천원)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가 구	1982	2200	2639	3381	3716	4147	4340	4408	4243	4516	2748
	1983	2133	3156	3654	4214	4528	4769	4697	5011	4255	3090
	1984	2508	3599	4066	4374	5103	5086	5866	5471	5259	3729
	1985	2346	3741	4125	4581	5258	5294	5615	5999	6067	3802
	1986	2774	3762	4555	5538	5991	6216	6691	6366	6101	4171
	1987	3633	4744	5591	6146	6711	7190	7842	8160	7665	5910
	1988	3819	5972	6582	7448	7981	8505	9124	10072	7690	7225
	1989	5201	7226	7800	8582	9845	11193	11023	11465	10826	8117
	1990	5746	8310	9468	10235	11533	13180	12907	13703	11763	10716
	1991	6819	10321	11748	12204	13976	15474	15755	16508	15741	10587
	1992	8363	11417	13327	14575	16558	17464	18435	18339	18275	12537
	1993	9529	11298	15454	15867	16937	19729	19952	21055	20712	14226
	1994	10104	13794	16989	18635	19598	20821	22446	24207	23031	15390
	1995	12372	15039	20102	21323	22250	23374	25437	27045	25726	18126
	1996	16631	18849	21216	24050	25462	26336	27492	29248	28184	20520
	1997	10472	16391	23101	24251	26594	27228	29003	30171	29053	16697
	1998	5544	11882	18739	22283	22854	24619	26508	25349	25432	14734
1999	13518	18320	19955	24083	24646	27881	28789	29159	26796	20478	
2000	16722	20350	23799	26079	29595	29938	31765	33127	29532	22520	
	1	2	3	4	5	6	7	8	9	평균	
근 로 자 가 구	1982	2200	2615	3426	3632	3973	4404	4276	4100	4266	2617
	1983	2133	3144	3566	4128	4409	4728	4672	4597	4166	2787
	1984	2508	3551	3869	4312	5158	5068	5609	5338	4812	3649
	1985	2276	3515	4067	4568	5385	5213	5536	5901	5885	3736
	1986	2774	3755	4567	5573	6124	6102	6106	6014	6440	3479
	1987	3633	4700	5464	6171	6819	6739	7658	7419	7787	5026
	1988	3721	5523	6364	7485	7883	8155	8910	9747	7636	5683
	1989	5201	7347	7742	8305	9950	10859	10407	10848	10586	6779
	1990	5746	8124	9213	9956	11630	12635	12502	13641	11120	9110
	1991	6216	10045	11608	12224	13731	14999	15246	16076	15326	9215
	1992	8363	10879	13182	14542	16099	17136	18283	17746	18202	11458
	1993	9303	11129	15157	15882	16205	18331	19993	21287	20179	13420
	1994	10104	13673	17239	18681	19174	19938	21819	24126	22852	14599
	1995	12372	15039	20138	21137	22192	22320	24424	26958	24929	16846
	1996	16631	18766	21083	24040	25601	25611	27171	29717	27003	19713
	1997	10472	15219	22799	23534	26029	25802	27547	30392	27640	13846
	1998	5544	11801	18827	21999	22061	23911	24870	24224	22383	11390
1999	13518	18322	20355	24018	24466	27282	28575	29509	26096	18850	
2000	16722	19929	23720	26406	28635	28286	31950	31867	29177	20308	
	1	2	3	4	5	6	7	8	9	평균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0	2990	3247	3935	4427	4237	4600	4455	4885	3070
	1983	0	3280	4008	4444	4723	4834	4744	5612	4371	3568
	1984	0	4357	5040	4562	5009	5112	6313	5672	5633	3927
	1985	4529	6867	4456	4622	5028	5464	5719	6165	6329	3929
	1986	0	3851	4495	5436	5691	6423	7685	6855	5490	5049
	1987	0	6475	6410	6040	6468	7890	8207	9264	7393	7399
	1988	5398	13859	7851	7301	8201	9163	9463	10590	7789	10697
	1989	0	6146	8020	9422	9656	11815	11992	12431	11182	11593
	1990	0	10103	10358	11024	11347	14150	13578	13801	13105	14500
	1991	15312	13673	12267	12151	14516	16211	16521	17278	16742	13628
	1992	0	16955	13745	14664	17464	17963	18680	19473	18414	15008
	1993	13963	14838	16499	15822	18217	22002	19882	20641	22055	17435
	1994	0	17825	16030	18511	20237	22189	23590	24349	23404	19274
	1995	0	0	19927	21758	22348	24844	27075	27230	27280	22320
	1996	0	20910	22147	24077	25259	27376	27928	28413	30571	23192
	1997	0	26999	24959	26184	27479	29270	31045	29771	31697	26230
	1998	0	14361	18455	22868	24126	25647	28526	27332	29969	27429
1999	0	18266	18469	24234	24963	28848	29036	28554	28131	25674	
2000	0	22926	24126	25266	31103	32708	31528	35150	30145	29200	

<부표 II-8> 연령별 총소득 분포

(단위: 천원)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가 구	1982	2486	2851	3478	3746	4190	4417	4460	4324	4629	2803
	1983	2293	3337	3753	4260	4593	4822	4768	5081	4416	3158
	1984	2837	3885	4134	4434	5200	5125	5892	5580	5363	3779
	1985	2912	4075	4282	4640	5291	5382	5665	6094	6175	3853
	1986	3074	4136	4652	5612	6030	6262	6734	6430	6192	4265
	1987	3839	5030	5773	6199	6800	7230	7889	8323	7849	5998
	1988	4013	6495	6844	7487	8022	8553	9180	10250	7946	7415
	1989	5618	8158	8094	8739	9978	11357	11153	11638	11077	8343
	1990	6112	9429	9699	10399	11717	13293	13077	13873	12030	10994
	1991	8007	11472	12052	12433	14206	15651	16040	16646	16164	10971
	1992	8471	12570	13723	14850	16764	17734	18708	18650	18861	13031
	1993	11107	12633	15933	16035	17197	20024	20072	21228	20990	14629
	1994	12021	15140	17598	18900	19841	21110	22636	24454	23450	15949
	1995	12844	15815	20657	21519	22516	23717	25805	27427	26200	18705
	1996	17055	19725	22011	24358	25710	26707	27852	29745	28742	21093
	1997	11338	17411	23976	24736	26936	27568	29459	30658	29658	17477
1998	6329	13701	19235	22694	23109	25035	26806	25545	25768	15194	
1999	13705	19017	20773	24398	25060	28293	29026	29411	27105	21212	
2000	18620	21535	24440	26468	30025	30398	32050	33426	30007	23102	
근 로 자 가 구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82	2486	2824	3552	3674	4043	4513	4363	4220	4425	2694
	1983	2293	3337	3689	4189	4512	4813	4779	4698	4431	2889
	1984	2837	3855	3951	4391	5308	5127	5650	5470	5024	3715
	1985	2861	3874	4248	4645	5427	5331	5620	6052	6065	3813
	1986	3074	4157	4682	5671	6180	6173	6166	6114	6580	3642
	1987	3839	4994	5671	6235	6944	6804	7723	7686	8054	5166
	1988	3926	6076	6667	7529	7941	8228	9002	10032	8008	5955
	1989	5618	8345	8111	8505	10151	11091	10610	11122	10994	7011
	1990	6112	9336	9470	10163	11888	12805	12771	13866	11512	9504
	1991	7470	11236	11968	12509	13998	15259	15713	16278	15924	9759
	1992	8471	12058	13680	14891	16408	17573	18695	18219	19077	12166
	1993	10961	12525	15710	16104	16587	18807	20167	21547	20559	13919
	1994	12021	15059	17978	19006	19554	20412	22110	24509	23439	15273
	1995	12844	15815	20788	21409	22581	22827	25000	27517	25582	17596
	1996	17055	19673	21955	24449	25973	26200	27782	30474	27828	20450
1997	11338	16314	23810	24174	26539	26365	28328	31030	28531	14848	
1998	6329	13605	19415	22575	22432	24588	25389	24515	22910	11956	
1999	13705	19039	21344	24417	25002	27921	28959	29882	26566	19640	
2000	18620	21273	24487	26939	29265	28981	32418	32315	29833	21048	
자 영 업 자 가 구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82	0	3239	3256	3937	4428	4264	4601	4478	4932	3070
	1983	0	3334	4008	4452	4725	4836	4746	5638	4395	3581
	1984	0	4357	5041	4562	5016	5121	6313	5747	5646	3940
	1985	4529	6867	4471	4625	5045	5489	5724	6167	6331	3929
	1986	0	3851	4502	5437	5691	6423	7698	6869	5495	5056
	1987	0	6475	6427	6048	6476	7891	8217	9272	7395	7399
	1988	5398	13859	7875	7320	8203	9168	9463	10598	7835	10701
	1989	0	6480	8029	9449	9668	11853	12008	12447	11201	11804
	1990	0	10322	10501	11067	11386	14163	13585	13885	13113	14505
	1991	15565	14326	12361	12236	14667	16261	16530	17304	16742	13657
	1992	0	17842	13847	14744	17468	17980	18728	19475	18450	15008
	1993	13963	14896	16717	15825	18262	22002	19910	20659	22077	17454
	1994	0	17825	16137	18612	20273	22192	23597	24359	23473	19274
	1995	0	0	20002	21777	22403	24956	27106	27235	27405	22339
	1996	0	21022	22410	24120	25323	27434	27946	28449	30592	23218
1997	0	27334	24994	26254	27558	29291	31045	29987	31766	26268	
1998	0	16650	18654	22939	24195	25682	28552	27358	30020	27489	
1999	0	18455	18645	24352	25162	28893	29103	28596	28133	26228	
2000	0	23139	24247	25294	31218	32775	31577	35209	30309	29305	

<부표 II-9> 연령별 가처분소득 분포

(단위: 천원)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 체 가 구	1982	2473	2819	3374	3611	4021	4225	4258	4107	4417	2751
	1983	2277	3298	3644	4113	4416	4623	4579	4847	4291	3102
	1984	2826	3844	4019	4303	4990	4918	5602	5330	5115	3700
	1985	2884	4005	4173	4469	5058	5144	5389	5734	5851	3752
	1986	3070	4092	4521	5380	5756	5970	6381	6130	5878	4143
	1987	3822	4931	5580	5943	6483	6891	7459	7834	7489	5793
	1988	3987	6331	6560	7090	7552	8058	8670	9584	7569	7120
	1989	5550	7990	7802	8344	9466	10717	10548	10977	10404	8160
	1990	6093	9208	9341	9947	11148	12553	12352	13095	11391	10597
	1991	7929	11212	11644	11959	13587	14856	15267	15781	15321	10677
	1992	8430	12300	13223	14158	15872	16734	17544	17575	17777	12696
	1993	11015	12308	15340	15321	16389	18896	18975	20090	19764	14072
	1994	11830	14839	16968	18027	18853	20006	21439	23005	22193	15405
1995	12687	15452	19831	20447	21364	22509	24298	25804	24769	17939	
1996	16914	19217	21194	23211	24405	25302	26348	28068	27280	20402	
1997	11199	16930	22965	23586	25528	26072	27724	28813	27962	16704	
1998	6185	13337	18400	21492	21867	23640	25165	24017	24182	14431	
1999	13656	18462	19795	23012	23579	26568	27025	27494	25545	20391	
2000	18154	20896	23214	24870	28069	28411	29864	31074	28212	22187	
근 로 자 구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82	2473	2794	3464	3560	3917	4356	4197	4048	4303	2673
	1983	2277	3302	3594	4057	4351	4612	4597	4520	4355	2875
	1984	2826	3818	3861	4280	5103	4931	5392	5243	4859	3679
	1985	2853	3835	4156	4489	5202	5106	5357	5706	5835	3749
	1986	3070	4121	4558	5440	5900	5902	5881	5883	6266	3602
	1987	3822	4900	5490	5976	6601	6504	7273	7246	7723	5078
	1988	3901	5953	6397	7111	7422	7701	8462	9299	7629	5816
	1989	5550	8174	7809	8104	9555	10401	9982	10517	10292	6946
	1990	6093	9113	9134	9713	11277	12082	12048	13132	10963	9310
	1991	7416	11001	11571	12039	13394	14472	14991	15535	15147	9598
	1992	8430	11800	13189	14182	15512	16544	17484	17229	17966	11979
	1993	10864	12215	15158	15390	15836	17802	19055	20491	19434	13453
1994	11830	14755	17345	18114	18570	19373	20967	23152	22281	14835	
1995	12687	15452	19988	20321	21396	21705	23512	25933	24393	16959	
1996	16914	19183	21163	23276	24588	24775	26261	28807	26571	19869	
1997	11199	15940	22847	23095	25170	24953	26654	29196	27107	14257	
1998	6185	13251	18566	21302	21155	23123	23702	23041	21627	11435	
1999	13656	18502	20350	23035	23500	26301	26968	28049	25352	19130	
2000	18154	20748	23313	25330	27422	27236	30344	30280	28372	20543	
자 영 업 자 가 구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82	0	3165	3102	3743	4189	4016	4347	4194	4586	2943
	1983	0	3260	3845	4265	4523	4640	4546	5321	4206	3461
	1984	0	4250	4798	4372	4797	4899	5966	5462	5330	3754
	1985	3870	6361	4268	4405	4799	5222	5431	5780	5875	3759
	1986	0	3718	4332	5203	5432	6093	7230	6471	5179	4830
	1987	0	6184	6156	5801	6221	7493	7828	8710	6969	7000
	1988	5380	12995	7503	7007	7844	8734	9001	10039	7459	10056
	1989	0	6336	7775	9069	9307	11305	11439	11698	10569	11316
	1990	0	10124	10065	10609	10900	13392	12856	13036	12284	13630
	1991	15158	13776	11914	11752	14012	15455	15682	16222	15740	13069
	1992	0	17442	13323	14096	16584	17023	17642	18239	17418	14336
	1993	13963	14260	15981	15110	17354	20674	18841	19373	20596	16535
1994	0	17645	15519	17790	19278	20988	22302	22748	22008	18208	
1995	0	0	19052	20741	21309	23629	25569	25528	25503	21146	
1996	0	20066	21415	23044	24136	26057	26467	26753	28713	22165	
1997	0	25890	23687	24911	26091	27675	29223	28120	29559	24888	
1998	0	15990	17862	21881	23009	24389	26968	25735	27983	25807	
1999	0	17448	17729	22956	23718	26999	27090	26533	25913	24414	
2000	0	21803	22808	23723	29085	30383	29247	32347	27935	27152	

부록 Ⅲ.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부표 Ⅲ-1>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 체 가 구	1982	65	94	117	142	166	200	237	304	414	871	261
	1983	73	92	121	152	172	197	232	294	446	815	259
	1984	71	115	127	166	182	217	288	336	491	932	292
	1985	79	121	162	170	202	244	296	393	504	1072	324
	1986	95	154	178	199	232	287	346	457	601	1186	374
	1987	125	187	208	259	294	337	437	556	768	1446	462
	1988	154	218	267	318	392	468	574	696	1009	1924	602
	1989	167	259	315	369	440	543	652	812	1122	2316	699
	1990	200	312	392	461	529	639	812	984	1348	2602	828
	1991	237	382	434	542	633	739	929	1188	1607	2849	954
	1992	286	445	537	653	837	991	1204	1471	2018	3367	1201
	1993	316	516	661	782	879	1071	1322	1561	2077	3753	1293
	1994	359	629	775	854	1091	1244	1598	1863	2545	4192	1516
	1995	412	729	916	1099	1269	1526	1823	2302	2846	4621	1754
	1996	477	764	991	1262	1468	1723	2102	2398	3144	5233	1966
	1997	579	853	1122	1281	1580	1784	2141	2718	3403	5937	2140
	1998	534	783	935	1190	1423	1692	1993	2447	3044	5371	1941
	1999	528	874	1121	1420	1683	1902	2181	2772	3508	5894	2189
	2000	605	997	1266	1601	1892	2128	2548	3158	4098	6733	2503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근 로 자 가 구	1982	61	94	118	126	132	154	200	260	321	608	207
	1983	80	89	110	134	168	160	192	238	320	667	216
	1984	77	131	124	149	147	185	229	259	386	740	243
	1985	81	118	154	156	186	203	207	263	458	935	276
	1986	98	155	144	182	216	251	274	335	507	1064	323
	1987	127	177	216	256	268	350	365	509	639	1229	413
	1988	168	229	252	325	396	473	481	640	954	1764	568
	1989	191	290	309	343	413	500	612	814	1043	1999	651
	1990	225	324	382	455	524	575	733	836	1146	2243	744
	1991	268	395	442	468	633	633	863	992	1272	2468	843
	1992	309	473	518	655	752	905	1059	1462	1902	3094	1113
	1993	347	522	613	772	801	957	1167	1371	1772	2984	1131
	1994	412	599	756	798	959	1120	1427	1746	2302	3571	1369
	1995	445	740	906	929	1202	1386	1841	2023	2466	3994	1593
	1996	536	738	885	1110	1259	1537	1846	2254	3085	4782	1803
	1997	795	889	1014	1193	1383	1470	1829	2533	3059	4741	1891
	1998	772	925	866	1021	1254	1432	1629	2135	2718	4530	1728
	1999	659	805	974	1135	1290	1740	1901	2585	3396	4794	1928
	2000	709	960	1081	1517	1763	1803	2228	2602	3659	4973	213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73	93	115	175	237	296	313	396	607	1422	373
	1983	57	98	146	192	179	278	319	417	719	1137	354
	1984	57	77	135	203	264	293	424	515	737	1381	409
	1985	72	128	181	206	241	343	511	707	615	1406	441
	1986	89	152	261	241	271	373	520	748	824	1479	496
	1987	120	217	187	266	366	304	634	684	1121	2039	594
	1988	120	191	305	298	382	456	816	842	1154	2343	690
	1989	111	189	328	430	500	640	744	805	1300	3033	808
	1990	142	287	415	472	540	783	990	1317	1798	3406	1015
	1991	169	354	416	704	632	973	1074	1618	2341	3685	1197
	1992	238	384	579	649	1015	1173	1508	1491	2262	4563	1386
	1993	243	501	739	804	1058	1334	1678	1999	2776	5521	1666
	1994	242	695	816	977	1379	1514	1971	2120	3074	5542	1834
	1995	343	704	935	1454	1411	1820	1785	2888	3642	5938	2092
	1996	359	817	1202	1566	1886	2095	2613	2685	3262	6136	2262
	1997	142	780	1339	1457	1977	2418	2772	3091	4100	8552	2643
	1998	97	523	1061	1500	1734	2170	2665	3021	3645	6919	2333
	1999	274	1011	1408	1979	2453	2219	2729	3138	3726	8047	2698
	2000	408	1067	1617	1760	2136	2743	3154	4212	4931	10065	3210

<부표 III-2>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실효세부담률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 체 가 구	1982	4.31	4.50	4.80	5.03	5.25	5.62	5.75	6.26	7.00	9.60	6.60
	1983	4.46	4.06	4.50	4.88	4.83	4.94	5.10	5.52	6.90	8.37	5.99
	1984	3.95	4.54	4.17	4.75	4.61	4.85	5.71	5.72	6.83	8.63	6.07
	1985	4.00	4.40	4.97	4.63	4.96	5.33	5.68	6.50	6.81	9.45	6.45
	1986	4.37	4.93	4.83	4.77	4.91	5.37	5.76	6.55	7.06	9.41	6.52
	1987	4.80	5.19	4.95	5.32	5.37	5.48	6.22	6.75	7.67	9.55	6.86
	1988	4.93	4.97	5.11	5.35	5.88	6.27	6.76	7.18	8.56	10.85	7.47
	1989	4.29	4.80	4.93	5.09	5.43	5.98	6.37	6.88	7.86	10.66	7.13
	1990	4.08	4.65	5.02	5.22	5.39	5.82	6.60	7.01	8.04	10.66	7.10
	1991	3.96	4.64	4.52	4.97	5.20	5.42	6.12	6.89	7.98	10.11	6.75
	1992	4.15	4.61	4.76	5.12	5.90	6.25	6.84	7.45	8.59	10.83	7.30
	1993	4.24	4.96	5.35	5.66	5.69	6.28	6.95	7.29	8.35	10.40	7.27
	1994	4.30	5.35	5.62	5.48	6.27	6.38	7.32	7.52	8.75	10.46	7.50
	1995	4.41	5.45	5.83	6.19	6.36	6.87	7.32	8.11	8.59	10.20	7.63
	1996	4.64	5.2	5.74	6.38	6.56	6.89	7.48	7.56	8.53	10.19	7.60
	1997	8.31	6.38	6.56	6.35	6.88	6.95	7.37	8.20	8.72	10.69	8.14
	1998	10.53	7.79	6.79	7.07	7.20	7.51	7.73	8.24	8.60	10.44	8.43
	1999	5.56	6.33	6.73	7.43	7.74	7.76	7.85	8.65	9.26	10.92	8.51
	2000	5.86	6.59	6.94	7.57	7.80	7.76	8.18	8.78	9.58	10.57	8.63
			1	2	3	4	5	6	7	8	9	10
근 로 자 가 구	1982	4.04	4.52	4.85	4.47	4.18	4.33	4.86	5.35	5.43	6.69	5.25
	1983	4.90	3.93	4.09	4.28	4.73	4.01	4.22	4.46	4.96	6.85	4.98
	1984	4.30	5.17	4.06	4.28	3.72	4.12	4.55	4.41	5.36	6.85	5.03
	1985	4.13	4.29	4.74	4.23	4.56	4.44	3.98	4.36	6.19	8.24	5.49
	1986	4.50	4.95	3.90	4.35	4.56	4.70	4.56	4.81	5.96	8.44	5.63
	1987	4.87	4.89	5.13	5.26	4.90	5.68	5.20	6.18	6.39	8.12	6.14
	1988	5.35	5.21	4.83	5.48	5.94	6.33	5.66	6.60	8.09	9.95	7.05
	1989	4.92	5.37	4.84	4.72	5.10	5.50	5.97	6.91	7.31	9.21	6.64
	1990	4.61	4.82	4.88	5.16	5.34	5.24	5.96	5.96	6.84	9.19	6.39
	1991	4.48	4.79	4.60	4.30	5.20	4.64	5.68	5.76	6.32	8.76	5.97
	1992	4.48	4.9	4.59	5.13	5.30	5.71	6.01	7.40	8.09	9.39	6.77
	1993	4.66	5.02	5.03	5.59	5.18	5.61	6.14	6.40	7.13	8.27	6.36
	1994	4.94	5.09	5.48	5.12	5.51	5.75	6.54	7.05	7.92	8.91	6.77
	1995	4.77	5.53	5.77	5.23	6.03	6.24	7.40	7.13	7.45	8.82	6.93
	1996	5.21	5.02	5.13	5.61	5.63	6.14	6.57	7.11	8.37	9.31	7.00
	1997	11.42	6.65	5.93	5.92	6.03	5.72	6.30	7.65	7.83	8.54	7.19
	1998	15.22	9.20	6.29	6.07	6.34	6.36	6.32	7.19	7.68	8.80	7.50
	1999	6.93	5.82	5.85	5.94	5.93	7.10	6.84	8.06	8.97	8.88	7.50
	2000	6.87	6.35	5.92	7.17	7.27	6.57	7.15	7.23	8.55	7.81	7.34
			1	2	3	4	5	6	7	8	9	10
자 영 업 자 가 구	1982	4.86	4.47	4.70	6.20	7.49	8.31	7.60	8.16	10.27	15.66	9.42
	1983	3.48	4.35	5.40	6.16	5.04	6.97	7.02	7.81	11.12	11.67	8.17
	1984	3.15	3.06	4.42	5.83	6.69	6.54	8.41	8.78	10.24	12.78	8.48
	1985	3.68	4.65	5.55	5.59	5.91	7.49	9.80	11.71	8.32	12.39	8.77
	1986	4.06	4.86	7.08	5.76	5.73	6.99	8.64	10.73	9.69	11.74	8.65
	1987	4.61	6.02	4.44	5.48	6.68	4.94	9.02	8.31	11.20	13.47	8.82
	1988	3.82	4.36	5.84	5.02	5.73	6.10	9.61	8.68	9.78	13.21	8.57
	1989	2.87	3.50	5.14	5.92	6.17	7.05	7.27	6.83	9.11	13.97	8.23
	1990	2.91	4.27	5.31	5.35	5.50	7.13	8.04	9.38	10.73	13.95	8.71
	1991	2.82	4.30	4.33	6.46	5.19	7.13	7.07	9.39	11.62	13.08	8.47
	1992	3.46	3.98	5.12	5.09	7.15	7.40	8.57	7.55	9.63	13.85	8.43
	1993	3.26	4.83	6.07	5.82	6.85	7.82	8.83	9.33	11.17	15.3	9.37
	1994	2.90	5.90	5.92	6.27	7.93	7.77	9.03	8.56	10.57	13.83	9.07
	1995	3.67	5.26	5.95	8.19	7.07	8.19	7.17	10.18	11.00	13.11	9.09
	1996	3.50	5.56	6.97	7.91	8.43	8.37	9.31	8.47	8.85	11.94	8.79
	1997	2.04	5.83	7.83	7.23	8.61	9.41	9.54	9.33	10.50	15.04	10.05
	1998	1.91	5.20	7.70	8.91	8.77	9.63	10.34	10.17	10.30	13.44	10.13
	1999	2.88	7.31	8.45	10.36	11.28	9.05	9.82	9.79	9.84	14.90	10.50
	2000	3.95	7.05	8.86	8.32	8.81	10.00	10.12	11.71	11.52	15.80	11.06

<부표 III-3> 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비중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계	
전 가 구	1982	2.48	3.59	4.51	5.42	6.39	7.69	9.04	11.67	15.87	33.34	100
	1983	2.81	3.53	4.69	5.87	6.62	7.61	8.90	11.40	17.15	31.43	100
	1984	2.42	3.92	4.38	5.64	6.19	7.47	9.86	11.47	16.81	31.85	100
	1985	2.43	3.72	5.02	5.24	6.24	7.50	9.13	12.12	15.53	33.06	100
	1986	2.56	4.12	4.77	5.32	6.21	7.69	9.28	12.19	16.03	31.82	100
	1987	2.71	4.05	4.50	5.62	6.35	7.32	9.44	12.04	16.66	31.29	100
	1988	2.56	3.63	4.43	5.29	6.51	7.78	9.55	11.54	16.81	31.89	100
	1989	2.39	3.70	4.49	5.28	6.31	7.75	9.32	11.60	16.06	33.09	100
	1990	2.41	3.78	4.75	5.55	6.39	7.72	9.81	11.90	16.33	31.36	100
	1991	2.49	4.00	4.55	5.67	6.64	7.77	9.70	12.48	16.85	29.85	100
	1992	2.39	3.7	4.48	5.43	6.95	8.27	9.98	12.30	16.80	29.70	100
	1993	2.44	4.00	5.03	6.03	6.84	8.27	10.20	12.09	16.05	29.05	100
	1994	2.37	4.15	5.11	5.64	7.22	8.17	10.57	12.29	16.77	27.71	100
	1995	2.35	4.15	5.22	6.26	7.25	8.69	10.41	13.11	16.24	26.32	100
	1996	2.44	3.91	5.07	6.43	7.51	8.81	10.73	12.26	16.10	26.74	100
	1997	2.71	3.98	5.24	5.99	7.40	8.32	10.02	12.71	15.87	27.77	100
1998	2.75	4.03	4.83	6.12	7.32	8.73	10.26	12.62	15.68	27.67	100	
1999	2.42	3.99	5.13	6.48	7.69	8.70	9.95	12.67	16.03	26.94	100	
2000	2.42	3.97	5.06	6.41	7.55	8.49	10.18	12.62	16.38	26.92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근 로 자 구	1982	2.93	4.53	5.73	6.06	6.39	7.46	9.62	12.55	15.49	29.25	100
	1983	3.71	4.10	5.12	6.20	7.80	7.42	8.85	11.07	14.81	30.92	100
	1984	3.18	5.39	5.14	6.13	6.01	7.65	9.47	10.65	15.91	30.47	100
	1985	2.95	4.26	5.61	5.63	6.74	7.33	7.51	9.54	16.58	33.84	100
	1986	3.05	4.79	4.45	5.63	6.69	7.79	8.51	10.37	15.68	33.05	100
	1987	3.07	4.26	5.21	6.21	6.47	8.47	8.81	12.31	15.48	29.70	100
	1988	2.95	4.03	4.43	5.74	6.97	8.33	8.49	11.25	16.84	30.98	100
	1989	2.94	4.45	4.73	5.26	6.36	7.67	9.39	12.50	16.04	30.67	100
	1990	3.03	4.35	5.14	6.10	7.04	7.72	9.85	11.24	15.45	30.07	100
	1991	3.18	4.68	5.24	5.54	7.51	7.53	10.20	11.78	15.09	29.25	100
	1992	2.78	4.25	4.65	5.88	6.75	8.15	9.48	13.19	17.08	27.80	100
	1993	3.07	4.62	5.42	6.81	7.12	8.45	10.30	12.14	15.66	26.41	100
	1994	3.01	4.38	5.52	5.83	7.02	8.14	10.44	12.75	16.79	26.13	100
	1995	2.80	4.65	5.69	5.83	7.56	8.69	11.58	12.68	15.50	25.05	100
	1996	2.97	4.10	4.91	6.14	6.98	8.52	10.22	12.50	17.14	26.51	100
	1997	4.21	4.70	5.36	6.32	7.33	7.76	9.69	13.40	16.15	25.10	100
1998	4.47	5.35	5.02	5.90	7.25	8.30	9.42	12.37	15.72	26.21	100	
1999	3.42	4.17	5.07	5.88	6.69	9.03	9.85	13.41	17.62	24.87	100	
2000	3.34	4.50	5.07	7.13	8.27	8.46	10.46	12.21	17.18	23.37	100	
	1	2	3	4	5	6	7	8	9	10	계	
자 영 업 자 구	1982	1.96	2.49	3.09	4.68	6.38	7.97	8.37	10.65	16.31	38.09	100
	1983	1.61	2.77	4.12	5.43	5.06	7.86	8.97	11.83	20.25	32.10	100
	1984	1.38	1.89	3.32	4.95	6.43	7.21	10.40	12.60	18.05	33.77	100
	1985	1.64	2.89	4.12	4.66	5.47	7.75	11.59	16.05	13.94	31.88	100
	1986	1.79	3.06	5.26	4.85	5.46	7.54	10.49	15.05	16.58	29.91	100
	1987	2.03	3.65	3.14	4.51	6.14	5.13	10.65	11.53	18.91	34.31	100
	1988	1.73	2.77	4.41	4.33	5.53	6.60	11.85	12.18	16.76	33.84	100
	1989	1.38	2.34	4.05	5.31	6.21	7.91	9.21	9.97	16.11	37.50	100
	1990	1.40	2.83	4.10	4.64	5.32	7.71	9.75	12.98	17.78	33.49	100
	1991	1.41	2.96	3.48	5.87	5.29	8.15	8.94	13.55	19.56	30.79	100
	1992	1.72	2.77	4.18	4.68	7.31	8.48	10.84	10.80	16.32	32.92	100
	1993	1.46	3.02	4.44	4.81	6.39	7.99	10.06	12.01	16.66	33.16	100
	1994	1.32	3.79	4.45	5.33	7.54	8.22	10.77	11.56	16.74	30.28	100
	1995	1.64	3.37	4.47	6.94	6.76	8.69	8.55	13.79	17.43	28.36	100
	1996	1.59	3.62	5.32	6.90	8.34	9.26	11.54	11.87	14.45	27.12	100
	1997	0.54	2.95	5.06	5.52	7.49	9.13	10.50	11.70	15.48	31.63	100
1998	0.41	2.24	4.56	6.42	7.42	9.31	11.41	12.96	15.62	29.65	100	
1999	1.02	3.74	5.23	7.32	9.09	8.23	10.10	11.63	13.81	29.83	100	
2000	1.27	3.32	5.03	5.49	6.65	8.54	9.83	13.12	15.36	31.39	100	

부록 IV. 2002년 조정표본 기준 각종 세목의 세부담 분포

<부표 IV-1>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677	1131	1443	1826	2158	2465	2997	3729	4815	7790	2904
	2001	681	1133	1444	1824	2155	2462	2989	3714	4775	7656	2884
	2002	682	1117	1409	1768	2075	2354	2844	3506	4466	7091	2732
근로자	2000	627	1007	1264	1702	2030	2219	2694	3434	4435	6677	2488
	2001	631	1008	1265	1699	2026	2216	2685	3422	4396	6546	2470
	2002	634	998	1242	1648	1950	2109	2544	3219	4091	6041	2338
자영업자	2000	910	1427	1759	2072	2396	2865	3534	4156	5498	9277	3691
	2001	912	1428	1760	2073	2394	2863	3528	4135	5457	9140	3667
	2002	899	1399	1705	2010	2310	2753	3376	3920	5140	8494	3477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5.90	6.73	7.11	7.77	8.00	8.09	8.65	9.32	10.12	11.00	9.00
	2001	5.93	6.74	7.12	7.76	7.99	8.08	8.63	9.29	10.04	10.81	8.94
	2002	5.94	6.64	6.95	7.52	7.70	7.72	8.21	8.77	9.39	10.02	8.47
근로자	2000	5.52	5.97	6.24	7.24	7.53	7.27	7.76	8.61	9.32	9.31	8.00
	2001	5.56	5.98	6.25	7.22	7.51	7.25	7.74	8.58	9.24	9.13	7.94
	2002	5.59	5.92	6.14	7.00	7.23	6.90	7.33	8.07	8.60	8.43	7.52
자영업자	2000	7.55	8.54	8.64	8.83	8.89	9.43	10.24	10.35	11.55	13.33	10.72
	2001	7.56	8.54	8.64	8.84	8.89	9.42	10.22	10.30	11.46	13.14	10.65
	2002	7.46	8.37	8.37	8.57	8.58	9.06	9.78	9.76	10.80	12.21	10.10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2.34	3.88	4.97	6.30	7.42	8.48	10.32	12.84	16.59	26.85	100
	2001	2.37	3.92	5.00	6.34	7.47	8.53	10.37	12.88	16.56	26.58	100
	2002	2.50	4.08	5.16	6.49	7.59	8.61	10.41	12.83	16.35	25.98	100
근로자	2000	3.17	4.34	4.95	6.98	8.11	8.44	10.57	12.45	17.50	23.49	100
	2001	3.21	4.37	4.99	7.02	8.15	8.48	10.61	12.50	17.47	23.19	100
	2002	3.41	4.57	5.18	7.19	8.28	8.53	10.62	12.42	17.18	22.61	100
자영업자	2000	1.28	3.31	4.99	5.42	6.56	8.54	10.00	13.34	15.42	31.15	100
	2001	1.29	3.33	5.02	5.46	6.59	8.59	10.05	13.36	15.40	30.90	100
	2002	1.34	3.45	5.13	5.59	6.71	8.71	10.14	13.36	15.30	30.28	100

<부표 IV-2>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총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645	994	1164	1446	1620	1711	2000	2149	2544	3590	1786
	2001	648	996	1165	1445	1618	1708	1995	2143	2536	3573	1783
	2002	652	999	1169	1447	1619	1710	1990	2142	2530	3566	1783
근로자	2000	620	966	1152	1486	1680	1695	1984	2173	2457	3177	1682
	2001	624	968	1153	1484	1677	1692	1978	2166	2450	3164	1679
	2002	629	970	1159	1484	1677	1695	1972	2163	2443	3158	1678
자영업자	2000	757	1061	1184	1366	1509	1737	2027	2115	2701	4142	1985
	2001	759	1063	1185	1367	1508	1734	2023	2110	2692	4120	1980
	2002	760	1069	1186	1373	1510	1734	2022	2112	2687	4112	1980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5.62	5.91	5.74	6.15	6.01	5.61	5.77	5.37	5.35	5.07	5.54
	2001	5.65	5.92	5.74	6.15	6.00	5.60	5.76	5.36	5.33	5.05	5.53
	2002	5.68	5.94	5.76	6.16	6.00	5.61	5.75	5.36	5.32	5.04	5.53
근로자	2000	5.47	5.73	5.69	6.32	6.23	5.55	5.72	5.45	5.17	4.43	5.41
	2001	5.50	5.74	5.70	6.31	6.22	5.54	5.70	5.43	5.15	4.41	5.4
	2002	5.54	5.75	5.73	6.31	6.22	5.55	5.68	5.42	5.14	4.41	5.4
자영업자	2000	6.27	6.35	5.81	5.82	5.60	5.71	5.87	5.27	5.67	5.95	5.76
	2001	6.29	6.36	5.82	5.83	5.60	5.70	5.86	5.25	5.66	5.92	5.75
	2002	6.30	6.39	5.82	5.85	5.60	5.70	5.86	5.26	5.65	5.91	5.75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3.62	5.55	6.51	8.11	9.06	9.57	11.19	12.03	14.25	20.12	100
	2001	3.64	5.57	6.53	8.12	9.07	9.57	11.19	12.02	14.23	20.06	100
	2002	3.67	5.59	6.55	8.13	9.07	9.58	11.16	12.01	14.20	20.03	100
근로자	2000	4.64	6.15	6.68	9.02	9.92	9.53	11.52	11.66	14.35	16.53	100
	2001	4.68	6.18	6.70	9.02	9.93	9.53	11.51	11.64	14.33	16.49	100
	2002	4.71	6.19	6.73	9.02	9.93	9.55	11.47	11.63	14.29	16.47	100
자영업자	2000	1.98	4.58	6.24	6.65	7.68	9.63	10.67	12.62	14.08	25.87	100
	2001	1.99	4.60	6.26	6.67	7.69	9.64	10.67	12.62	14.07	25.79	100
	2002	1.99	4.62	6.26	6.70	7.70	9.64	10.67	12.64	14.05	25.74	100

<부표 IV-3>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54	66	61	84	90	80	108	109	169	323	114
	2001	59	71	65	88	94	83	110	111	170	319	117
	2002	69	79	74	94	99	89	111	112	167	313	121
근로자	2000	55	69	60	85	101	82	111	101	156	237	103
	2001	60	74	65	88	105	86	113	103	157	235	106
	2002	70	82	73	93	109	91	112	103	154	230	109
자영업자	2000	48	58	62	82	70	76	102	120	191	438	136
	2001	53	63	67	87	74	79	106	122	192	430	138
	2002	61	72	74	96	80	84	110	126	189	424	142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47	0.39	0.30	0.36	0.34	0.26	0.31	0.27	0.35	0.46	0.35
	2001	0.51	0.42	0.32	0.37	0.35	0.27	0.32	0.28	0.36	0.45	0.36
	2002	0.60	0.47	0.36	0.40	0.37	0.29	0.32	0.28	0.35	0.44	0.37
근로자	2000	0.49	0.41	0.30	0.36	0.38	0.27	0.32	0.25	0.33	0.33	0.33
	2001	0.53	0.44	0.32	0.38	0.39	0.28	0.33	0.26	0.33	0.33	0.34
	2002	0.62	0.49	0.36	0.40	0.40	0.30	0.32	0.26	0.32	0.32	0.35
자영업자	2000	0.40	0.35	0.31	0.35	0.26	0.25	0.30	0.30	0.40	0.63	0.4
	2001	0.44	0.38	0.33	0.37	0.27	0.26	0.31	0.30	0.40	0.62	0.4
	2002	0.51	0.43	0.37	0.41	0.30	0.28	0.32	0.31	0.40	0.61	0.41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4.73	5.75	5.33	7.36	7.91	6.97	9.45	9.52	14.74	28.25	100
	2001	5.04	6.02	5.59	7.54	8.02	7.13	9.42	9.48	14.50	27.25	100
	2002	5.70	6.56	6.11	7.82	8.18	7.34	9.21	9.30	13.81	25.98	100
근로자	2000	6.74	7.22	5.72	8.44	9.80	7.57	10.57	8.90	14.89	20.15	100
	2001	7.16	7.50	5.98	8.54	9.83	7.69	10.43	8.81	14.61	19.45	100
	2002	8.09	8.07	6.55	8.69	9.90	7.89	9.98	8.50	13.89	18.44	100
자영업자	2000	1.84	3.65	4.78	5.82	5.20	6.12	7.84	10.40	14.54	39.81	100
	2001	1.97	3.89	5.03	6.10	5.40	6.31	7.97	10.44	14.34	38.54	100
	2002	2.23	4.36	5.47	6.54	5.70	6.53	8.08	10.46	13.70	36.93	100

<부표 IV-5>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52	62	63	72	73	75	82	71	76	82	71
	2001	51	62	62	71	72	75	81	70	75	81	70
	2002	46	55	55	63	64	66	71	62	67	71	62
근로자	2000	49	65	56	75	72	68	75	71	77	71	67
	2001	49	64	55	74	71	68	74	70	76	70	66
	2002	43	57	49	66	63	60	66	62	68	62	59
자영업자	2000	64	57	76	67	75	87	94	70	74	96	77
	2001	64	56	75	66	74	86	92	69	73	95	76
	2002	56	50	67	58	66	76	82	61	65	84	68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45	0.37	0.31	0.31	0.27	0.25	0.24	0.18	0.16	0.12	0.22
	2001	0.45	0.37	0.31	0.30	0.27	0.24	0.23	0.17	0.16	0.11	0.22
	2002	0.40	0.32	0.27	0.27	0.24	0.22	0.21	0.15	0.14	0.10	0.19
근로자	2000	0.43	0.38	0.27	0.32	0.27	0.22	0.22	0.18	0.16	0.10	0.22
	2001	0.43	0.38	0.27	0.31	0.26	0.22	0.21	0.18	0.16	0.10	0.21
	2002	0.38	0.34	0.24	0.28	0.23	0.20	0.19	0.16	0.14	0.09	0.19
자영업자	2000	0.53	0.34	0.37	0.28	0.28	0.29	0.27	0.17	0.16	0.14	0.22
	2001	0.53	0.33	0.37	0.28	0.28	0.28	0.27	0.17	0.15	0.14	0.22
	2002	0.47	0.30	0.33	0.25	0.24	0.25	0.24	0.15	0.14	0.12	0.2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7.36	8.78	8.90	10.22	10.28	10.65	11.54	9.96	10.77	11.54	100
	2001	7.36	8.78	8.90	10.22	10.28	10.65	11.54	9.96	10.77	11.54	100
	2002	7.36	8.78	8.90	10.22	10.28	10.65	11.54	9.96	10.77	11.54	100
근로자	2000	9.22	10.31	8.06	11.37	10.56	9.63	10.88	9.48	11.30	9.18	100
	2001	9.22	10.31	8.06	11.37	10.56	9.63	10.88	9.48	11.30	9.18	100
	2002	9.22	10.31	8.06	11.37	10.56	9.63	10.88	9.48	11.30	9.18	100
자영업자	2000	4.31	6.26	10.29	8.31	9.81	12.34	12.61	10.74	9.90	15.43	100
	2001	4.31	6.26	10.29	8.31	9.81	12.34	12.61	10.74	9.90	15.43	100
	2002	4.31	6.26	10.29	8.31	9.81	12.34	12.61	10.74	9.90	15.43	100

<부표 IV-6> 세법연도별·소득계층별 소비세분 교육세 부담 분포
(2002년 분포 기준)

(단위: 천원, %)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43	66	75	99	111	116	135	140	173	258	122
	2001	43	66	74	98	108	113	132	137	169	251	119
	2002	42	62	70	92	102	107	123	129	158	238	112
근로자	2000	41	64	71	103	116	112	132	140	166	218	113
	2001	41	64	70	101	113	109	129	136	162	212	110
	2002	39	61	67	95	107	103	121	128	151	200	104
자영업자	2000	55	71	81	93	100	122	139	140	187	312	139
	2001	55	70	79	91	98	119	136	137	182	304	136
	2002	52	67	75	87	93	112	128	130	171	289	129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2000	0.38	0.40	0.37	0.42	0.41	0.38	0.39	0.35	0.36	0.36	0.38
	2001	0.38	0.39	0.36	0.42	0.40	0.37	0.38	0.34	0.35	0.35	0.37
	2002	0.36	0.37	0.35	0.39	0.38	0.35	0.36	0.32	0.33	0.34	0.35
근로자	2000	0.36	0.38	0.35	0.44	0.43	0.37	0.38	0.35	0.35	0.30	0.36
	2001	0.36	0.38	0.35	0.43	0.42	0.36	0.37	0.34	0.34	0.30	0.35
	2002	0.35	0.36	0.33	0.40	0.40	0.34	0.35	0.32	0.32	0.28	0.33
자영업자	2000	0.46	0.43	0.40	0.39	0.37	0.40	0.40	0.35	0.39	0.45	0.4
	2001	0.45	0.42	0.39	0.39	0.37	0.39	0.39	0.34	0.38	0.44	0.39
	2002	0.43	0.40	0.37	0.37	0.34	0.37	0.37	0.32	0.36	0.42	0.37
점유비		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2000	3.57	5.44	6.15	8.19	9.07	9.50	11.09	11.52	14.24	21.24	100
	2001	3.65	5.50	6.19	8.21	9.08	9.50	11.07	11.48	14.19	21.12	100
	2002	3.72	5.55	6.24	8.21	9.07	9.48	10.98	11.44	14.10	21.21	100
근로자	2000	4.55	6.14	6.20	9.34	10.23	9.41	11.50	11.23	14.47	16.94	100
	2001	4.66	6.21	6.24	9.35	10.24	9.41	11.46	11.18	14.42	16.83	100
	2002	4.78	6.26	6.32	9.33	10.24	9.42	11.36	11.11	14.32	16.86	100
자영업자	2000	2.06	4.38	6.07	6.43	7.29	9.63	10.46	11.95	13.89	27.84	100
	2001	2.09	4.42	6.12	6.47	7.32	9.65	10.47	11.94	13.84	27.70	100
	2002	2.10	4.46	6.11	6.50	7.29	9.59	10.40	11.93	13.76	27.86	100

<국문초록>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成 明 宰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구조는 1980년대~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확대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는 디지털경제로의 진입 과정에서의 계층간의 비대칭적인 정보 격차 확대, 이혼 증가,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바 있다.

공제수준 및 공제율의 상향조정 등 최근(2000~2002년)의 소득세 제 개편은 면세자 비율의 상승과 소득세 부담의 하락을 가져다 주었다. 소비세 부담 분포는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최근의 소비세 개편은 세부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세제개편은 미소하나마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오히려 고급인력의 노동공급 저해요인을 축소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의 누진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세부담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와 총세부담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세목의 세부담이 비례적

으로 증가한다는 가상적인 가정하에서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총량적으로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수중립적 개편을 전제로 할 때, 소득세 비중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반면 소비세 비중이 커질수록 그 효과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현재의 소득 분포와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세 비중은 34.74% 정도이다. 만약 가상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5%p 증대시키면 소득세 비중 상승에 따라 0.40~0.43%p, 소비세 비중 하락에 따라 0.05~0.08%p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 가운데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으로는, 의료비 특별공제의 한도를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Abstract>

Estimation of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 Policies on the Income Distribution of Urban Households

Sung, Myung Jae

This report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policies on the income distribution of urban households. It is well known that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es depend upon their size as well as degrees of progressivity.

Income taxes of Korea are very progressive. However, their redistributive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are generally low since their scale is not sufficiently large.

Simulation results tell us that the rise in wage and salary income deduction level results in lowering the revenue share, but raising the exemption rate and progressivity. However, its redistributive effect is not clear. The rise in income deduction level strengthens the progressivity and, as a result, redistributive effect by increasing the exemption rate. To the contrary, it decreases the revenue share and the size of income taxes, and as a result, weakens redistributive effect.

The relative sizes of the two above mentioned contradictory effects depends upon the incumbent level of income tax exemption rate and the magnitude of changes in deduction level.

About 45% of income tax exemption rate in Korea is pretty high, relative to those of most OECD member countries. The major reason is that the income deduction level is relatively high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ect lowering the income deduction level in real economy, and so, inflation may reduce the real value of the income tax exemption rate. From this point, we suggest an imaginary scenario of no inflation adjustments in income deduction levels for the time being until the real income tax exemption level diminishes to a certain desirable level.

We can expect, based on the trend and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that the tax revenue share to nominal GDP will rise gradually in Korea. Increase in its ratio would fortify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axation sinc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outweighs regressivity of consumption taxes.

Furthermore, it turns out that relative increase in income tax share at the expense of consumption taxes enhances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under the assumption of no change in total tax revenue. Increase in income tax which, in turn, implies decrease in the share of consumption by the exactly same amount would decrease Gini coefficient by 0.45%~0.51% which can be decomposed to 0.40~0.43% stemming from the former and 0.05~0.08% from the latter, respectively.

<著者略歷>

成 明 宰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美國 Wisconsin-Madison大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研究報告書 02-01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2002年 6月 23日 印刷
2002年 6月 30日 發行

著 者 成 明 宰
發行人 宋 大 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18]-7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2186-2114(代), 팩시밀리: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一 志 社
印 刷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10-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